

전발연 2004-R-12

# 전북 기업유치 추진방향 연구

2004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나상균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 연구원  | 김보국 • 전북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br>박형창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br>이동기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br>형영주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
| 연구자문 | 조혜영 • 한국산업단지공단 책임연구원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

- 기업유치는 고용 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 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등의 지원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기업유치가 더욱 악화 되고 있음
- 기업들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제도, 노사관계, 환경관련제도, 지원관련제도 등의 개선책 마련과 기업의 니즈에 적합한 기업유치 전략수립 필요
- 기업유치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방향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전략을 국내기업, 외국기업,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전략으로 구분하여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연구의 진행체계

- 기업들의 전라북도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 및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의 잠재력을 분석
- 기업체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전라북도로 이전한 동기와 현 만족도 및 투자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과정을 탐색하여, 이를 통해 전라북도에 기업유치의 대안을 모색
-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제도, 노사관계, 환경관련제도, 지원관련제도 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통하여 기업유치전략을 국내기업, 외국기업,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

### 3. 연구의 결과요약

#### 1) 기업 유치 제도개선

- 행정지원제도 개선은 투자유치 대상 사업의 다양화와 전략산업으로 확대, 대규모 투자 기업지원범위 축소와 제조업 중심의 보조금 지원 형태 탈피를 통한 유치영역 확대 추진, 기업유치자유촉진 지역선정 및 클러스터 육성, 유치기업 사후관리서비스 운영,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담당부서의 인센티브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
- 환경규제개선 방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지자체의 환경개선 자금지원, 적발보다는 지도를 통한 산업 환경 개선, 지자체 이관 후 중앙정부와의 업무분장 명확화, 조례 등 지역 환경정책수립 시기기업의 참여도 제고, 종합적 패키지정책의 EIP사업 추진, 환경 흠닥터제를 적극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기업 환경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
- 노사관계 제도개선은 적극적인 예방과 조정, 노사 파트너십 구축, 자발적인 노사협력 추진 지원, 국제기준 및 제도 준수, 지역파트너십에 의한 인적자원 개발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
-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억제, 이전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확대 등의 제도개선 필요

#### 2) 이전기업 설문조사

- 전라북도의 입지여건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변여건과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가장 규제를 많이 받은 부분은 환경규제이고 환경 규제 중에서도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전 시 가장 도움을 받았던 제도는 조세감면제도, 공장부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제도, 인턴제도를 포함한 인력 제도로 나타남
- 기업이전 시 투자정보지원 센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 3) 기업유치전략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타깃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니즈에 맞는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 및 투자제도 정비
- KOTRA 해외무역관, 주한외국대사관, 투자컨설팅사 및 관련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형프로젝트 유치와 상시 업무공유를 통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정책에 반영
-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및 기간단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
- 기업유치관련 조직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유치 우대조례 제정, 매칭 펀드식의 기업유치기금의 조성, 산업입지 관련 분양가 인하 및 저가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치 지원 정책을 수립
- 투자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며 투자유치 전문가 풀(pool)제를 운영, 팩키지 형태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투자유치 시스템 경쟁력 강화
- 유치 대상 기업 선정 및 유치,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종합계획 수립, 연고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지역 유통업과 유치대상 유통업과의 보완적 연계기능 강화
- 기업유치 관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협조 강화, 합작파트너 알선 및 공장용지 정보제공, 기업유치관련 협상능력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II. 정책건의

-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하고, 기업의 니즈(needs), 비전·전략, 전라북도의 강점을 감안하여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필요
- 인적자원, 자금, 공장용지,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대상 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적합한 기업을 집중 관리 및 유치하고, 투자 유치 정책의 목표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유치'로 전환

- 자본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는 한편,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 금융, 정보서비스업 등의 기업도 유치대상에 포함
-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관계관리 시스템 마련
-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및 투자환경 조성을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전담기구 설치
-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이를 기업유치로 연계할 수 있는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목 차

|                                    |    |
|------------------------------------|----|
| <b>제 1 장 서 론</b> .....             | 1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 3  |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              | 4  |
| <b>제 2 장 기업유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b> ..... | 7  |
| 제 1 절 기업유치의 경제적 의의 .....           | 9  |
| 1. 기업유치의 필요성 .....                 | 9  |
| 2.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                | 12 |
| 제 2 절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         | 17 |
| 1. 외국 사례 .....                     | 17 |
| 2. 국내 사례 .....                     | 36 |
| <b>제 3 장 전라북도 기업유치 환경 분석</b> ..... | 47 |
| 제 1 절 인문사회 환경 분석 .....             | 49 |
| 1. 인적자원 .....                      | 49 |
| 2. 과학기술인력 .....                    | 52 |
| 3. 연구기관 현황 .....                   | 57 |
| 제 2 절 기업체 현황 분석 .....              | 59 |
| 1. 사업체 현황 .....                    | 59 |
| 2. 중소기업 현황 .....                   | 64 |
| 3. 벤처기업 현황 .....                   | 66 |
| 제 3 절 산업기반시설 현황 분석 .....           | 68 |
| 1. 사회 간접 자본 .....                  | 68 |
| 2. 산업단지 현황 .....                   | 76 |
| 제 4 절 기업이전 현황 분석 .....             | 84 |
| 1. 기업유치 현황 .....                   | 84 |
| 2. 외국인투자 현황 .....                  | 87 |
| 3. 수도권 기업 이전계획 현황 .....            | 91 |
| 제 5 절 설문조사 분석 .....                | 99 |
| 1. 조사의 목적과 개요 .....                | 99 |

|                                       |            |
|---------------------------------------|------------|
| 2.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 99         |
| 3. 조사의 요약과 분석 .....                   | 114        |
| 제 6 절 기업유치 SWOT 분석 .....              | 116        |
| 1. 내부환경 분석 .....                      | 116        |
| 2. 외부환경 분석 .....                      | 117        |
| <b>제 4 장 전라북도 기업유치제도 및 개선방향 .....</b> | <b>121</b> |
| 제 1 절 행정지원제도 .....                    | 123        |
| 1. 행정지원 제도 현황 .....                   | 123        |
| 2. 행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 135        |
| 제 2 절 이전촉진 제도 .....                   | 141        |
| 1. 지방이전 제도 현황 .....                   | 141        |
| 2. 지방이전제도의 개선 방향 .....                | 151        |
| 제 3 절 산업단지 환경 제도 .....                | 156        |
| 1.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              | 156        |
| 2.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                   | 158        |
| 3. 환경규제에 의한 기업활동 제약 .....             | 159        |
| 4. 환경규제 개선방안 .....                    | 168        |
| 제 4 절 노사관계 제도 .....                   | 173        |
| 1. 노사관계 현황 .....                      | 173        |
| 2. 노사관계제도의 개선방향 .....                 | 178        |
| <b>제 5 장 기업유치 추진 전략 .....</b>         | <b>183</b> |
| 제 1 절 국내기업 유치전략 .....                 | 185        |
| 1. 기본전략 .....                         | 185        |
| 2. 세부 추진전략 .....                      | 186        |
| 제 2 절 외국기업 유치전략 .....                 | 197        |
| 1. 기본 전략 .....                        | 197        |
| 2. 세부 추진전략 .....                      | 198        |
| 제 3 절 벤처기업 유치전략 .....                 | 203        |
| 1. 기본전략 .....                         | 203        |
| 2. 세부 추진전략 .....                      | 204        |
| 제 4 절 창업보육 활성화 전략 .....               | 208        |
| 1. 기본전략 .....                         | 208        |

|                                 |            |
|---------------------------------|------------|
| 2. 세부 추진전략 .....                | 209        |
| <b>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b> | <b>213</b> |
| 제 1 절 결    론 .....              | 215        |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 216        |
| <br>                            |            |
| ■ 참고문헌 .....                    | 219        |
| ■ 부    록 .....                  | 225        |

## 표 목 차

|                                      |    |
|--------------------------------------|----|
| <표 2-1> 경상남도가 유치한 외국기업현황 .....       | 42 |
| <표 3-1>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2003년 기준) ..... | 49 |
| <표 3-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           | 51 |
| <표 3-3> 전공계열별 전북의 대학 인력 .....        | 52 |
| <표 3-4> 지역별 과학기술인력 현황 .....          | 53 |
| <표 3-5> 학위별 과학기술인력 현황 .....          | 54 |
| <표 3-6> 전북 소재 대학 연구인력 현황 .....       | 55 |
| <표 3-7> 학문분야별 연구인력 현황 .....          | 56 |
| <표 3-8> 연구기관 분포 .....                | 57 |
| <표 3-9> 연구개발비 분포 .....               | 57 |
| <표 3-10> 연구개발예산 현황 .....             | 58 |
| <표 3-11> 산업재산권 시·도별 등록 현황 .....      | 58 |
| <표 3-12>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수·출하액 .....      | 59 |
| <표 3-13>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 60 |
| <표 3-14> 전라북도 시·군별 사업체 현황 .....      | 61 |
| <표 3-15> 전국 시·도별 종사자수 .....          | 62 |
| <표 3-16> 전라북도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  | 63 |
| <표 3-17> 업체규모별 종사자수 .....            | 63 |
| <표 3-18> 중소기업 현황 .....               | 64 |
| <표 3-19> 중소기업 부가가치 .....             | 65 |
| <표 3-20> 직종별 고용 과잉률 비교 .....         | 65 |
| <표 3-21> 벤처기업 유형별 비교 .....           | 67 |
| <표 3-22> 도로 현황 .....                 | 69 |
| <표 3-23> 도로망 계획 .....                | 69 |
| <표 3-24> 전라북도 철도 수송 .....            | 70 |
| <표 3-25> 전라북도 철도사업 계획 .....          | 71 |
| <표 3-26> 항만시설 현황 및 능력 .....          | 72 |
| <표 3-27> 화물처리실적 현황 .....             | 72 |
| <표 3-28> 전라북도 해운 화물 수송 .....         | 73 |
| <표 3-29> 군산 항만 개요 .....              | 74 |

|  |     |
|--|-----|
| <표 3-30> 시설수급 전망 .....                   | 74  |
| <표 3-31> 발전 현황 .....                     | 75  |
| <표 3-32> 제조업 증분류별 전력사용량 .....            | 76  |
| <표 3-33> 산업단지 현황(2004년 6월말 기준) .....     | 78  |
| <표 3-34> 타 지역과의 공단용지 분양가 비교 .....        | 79  |
| <표 3-35> 전라북도 지방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    | 80  |
| <표 3-36> 전북 농공단지 입주, 고용, 생산, 수출 현황 ..... | 82  |
| <표 3-37> 전라북도의 조성 중인 농공단지 현황 .....       | 83  |
| <표 3-38> 전북 업종별 공장설립 추이 .....            | 84  |
| <표 3-39> 전북 입지별 공장설립 추이 .....            | 85  |
| <표 3-40> 단지별 경영조직 형태 .....               | 85  |
| <표 3-41> 대기업체 입주 현황 .....                | 86  |
| <표 3-42> 외국인 투자현황 비교 .....               | 87  |
| <표 3-43> 전북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수 .....            | 89  |
| <표 3-44> 시·도별 지방이전기업 현황 .....            | 91  |
| <표 3-45> 기업 규모별 이전대상지역 .....             | 93  |
| <표 3-46> 업종별 이전대상지역(수도권→지방) .....        | 94  |
| <표 3-47> 기업이전 경로(수도권→지방) .....           | 95  |
| <표 3-48> 지방이전 기업의 이전지역별 이전기능 .....       | 96  |
| <표 3-49> 이전지역별 입지수요 .....                | 97  |
| <표 3-50> 현 소재지별 신증설 대상지역 .....           | 98  |
| <표 3-51> 회사 최초 설립연도 .....                | 100 |
| <표 3-52> 연간 매출액과 직원 수 .....              | 100 |
| <표 3-53> 표본 기업 업종 .....                  | 101 |
| <표 3-54> 표본의 자산규모와 부지소유 형태 .....         | 101 |
| <표 3-55> 표본 기업의 생산품 형태 .....             | 102 |
| <표 3-56> 표본기업의 협력업체 수와 위치 .....          | 102 |
| <표 3-57> 기업 이전(입주)시기 .....               | 103 |
| <표 3-58> 입지정보획득경로 .....                  | 103 |
| <표 3-59> 소요된 기간 .....                    | 103 |
| <표 3-60> 이전(입주)동기 .....                  | 104 |
| <표 3-61> 전북에 대한 기업유치 여건 만족도 .....        | 105 |
| <표 3-62> 경영성과 .....                      | 107 |
| <표 3-63> 사업개선 측면 .....                   | 107 |

|   |     |
|---|-----|
| <표 3-64> 투자전망 .....                         | 108 |
| <표 3-65> 이전 의사 .....                        | 108 |
| <표 3-66> 이전 이유 .....                        | 108 |
| <표 3-67>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정도와 원인 .....         | 109 |
| <표 3-68> 경영상 애로사항이 되는 법적규제와 환경규제 분야 .....   | 109 |
| <표 3-69> 지원제도 .....                         | 110 |
| <표 3-70> 개선제도 .....                         | 110 |
| <표 3-71> 쌍대비교의 평가 매트릭스 .....                | 112 |
| <표 3-72> 쌍대비교를 위한 AHP 척도 .....              | 112 |
| <표 3-73> 행정지원 인센티브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     | 113 |
| <표 3-74> 전북지역의 SWOT분석 .....                 | 119 |
| <표 4-1> 국내기업 입지별 세제 지원내용 .....              | 127 |
| <표 4-2> 지방이전기업의 지원내용 .....                  | 127 |
| <표 4-3> 행정지원대상 산업 .....                     | 129 |
| <표 4-4>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                | 130 |
| <표 4-5> 전북도·시·군 기업유치 행정지원 제도 .....          | 131 |
| <표 4-6> 전국 시·도 기업유치 행정지원 제도 .....           | 134 |
| <표 4-7> 행정지원제도 접근의 기본방향 .....               | 136 |
| <표 4-8>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체계 .....          | 138 |
| <표 4-9> 대기업 지방이전촉진 제도 .....                 | 142 |
| <표 4-10> 배후도시 개발권 .....                     | 145 |
| <표 4-11> 산업은행 금융지원 .....                    | 146 |
| <표 4-12> 공장이전 유형별 지원기준 .....                | 149 |
| <표 4-13> 기업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             | 149 |
| <표 4-14> 보조금 신청시점 .....                     | 150 |
| <표 4-15>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비교 ..... | 160 |
| <표 4-16>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현황 .....             | 162 |
| <표 4-17> 환경부문 부담금 세출·입 규모 및 사용처 .....       | 163 |
| <표 4-18> 2004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     | 163 |
| <표 4-19> 환경관리 점검·단속권 이관 .....               | 164 |
| <표 4-20>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실적 .....     | 165 |
| <표 4-21> 전라북도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          | 165 |
| <표 4-22> 폐수 배출업체 점검·단속 실적 .....             | 166 |
| <표 4-23> 전라북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 166 |

|   |     |
|---|-----|
| <표 4-24> 환경관리 점검·단속의 문제점 .....              | 167 |
| <표 4-25>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 .....      | 167 |
| <표 4-26> 친환경적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UNEP의 제안 기준 ..... | 171 |
| <표 4-27>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업지원 및 환경교육홍보 .....   | 172 |
| <표 4-28> 노사분규 현황 .....                      | 173 |
| <표 4-29> 지역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                | 176 |
| <표 4-30> 국별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 및 노동손실일수 비교 .....   | 177 |
| <표 5-1> 기업 활용 유형별 입지시책 .....                | 187 |
| <표 5-2> 업종별·성장단계별 지원부서 .....                | 189 |
| <표 5-3> 집적지구지정 .....                        | 193 |
| <표 5-4> 외국인투자기업 직원 생활환경 애로사항 .....          | 202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                       | 6   |
| <그림 2-1> 지역별 기업 수의 연평균 증가율 .....              | 12  |
| <그림 2-2> 주요 지역의 사업체 수 증가율과 취업자 수 증가율 비교 ..... | 13  |
| <그림 2-3> 주요 지역의 사업체 증가율과 인구증가율비교 .....        | 14  |
| <그림 2-4> 주요 지역의 기업수 및 GRDP 연평균 증가율 .....      | 15  |
| <그림 2-5> 주요 지역의 기업수 및 산업생산의 지역경제 성장기여도 .....  | 16  |
| <그림 3-1> 실업률 추이 비교 .....                      | 50  |
| <그림 3-2>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 .....                    | 66  |
| <그림 3-3> 전라북도 업종별 벤처기업 .....                  | 67  |
| <그림 3-4> 사회간접자본 비교 .....                      | 68  |
| <그림 3-5> 전라북도 도로망 계획도 .....                   | 70  |
| <그림 3-6> 전북 철도의 여객과 화물수송량 .....               | 71  |
| <그림 3-7> 군장신항만계획(자유무역지역) .....                | 73  |
| <그림 3-8> 용도별 전력사용량 .....                      | 75  |
| <그림 3-9> 전북 계획입지 공장등록현황 .....                 | 77  |
| <그림 3-10> 전북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포도 .....       | 77  |
| <그림 3-11> 전북 국가산업단지 조업현황 .....                | 81  |
| <그림 3-12> 도산·폐업 원인 .....                      | 83  |
| <그림 3-13> 전북으로 이전해 온 기업 출신지역 .....            | 86  |
| <그림 3-14> 전북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                | 88  |
| <그림 3-15>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북 투자동기 .....              | 89  |
| <그림 3-16> 전북 업종별 외국인투자기업 .....                | 90  |
| <그림 3-17> 전북 입지여건 만족도 .....                   | 106 |
| <그림 3-18> 행정지원 인센티브의 계층구조 .....               | 112 |
| <그림 4-1> 입지선정을 위한 잠재적 결정요인 .....              | 135 |
| <그림 4-2> 수도권과 서울의 집중도 .....                   | 141 |
| <그림 4-3> 보조금 지원절차 .....                       | 150 |
| <그림 4-4> 부처별 2003년 부담금 징수실적 .....             | 161 |
| <그림 4-5>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 174 |
| <그림 4-6>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               | 175 |

|                                   |     |
|-----------------------------------|-----|
| <그림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요인 개선사항 ..... | 177 |
| <그림 4-8> 기업유치를 위한 노사관계 .....      | 179 |
| <그림 5-1> 국내기업 유치정책의 추진시책 .....    | 186 |
| <그림 5-2> 기업유치 추진 시스템 .....        | 191 |
| <그림 5-3> 전라북도 투자기업의 지원 체제 .....   | 195 |
| <그림 5-4> 외국기업 유치정책의 추진시책 .....    | 198 |
| <그림 5-5> 벤처기업 유치정책의 추진시책 .....    | 204 |
| <그림 5-6> 창업보육정책의 추진시책 .....       | 209 |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기업은 고용 창출, 파생 산업 생성, 소득 증대, 문화 등 지역 사회 기여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기업유치는 고용 증대 및 인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 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 고용과 생산 등의 복합 작용을 기초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지역에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기업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업유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지역에서는 외국기업, 국내기업, 창업활성화, 벤처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극심한 기업 집중이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가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 하고 있다. 전국 국토의 11.8%에 불과 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인구 46.6%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심해 전국의 5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이처럼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제조업의 지방 분산을 통해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역의 성장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내 기업의 지방이전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에서는 수도권 및 외국기업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기 위해서 세제, 금융, 개발사업 등의 지원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나 전라북도로 이전한 기업 수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 기업지방이전촉진사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전라북도 이전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 검토, 전라북도의 기

---

1) 건설교통부(2002),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업유치의 잠재력을 분석,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환경을 분석한다.

전라북도 및 국내·외 기업 환경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잠재적인 기업유치 역량 발굴과 전라북도 내 주요시설 및 기존 인프라의 분석을 통한 기업유치 능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중인 기업이전 및 유치 관련 계획을 조사 및 분석하여 기업유치 전략에 활용하는 데 있다.

둘째, 국내·외 사례를 통한 기업유치 성공전략을 분석한다.

국내 타시도의 기업유치의 성공사례 및 전략 분석과 외국의 기업유치의 성공사례 및 전략을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전략에 활용한다.

셋째,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이전해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북도에 이전한 동기, 이전과정의 문제점, 행정지원서비스에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신규 기업유치 전략에 활용한다.

넷째,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유치전략을 국내기업, 외국기업,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전략으로 구분하여 기업유치 전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비교 분석대상으로 하며, 연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및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을 조사 분석한다. 내용적인 범위는 전라북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기업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제도, 노사관계, 환경관련제도, 지원관련제도 등의 현황을 통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선방향에 따른 기업유치전략은 국내기업, 외국기업,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부분으로 나누어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통계 보고서, 논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종 통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여건과 유치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경제여건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전라북도가 지향해야 할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치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전라북도로 이전한 기업의 이전동기와 이전 만족도 및 투자인센티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계와 실무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라북도에 기업유치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추진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업유치의 경제적 의미와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유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들을 지역경제, 산업, 지방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라북도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선진국들의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제도적 장치 등의 환경과 기업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보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업유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선행적인 연구는 전라북도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분석,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관한 인문사회 환경을 비롯하여 기업체 현황 분석과 산업단지를 포함한 산업기반시설 현황에 대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잠재력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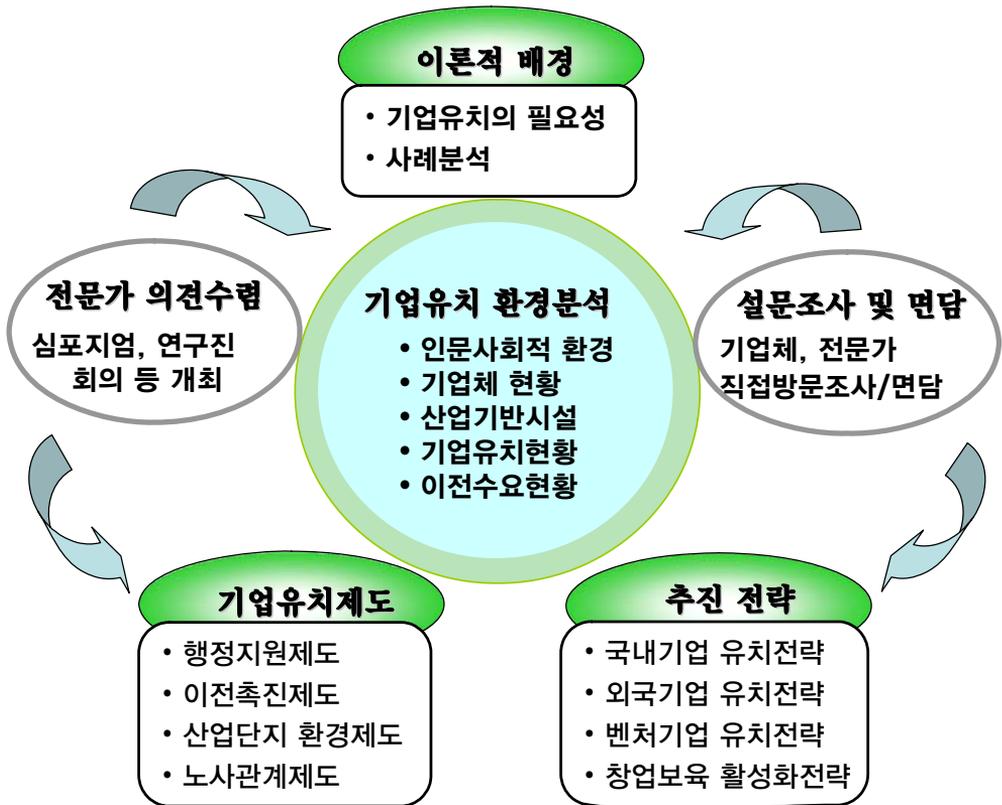
외국인투자를 비롯하여 전북지역으로 이전해 온 기업들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하여 이전 동기,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 행정지원제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북지역의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미래의 기회와 위협요인이 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관련 전문가, 학계,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여 연구수행과정 상 문제점 등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전라북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방향과 기업의 유형별로 유치전략을 수립하였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보조금과 조세를 포함한 행정지원제도, 지방이전촉진제도, 산업단지의 환경제도, 노사관계 제도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기업, 외국기업,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로 구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 제 2 장

## 기업유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 1 절 기업유치의 경제적 의의
- 제 2 절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 제 2 장 기업유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 1 절 기업유치의 경제적 의의

#### 1. 기업유치의 필요성

기본적으로 경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 둘을 결합시키는 기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경부를 축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도 울산, 포항 등 중화학공업의 입지를 통해 발전한 지역은 높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경제도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침체하기 마련이다. 전복으로 투자를 한 기업은 생산설비의 투자와 고용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 1) 경제성장 촉진

기업유치는 전라북도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업유치로 인해 전라북도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그 자체로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어서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생산가능 곡선을 확장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투자된 자본은 산업구조에 자본집약적인 형태로 흡수되어 전라북도의 자본축적을 늘리고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갖게 된다.<sup>2)</sup> 또한 지역의 성장 잠재력 등으로 인한 내부

---

2) 류승안,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책”, 국세, 2003.

역량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 투자자본과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크게 된다.

## 2) 고용창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낮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이 경우 고용비용이 낮은 지역 인력을 직접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라북도 내 잉여인력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업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다.

기업유치가 전라북도의 고용을 창출시키는 효과는 직접적인 창출효과와 간접적인 창출효과로 나누어지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투자기업이 전라북도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지역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고,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다시 전방고용창출 효과와 후방고용창출 효과로 나뉘고 전자는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 분배와 관련해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투자기업에 중간재, 원자재 등 부품을 공급하는 현지기업의 고용이 창출됨을 말한다.

기업유치가 갖는 지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 상황, 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투자 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부품도 지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유치가 지역의 고용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거나 기존지역 기업의 도산 등을 통해서 대량의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투자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 3) 기술이전

기업유치는 외부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전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로 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의 형태에는 타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직접적 형태와 직접투자를 통한 자본이동 과정에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이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 또는 시설재 등 자본재에 체화된 형태로 이전되게 되는 간접적인 형태로 기술이 도입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큰 비용부담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업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기술은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의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업이 지역시장에 익숙한 지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다 우월한 기업특유의 우의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투자기업의 기술파급효과는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하는 과정, 하청 기업들에 대해 기술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방연계효과와 생산된 제품이 중간 형태로 다른 기업의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전방연계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투자하는 기업은 현지기업의 R&D(Research & Development)활동이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에 체화된 형태로도 그 파급효과를 가진다.

#### 4) 부정적 효과

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 횡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투자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타 지역으로 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M&A(Mergers & Acquisitions)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지역 내 우량 기업들의 인수가 빈번해 지게 된다. 그들은 우세한 자금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앞세워 지역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 지역의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금난으로 핵심사업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지역기업의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기술이전이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므로 최악은 지역기업의 잠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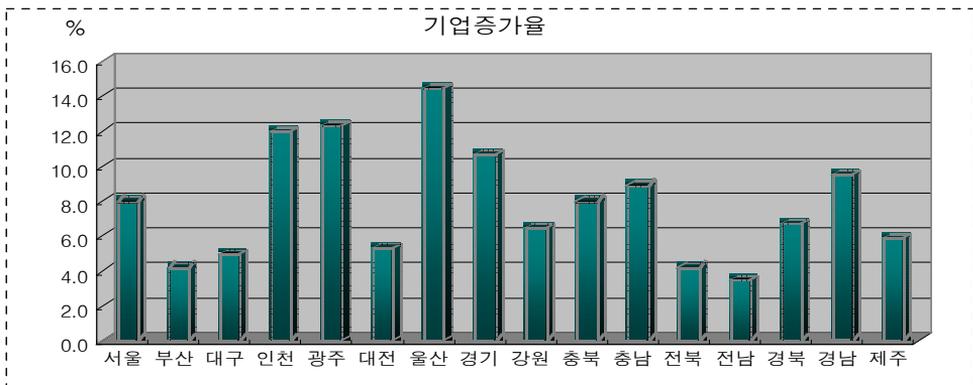
그리고 주요 업종에서 투자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독과점 횡포, 급격한 철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2.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 1) 기업과 지역경제의 관계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역산업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여긴다. 비단 해당 기업과 산업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의 발전이 서비스, 운송 등 연관 산업까지 부수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다.

지역별로 기업 활동의 여건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기업의 증가 추이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1998~2002년 기간 동안 지역별로 기업 수의 변화를 보면, 지역의 기업 활동 여건이나 지역 경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동 기간동안 기업 수가 변화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울산, 광주, 인천, 경기, 경남 지역이 10% 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 부산, 대구 등의 지역은 5% 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 또한 4.2%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하위권을 유지하였다. 이를 상위 지역과 하위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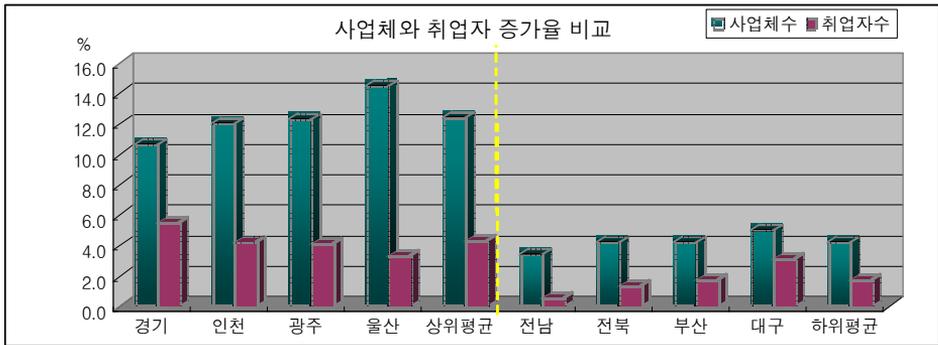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4년 평균)

<그림 2-1> 지역별 기업 수의 연평균 증가율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영향은 지역 인력의 활용에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는 자체의 직접적 고용 창출 이외에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창출, 인구 유

입으로 인한 학교, 의료기관, 각종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의 고용창출 등 간접적 고용창출도 나타난다.

연평균 제조업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취업자 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는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기업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한 결과, 연평균 기업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취업자 수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2-2 참조) 여기서 울산의 경우 사업체수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수 증가율도 3.4%로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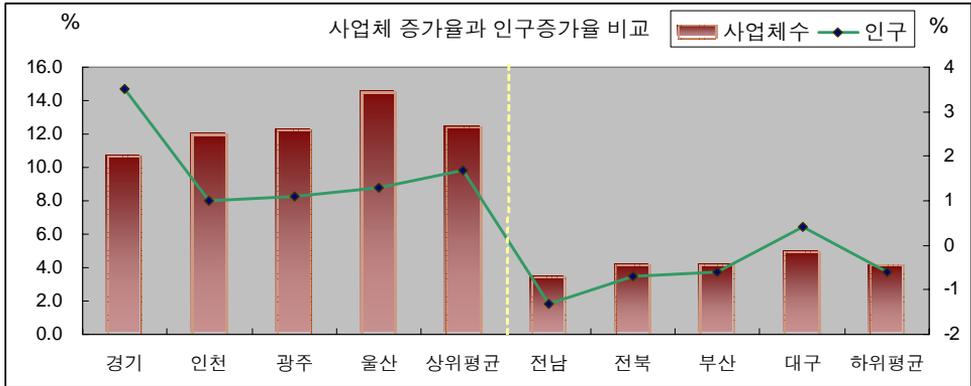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4년 평균)

<그림 2-2> 주요 지역의 사업체 수 증가율과 취업자 수 증가율 비교

취업자 수와 관련하여 기업의 증가로 인한 인구증가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된다.

사업체 증가율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기업수 및 인구증가율을 보면, 사업체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 수 증가율이 낮은 하위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취업자 수의 변화율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개연도 평균 4.2%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체 증가율을 보인 전라북도는 취업률 1.4%와 인구증가율 -0.7%를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인적자원과 그 구성요소가 되는 취업인구와 인구의 취약함을 보여줌으로써 기업의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부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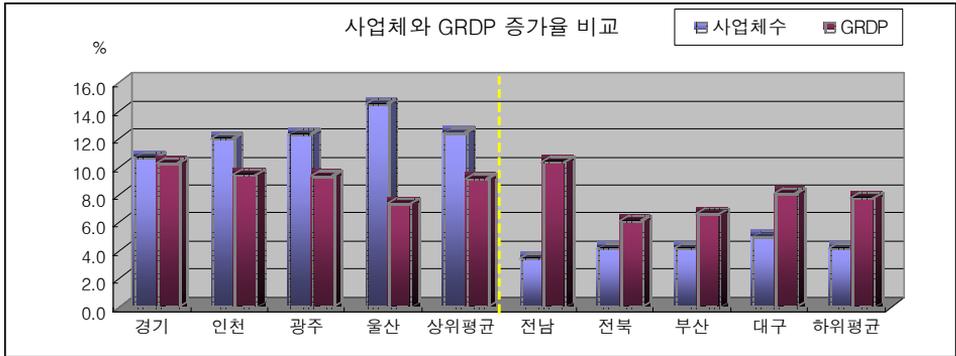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4년 평균)

<그림 2-3> 주요 지역의 사업체 증가율과 인구증가율비교

한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큼을 알 수 있는데,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자동차 조립공장 인근에 관련 부품업체가 입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산업 단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효과를 가져온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의하면, 현대·기아자동차에 직·간접 고용효과는 총 61.2만 명에 달하며, 이는 현대·기아차에 직접 고용된 7.7만 명을 비롯해 1, 2, 3차 부품협력사 등의 인원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기업수가 증가하는 지역은 지역 생산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지역의 생산액이나 생산량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를 종합하여 기업수의 증가와 지역 내 총생산을 비교한 결과, 기업수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4년 평균)

<그림 2-4> 주요 지역의 기업수 및 GRDP 연평균 증가율

또한 기업수의 증가는 산업 생산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연평균 기업 수 증가율의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에 대해서, 1998~2002년 기간동안 산업생산이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sup>3)</sup>를 비교한 결과, 기업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울산 지역의 기여도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업 수 증가율이 낮은 부산의 경우,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위 지역 평균을 비교해 보면, 상위지역의 경우 산업생산의 지역경제 성장 기여도가 14.8%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하위지역의 성장기여도는 6.4%로 상위지역의 기여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국내총생산을  $Y$ , 국내총생산의 구성요소를  $X_i$  라고 하였을 때, 국내총생산 각 구성요소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율(성장기여율)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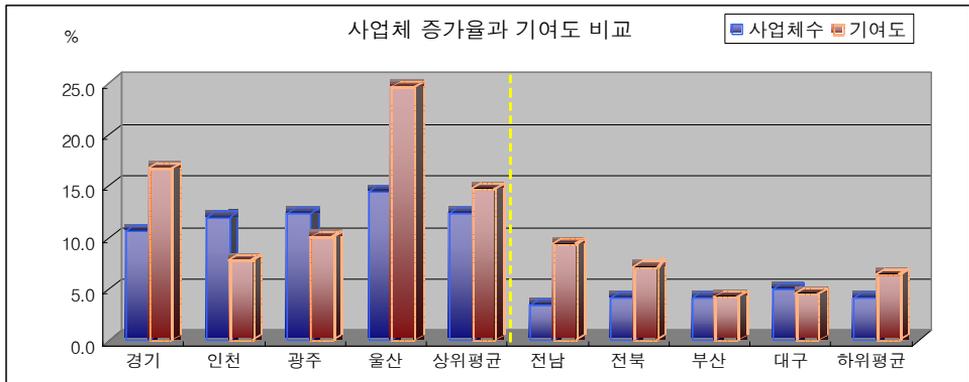
$$Y \text{에 대한 } X_i \text{의 기여율} = \frac{X_i \text{의 증감액}}{Y \text{의 증감액}} \times 100$$

$$\text{단, } Y = \sum X_i \quad (i = 1, 2, 3, \dots)$$

- 한편, 기여율에 통계치의 증감률을 곱하면 기여도가 되는데, 이는 통계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가 전체 증감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나타낸다.

$Y$ 의 변동량에 대한  $X_i$ 의 기여도 =  $Y$ 의 변동(증감)률  $\times Y$ 에 대한  $X_i$ 의 성장기여율

-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총생산은 그 구성요소인  $X_i$ (각 산업별 생산, 정부서비스생산자 등)의 합계로 나타나게 되므로, 국내총생산의 변동률에 대한 각 구성요소의 기여도의 합계는 국내총생산의 변동률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4년 평균)

<그림 2-5> 주요 지역의 기업수 및 산업생산의 지역경제 성장기여도

## 2) 기업과 지방재정의 관계

특정지역으로의 기업 유치는 취업기회의 확대와 고용의 증가를 통해서 지역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수입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러한 세입증대를 재원으로 지역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투자는 지역생산 및 생활환경수준을 계속 향상시키게 되고 더 많은 기업과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상호상승작용은 순환 및 확대 재생산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최영출(1994)은 지역의 산업구조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당해 지역의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유치,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제 2 절 국내·외 기업유치 사례분석

### 1. 외국 사례

#### 1) 미국 리치몬드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기업들이 몰려드는 '기업의 천국'이다. 일류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최대의 외자유입국으로 세계 직접투자의 26%를 흡수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의 다국적기업들은 미국 내 자회사 매출이 본사의 대미수출을 상회한다.

미국은 기업 활력을 높이는 제도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갖추어 세계 각지로부터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은 졸업 후에도 미국에 남아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시장이 존재하여 기업들은 값싸고 풍부한 자금을 쉽게 조달한다.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세계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70년대 과도한 규제,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 적이 있으나 80년대 초반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실시하여 회생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산업보호정책을 거부하고 다운사이징,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유도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기침체도 불사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경영자 및 근로자들을 각성시켜서 구조조정이 상시 진행되었다.

#### (1) 리치몬드의 기업유치

세계화·정보화와 더불어 촉진되고 있는 지방화, 즉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강조되는 지금, 미국 내 버지니아 주의 리치몬드시는 담배산업, 임업, 금속산업 등 쇠퇴하는 기존의 지역산업(traditional local industry)을 활성화하고, 생명공학, 반도체 등 첨단산업(hi-tech industry)을 유치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한 성공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리치몬드는 버지니아 주의 수도로서 시정부는 물론 주정부와 인근 카운티, 지역기업, 그리고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1994년 GRP(Greater Richmond

Partnership)라는 파트너십 형식의 법인(corporate)을 만들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기업의 재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광역 리치몬드(Greater Richmond, GR)지역은 최근 두 가지 놀랄 뉴스로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빗대어 실리콘 도미니언(Silicon Dominion)이라는 애칭을 얻었다. 하나는 미국 모토롤라와 독일 지멘스의 합작기업인 화이트 오크 반도체(White Oak Semiconductor)가 16억 달러를 들여 64메가비트 D램 공장을 설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토롤라가 이곳 웨스트 크리크에 30억 달러를 추가로 들여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모토롤라를 축으로 하는 이 같은 굵직한 투자 외에도 인터넷 선두주자인 AOL, 오라클, MCI월드컴 등도 북부 버지니아로 들어오고 있다.

리치먼드가 기업 유치에 성공한 가장 큰 요인은 친기업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다. 모토롤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리치몬드 지역의 지방정부, 기업인, 그리고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VCU)가 협의해 공과대학을 설립한 것은 기업 유치에 얼마나 큰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역 리치몬드지역은 기업 활동을 위한 미국 최고의 중소도시, 기업하기 좋은 남부지역 최고의 도시, 북미지역에서 비즈니스 조건이 개선된 10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는 등 언론으로부터도 호평 받고 있다. 이 지역에는 1백 50개 이상의 외국계열 기업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과거 리치먼드는 기존 산업으로 담배산업, 식품가공산업, 의약산업, 화학산업이 비교적 발달해 있었다. 그러나 전자산업이 빈약했고, 특히 반도체 산업은 없었다. 생명공학 분야도 없었다. GRP를 통해 리치먼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후 경영대학과 공과대학을 증설 또는 신규로 창설했으며 컨벤션 센터도 만들었다. 기업들 간에 경쟁을 촉진시키고 원가를 내리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광역 리치먼드에 대한 웹사이트도 만들고 대외 홍보를 강화했다. 구체적인 유치대상 기업을 집중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기업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당시 모토롤라는 생산비 감축을 위해 신규공장 생산입지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 쪽에서 각종 지원과 유인정책을 제시하여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VCU의 공과대학은 관련과목을 신규로 개강하고, 이 지역의 2개의 전문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조사했고, 유인정책을 쓴 결과, 모토롤라와 지멘스가 합작한 White Oak Semiconductor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되자 관련 원료

및 부품공급자 65개사가 동반 진출했고, 그 후 이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알려지자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게 됐다. 생명공학 분야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고, 그에 따라 고용기회도 증가하고 있다.

## (2) 시사점

리치먼드 시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GRP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으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했다는 것이고, 둘째, 대외홍보·유치전략에 성공했고, 셋째, 공공부문과 사기업부문 사이에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이 원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형성하고 어느 쪽도 지배권 또는 주도권을 갖지 않는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고, 공동의 기여를 하고 또한 원활한 정보공유를 하는 파트너십 운영에 성공했다는 것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 2) 영국 웨일즈

영국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실업증가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외국인 투자에 의한 고용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이것이 외자유치정책으로 강화되어 96년까지 영국내 외국인 투자 누계액은 3,447억 달러(EU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98년 영국의 총 고용 중 15%, 생산의 20%, 그리고 1995년 총고정자본 형성의 13.2%를 외국인 투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이 영국 내에서 기업할 경우 다양한 투자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영국이 투자유치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게 한 주요 원인이다.

영국의 투자유치기구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영국투자청(IBB)이 있으나 지역별로 별도의 투자유치기관이 있어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투자유치 관련 정부조직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영국투자청이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투자유치기구와 이들의 해외지사, 각국 주재대사관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 투자유치기구로는 스코틀랜드 투자개발청(LIS), 웨일즈개발공사(WDA), 북아일랜드 산업개발청(IDB) 등이 있다. 각 지역별 투자기구는 지방정부의 재

량권 하에 외국인 투자 승인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영국투자청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이루어진다. 투자기구들은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영국으로 투자를 많이 행하는 국가별로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어 투자가는 현지에서 해당 국가 담당자만 접촉하면 되고, 이 담당자는 투자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투자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가는 투자를 행하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 오로지 담당공무원 한사람만 만나면 된다.

### (1) 웨일즈의 기업유치

영국 전체면적의 약 11%(20, 779km<sup>2</sup>)를 차지하는 웨일즈는 과거에 석탄과 제철산업, 해운산업으로 인해 1920년만 해도 가장 번영하던 지역이었으나 2차대전 후 산업구조의 변화로 현재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과 침체지역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웨일즈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스스로 경제적, 제도적, 정신적 대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웨일즈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힘입어 Nortel, British, Airways, Ford, Bosch, Toyota, Sony, ACER 등의 세계적인 기업의 유치와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영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데, 여기서 웨일즈가 국내의 L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L기업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지역에 신규로 생산거점을 확보하고자 하여 1995년 8월 웨일즈개발공사가 L기업의 공장입지 타당성 조사팀과 처음 회합을 가진 뒤, 9월 웨일즈청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투자유치를 논의하였다. 1996년 6월 양측은 서울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7월 10일 조인식이 이루어졌다. 1997년 1월에는 L기업 공장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이후 공장건설과 종업원채용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졌으며, 11월에 공장일부를 완공 제품생산에 들어갔다.

L기업은 뉴포트(Newport) 지역에 위치하는 332에이커(407,151평)의 임페리얼 기술단지(Imperial Park)내에 약 250에이커(306,590평)의 부지 내에 입지하였으며 총투자비는 17억 파운드로 단일 해외직접투자로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대 규모에 이르고 있다. L기업 공장은 칼라TV, 모니터,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며, L기업 반도체공장은 웨이퍼를 조립하였으며 L기업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6,100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18,000명의 간접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 (2) L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L기업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접근하였으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웨일즈청(Welsh Office), 웨일즈개발공사(WDA)가 담당하고 기타 지방정부와 준정부조직 및 비정부조직을 연계하여 정책관리체를 운영하였다.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팀(Team Wales)을 조직하고 소스웨일즈(Source Wales)<sup>4)</sup>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단기간에 L기업과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었으며 1995년 8월 처음으로 양측이 회합한 이래 1996년 7월 약 11개월이라는 단시일 내에 투자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는 지역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 웨일즈청과 웨일즈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방정부, 준정부조직, 비정부조직, 지역주민과의 수직·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공장건설에 필요한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도시계획관련업무, 환경영향평가업무 등을 신속히 처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투자유치와 관계된 기관들을 각각 역할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웨일즈청(Welsh Office)

중앙정부인 웨일즈청은 관할지역내 도시 및 농촌계획에 대한 계획정책지침(Planning Policy Guidance : PPG)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의 도시계획에 개입하였으며 지방정부가 교통 및 기반시설, 주택, 환경보전, 경제개발, 관광, 에너지, 토지개발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침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고속도로, 간선도로, 철도 등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웨일즈청은 L기업이 신청한 도시계획 허가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법적,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허가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마련하는 계획정책지침(PPG)을 활용하여 L기업 공장입지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불

---

4) 'Source Wales'사업이란 지역 내 부품업체 지원 서비스로서 웨일즈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웨일즈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부품생산업체를 발굴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시계획관련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보장된 우회처리(by-passing)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웨일즈개발공사로 하여금 부지매입 및 확보, 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신청 등에 적극 개입, 지원하도록 유도하였다.

#### 나. 웨일즈개발공사(Wales Development Agency : WDA)

웨일즈개발공사(WDA)는 웨일즈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재조정할 목적으로 1976년에 설립되었다. 50~60년대 정부주도로 발전했던 섬유 석유화학공업은 70년대 들어 석탄, 철강, 철광공업과 함께 급속직하로 후퇴하기 시작하여 이러한 산업구조를 재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WDA는 “유럽에서 비즈니스하기 가장 좋은 환경 만들기”에 목표를 두고, 질 좋은 노동력을 많이 갖춰놓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웨일즈개발공사의 기업 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부품업체 및 협력업체 지원, 기술지원, 인력 훈련 및 교육 등 3가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부품업체 및 협력업체 지원서비스로는 소스웨일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 지원서비스는 관련기술자, 단체, 협회 등을 조직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각 생산업체의 기술적 측면의 장단점을 파악, 단점을 보완하여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는 현장기술심사제(on-site technology audit)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인력 교육·훈련 지원서비스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직장을 알선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대학, 훈련 및 기업위원회(TEC)와 공동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웨일즈개발공사(WDA)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다. 기타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계된 기관은 정보통신 인프라(super-highway), 인력의 정보화 교육, 지역 내 기업들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웨일즈 정보공동체(Wales Information Society : WIS)와 EC(유럽공동체)의 조사 및 기술개발 활동과 결과물을 웨일즈지역 산업에 전달하기 위해 설립한 웨일즈 릴레이센터(The Wales Relay

Centre : WRC) 등이 있다.

### (3) L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내용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장기저리의 차관제공, 기반시설 및 부지 제공, 노동력 훈련, 각종 규제완화, 기업자산 매각 후 리스 허용, 경영 및 마케팅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등이 있으며 웨일즈 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 (Team Wales)로 운영하고 있다.

웨일즈개발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경영서비스와 금융지원서비스(투자인센티브 제공)인데 경영지원은 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한곳에서 필요한 각종 자문과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으며 영국내의 부동산 개발정보 뿐만 아니라 웨일즈 지역의 부동산개발현황과 투자대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허가신청 업무를 자문, 지원, 대행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대부분 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받는 보조금 형태의 인센티브는 지역선별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 RSA)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다.

지역선별보조금(RSA)과 지방정부 인센티브 패키지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사 레벨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RSA가 전체 투자인센티브의 70%, 지방정부 인센티브 패키지가 30%정도이며 RSA는 전체 투자금액의 30%로 제한되고, RSA와 지방정부 인센티브를 합한 총 인센티브 제공금액은 투자총액대비 약 40%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RSA의 제공여부 및 그 수준이 먼저 결정되고, 지방정부가 이를 참조하여 지방정부 인센티브 패키지내용을 투자자와 협상하여 결정하고 있다.

가. 투자인센티브의 종류 및 지원내용

#### ○ 지역선별보조금(RSA)

-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투자보조금으로서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up>5)</sup>에

---

5) 투자지원지역(Assisted areas)은 실업률이 35%에 달하는 지역에 설정되며,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가 특별지원을 담당한다.

투자할 경우 제공하며,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차이는 없음

○ 웨일즈개발차관(Wales Development Loan)

- 사업 확장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이용시 제공되고, 건물, 플랜트 및 설비 구입 시 우선 제공되는 자금으로 최고 10만 파운드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자만 지불하면 됨

○ 기술증진기금(Technology Growth Fund)

- 기술분야의 성공적인 개발 및 새로운 제품의 출시, 공정처리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설립, 최고 15만 파운드까지 지원
- 독자적인 기술에 의한 혁신적인 제품 또는 공정처리와 관련 있는 사업, 시장개척에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잠재적인 이윤획득 및 양호한 투자회수 가능성이 있는 사업 등에 지원
- 기술기금 용자금에 대한 상황, 이자 및 로열티 조건 등은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의 재정형편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될 수 있음
- 기술기금은 위험부담을 조건으로 하며 사업체에서 권리를 포기한 독자적인 기술을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주식기금(Equity Funding)

- 약 5만 파운드 규모로서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민간부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최고 25만 파운드까지 지원
- 분담금은 사업활동기간 중 개발청에 지불할 수 있으나, 사업이나 업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적합하게 조정 가능

웨일즈개발공사가 L기업 전자와 반도체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의 총액은 2억 4,300만 파운드에 달하며 웨일즈개발공사 보조금이 1억 5,590만 파운드로 전체의 64.2%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L기업 전자에 1억 1,800만 파운드, L기업 반도체에 1억 500만 파운드를 보조하고 있다. 웨일즈개발공사의 보조금은 주로 L기업 공장 부지매입

과 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되었다

#### (4)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서비스

웨일즈는 양질의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을 투자요인책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석탄, 철광, 철강산업이 발달하여 우수한 노동력은 풍부한 반면, 임금은 영국 평균에 비해 11%, 영국 남동부보다는 9.5%싸다는 이점을 강조하였다. 웨일즈의 노동생산성은 영국 평균보다 12.9%가 높고, 근로자들의 병가율도 영국 평균 4.3%에 비해 웨일즈는 3.8%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불어와 독어, 이탈리아어 구사자가 웨일즈 1만6천 명 정도 있고 지방정부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외국어 훈련프로그램도 풍부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일예로 영국 여러 지방 중 웨일즈 엑센트가 섞인 영어가 가장 알아듣기 쉽다는 대답이 95%라는 조사결과까지 제시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도착하면 비즈니스외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를 웰컴투서비스(Welcome to service)라고 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슈퍼마켓 가는 법, 자동차 운전면허증 얻는 방법, 말배우기, 문화적 차이 익히기 등 비즈니스 외적인 서비스까지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새로운 투자매력의 창출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도 편한 만큼 떠나기도 쉬우며, 즉 계획된 투자를 중도 하차하거나, 투자규모를 줄이는 일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투자가 완료된 후에도 투자업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외에도 기업의 자산 및 금융지원, 기존 투자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지원, 품질관리 지도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유치된 해외투자가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새로운 투자매력의 창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 과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단순 조립생산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개발인력 확충을 통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금융지원 패키지, 풍부한 노동력 등의 기존의 투자매력 이외에 첨단인프라의 구축, 네트워크의 강화, 국제수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등 새로운 투자 유치프로그램

개발 등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 (5) 정책적 시사점

L기업 투자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웨일즈의 투자유치과정을 고찰하여 핵심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핵심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가. 유기적인 협력체계

지역발전 및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각 이해당사자간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어느 한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수행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계획과 관련되는 해당기관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제까지 정부기관이 주도하던 방식으로는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힘을 통합함으로써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계획방식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개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등의 사업에 적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영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웨일즈는 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협력적 계획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영국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새로운 협력관계와 협력체계가 활발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세입의 한정과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 등으로 국가활동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반면 공공과 민간부분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졌으며 재정 불균형의 심화, 기업부문의 수요증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정치적이념이 반국가주의(anti-statist)와 정부기관의 정당한 집행을 선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참여자들이 전략을 개발하고 통합하여 협력과 제휴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관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관간의 역동성과 상호관계성을 바탕으로 하여 협상과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세력과 기관능력을 형성함으로써 협력적 공간계획 수립, 집행과 중앙-지방정부간의 계층적 공식관계보다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조직이 논의와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공동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를 더 중시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책의 제안과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

#### 나. 전담조직 개편

웨일즈개발공사(WDA)는 전략적 협력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준정부조직으로서 중앙정부인 웨일즈청, 지방정부인 뉴포트시, 기타 환경관련단체,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 담당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시스템 경쟁력의 극대화, 즉 단순한 언어소통이 아니라 국제적 마인드로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웨일즈개발공사의 포괄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정능력은 투자유치에 관한 도시계획권한에서부터 금융지원책, 기술정보, 경영 컨설팅까지 총체적인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한 일대일(one-to-one) 대응으로 투자가의 신뢰획득 및 전문성을 향상 시키게 되었다.

#### 다. 인프라 구축

자가는 최초의 담당자 1인과의 접촉만으로 투자 상담에서부터 공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리 가능하며 투자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프라의 구축하기 위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 단순히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자원과, 인프라, 인력을 이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단기업의 유치를 위해 국제적인 수준의 지역 내 부품업체,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생산능력을 재고시키고 있다.

#### 라. 지속적인 노력

산업경쟁력 창출을 위한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프로세스를 낳았다. 외자유치 자체에 목표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한다. 예를 들면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기술, 정보, 인력을 하나로 묶어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인프라, 숙련된 기술인력,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갖추려는 노력 외에 단순히 공장부지만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투자유치행태와는 큰 차이점이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유치된 해외투자가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새로운 투자매력의 창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운 단순 조립생산에서 벗어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디자인과 개발인력을 확충하고 첨단기술과 정보를 손쉽게 생산하고 공

유하는 혁신적인 지역분위기의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 마. 적극적 마케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정보도 투자유인책으로 활용하며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절함도 빼 놓을 수 없는 투자유인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주재원의 정착과 생활정보를 제공, 문화적 차이 익히기 등 비즈니스외적인 서비스까지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는 투자기업에게 많은 동기와 가능성을 부여하여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투자한 기업은 담당자 한사람을 창구로 하여 상담에서 최종결정까지 일괄 처리하게끔 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및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개개인에게 접근하는 구체적인 마케팅전략은 이들의 또 다른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3) 중국 푸둥지구

중국은 문화대혁명, 당산 대지진 등의 후유증과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1976년 개혁개방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고 1978년에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했다.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소핑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주장했다. 점개방(1978~83년)→선개방(84~87년)→면개방(88~91년)→전방위 개방(92년 이후)의 단계로 개방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했다. 1992년 덩소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국경지역 및 내륙지방으로 개방이 확산되었다. 1999년 말부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집중 지원 하에 서부 대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 정부는 개방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어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부터 상해·푸둥지구를 최고의 인프라와 one-stop서비스를 갖춘 자유무역구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외국 기업유치를 실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훗날 외국 투자기업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 (1) 푸둥지구 현황

상하이에는 태평양과 중국 양자강이 합류하는 교차점의 도시로서 1,400만 인구에 면적이 4,340만km<sup>2</sup>이며, 이중 푸둥지구는 황포강을 끼고 포서와 포둥으로 나누어지는데 총면적은 556km<sup>2</sup>이고 인구는 240만 명이다. 1991년부터 중국의 개발개혁의 모델로 상징되는 푸둥지구를 전격 개발하게 되어 경제중심, 상업중심, 금융중심, 과학기술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푸둥지구의 사업 지역별로는 다국적기업 지구본부 28개, 국내대기업본부 34개, 국내투자기구 80개, 중국과 외국금융구가 130개 있는 중국에서 유일한 금융무역지역인 육가취와 바이오 메디신과 정보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장강과학기술구, 52개국의 국내 외기업과 102억불을 투자 유치하여 23개국 5백여 명의 다국적기업의 고위급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금교수출가공구, 60여개 국가로부터 6000여개의 투자 항목을 유치하였고 이중 세계 500강 기업에 속하는 7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물류기업을 포함하여 투자 총액이 650억불을 넘는 외고교보세구 등이 있다.

### (2) 푸둥지구의 개발 및 투자유치

상하이가 성장동력과 발전잠재력을 억제해 온 지난날의 경제 및 국토개발 전략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이 채택, 선포되면서부터였다. 1980년대부터 광둥성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산터우(山斗), 푸젠성(福建省) 샤먼(廈門), 하이난성(海南省) 전체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과감한 대외개방과 대내개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선전경제특구 등에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성과에 만족한 중국정부가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거점과 견인차 역할을 상하이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푸둥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여기서 푸둥지구의 개발과 개발과정을 대략 준비단계, 기초개발 단계, 기능의 특화와 고도화 병행추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개최해온 상하이와 푸둥이 도시발전 전략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푸둥지구의 개발구상과 여론조성을 추진하였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푸둥지구 개발·개방방침을 확정하고, 그 이후 1992년 말 까지 정책과 조직영역에서의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지휘시스템의 확립 및 푸둥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정책과 법규를 제정하였다. 또한 3개 중점개발 소구인 루자췌이 금융무역구, 진차오(金橋)수출가공구,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의 초기 건설공정을 진행하면서 대외선전을 확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초개발 단계에는 실질적인 개발·개방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정책을 실시하고, 상술한 3개 중점소구이외에 장장고급과학기술지구(長江高科技園區)를 추가한 4개 특화기능의 중점개발단지 개발업무를 담당할 국유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국유토지를 자본금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기존 시가지인 푸시지구와의 연결 교통망과 항만 및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1996년 이후부터는 기초개발을 지속하면서 기능의 특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반시설 방면에서는 푸둥신국제공항 1기 공사 완공 개통, 와이가오차오 항만, 지하철 2호선, 푸둥신공항 연계도로 등을 건설하여 기초를 다지고, 3차 산업을 금융, 무역 위주로 특성화·고도화를 시키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개방이 추진된 푸둥지구가 불과 10년 정도의 기간에 이룬 성과를 요약하면,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현대적 산업체계를 건립하고 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중국 내륙시장과 세계를 연결하면서, 상하이가 목표로 내건 ‘국제 경제·금융·무역중심’을 향하여 꾸준히 전진하며,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1990년부터 2001년 말까지 푸둥신구에 외국기업 직접투자총액은 381.95억 달러, 계약외국자본(合同外資)이 164.52억 달러, 외국기업 투자항목은 7,515 건이다. 2001년 한 해에는 외국기업 직접투자가 37.61억 달러이고 계약외국자본은 20억 달러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기업 중 73.6%가 고급과학기술 공업 분야에 투자하였다.

또한 ‘금융·무역산업 우선’의 전략지침을 고수하고 지원하였으며, 중국 최초로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를 설립하였고, 보세구를 설치하여 금융무역업무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였다.

### (3) 시사점

중국정부와 상하이시는 국내외의 정세흐름 등 객관적 조건과 자신이 보유한 능력과 의지를 정확히 파악한 바탕 위에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적합하게 설정하였고, 실현을 위한 과감한 개혁·개방 시책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푸둥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하이시와 장강삼각주 중하류 지역은 물론 중국 전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거점과 국제 무역·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 하에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하여 과감한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목표가 설정된 후에는 중앙과 지방이 협조하는 추진체제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이 같은 중국정부와 상하이시의 푸둥개발전략 추진태도와 절차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하이는 소유제 개혁의 중요 부분인 국유토지의 토지사용권 상품화 및 사유화 정책을 통하여 도시개발재원 확충과 강력한 도시개발규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통한 사용료 수익은 중요한 도시건설재원이 되고 있으며, 상하이 소재 국유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자할 경우 국유토지를 자본화하여 투자하는 방식 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모든 토지가 국유(全民所有)나 공유(集體所有)이므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위하여 용지를 필요로 하는 개발주체는 시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유상양도 받는 과정에서 지주인 정부로부터 강력한 개발행위상의 요구조건을 수행해야 하고 통제에 따라야한다.

이 같은 틀 속에서 시정부는 개발계획내용을 상하이시 토지이용총체계획(土地利用總體規劃)과 도시계획(城市規劃), 연도별 건설용지계획 및 도시계획관리기술규정 등에 따라 심사, 비준한 후에야 국유토지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게 된다. 푸둥신구의 개발 및 투자유치도, 이처럼 정부가 토지사용권 양도 단계부터 강력한 계획적 규제와 지침에 의해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총체계획, 그리고 상세계획의 요구 충족 정도를 검토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푸둥개발 전체적인 기획 이외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나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 전문가와 함께 육가취 중심구의 기획에 관한 국제설계경쟁을 진행하여 푸

동의 기획이 세계 각지 기획의 정수를 섭렵할 수 있게 된 점도 성공적이었다.

푸둥지구의 가장 큰 시사점은 개발기획과 계획수립은 상해시 소조설계연구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부문 개발구역에 대해서는 공정한 국제입찰 경쟁을 통해서 실시 외국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 기업유치를 실시하면서 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훗날 외국 투자기업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 4) 싱가포르

##### (1) 싱가포르 투자유치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악화된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개발에 착수했다. 초기에는 사회 인프라와 산업기반, 국내자본의 부족 등으로 싱가포르는 자력에 의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불가능했다. 수돗물을 전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의존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60년대 후반부터 국제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경제개발청(EDB)의 적극적인 유치전략과 각종 우대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민간기업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외자유치를 주도했다.

첨단 제조업과 국제비즈니스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세계 수준의 통신 및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금융, 투자지원정책은 서비스기업의 경우 3년 이내의 사업 활동비의 50%를 지원하고, 국내업체 기술지원은 기술이전, 경영향상을 위한 해외자문의 경우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R&D 지원도 30%~70%를 지원하고 수출금융도 수출자금의 1~3개월간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행정절차를 One-stop 서비스 체계로 구축함으로써, 투자심사, 투자, 입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편리하고 간편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행정 및 경제제도상의 지원정책도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며, 통관

및 무역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경제환경 측면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첨단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외국기업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싱가포르의 경쟁우위요소를 크게 분석해 보면 다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경제관행, 언어문제, 생활패턴 등이 서구기업이나 동양계 기업이 모두 적응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총인구의 45%가 영어생활자, 언어소통가능자가 95% 수준임). 둘째, 싱가포르의 산업클러스터를 꼽고 있다. 현재 5가지 주요 산업클러스터로는 생명과학산업, 화학산업, 전자정밀기기, 물류수송엔지니어링산업, 다국적 운영기업본부 등이 있다.

이제 싱가포르는 물동량 9.1억 톤의 세계 최대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다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했다. 무역, 정부규제, 외국인투자 분야 등에서 싱가포르는 세계 1~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칼텍스, 필립스 등 2,500여개 외국기업들의 지역본부가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다.

## (2) 시사점

### 가. 지원과 투자인센티브

싱가포르는 다국적기업의 지역총괄본부와 국제조달사무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공해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육성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영업총괄본부(OHQ)제도를 1986년에 도입하여 OHQ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면세혜택을 주었고, 사업총괄본부(BHQ)제도를 1994년에 도입해 신기술분야에서의 투자소득에 대해 10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경제개발청이 각종 인센티브 심사와 결정을 하고 원스톱 서비스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경제개발청과 기타 기관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장려정책으로 안정적 투자 환경을 조성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 나. 산업입지

완벽에 가까운 인프라 시설구축과 효율적 투자지원제도 등이 싱가포르의 기업 및 투자유치에 있어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발달된 금융, 통신, 물류 인프라와 완벽에 가까운 영어소통 가능성, 평화적 노사관계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력적으로 알려진 곳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공공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외국기업에 완전 개방한 이 나라는 One North Project를 추진하여 'Work·Live·Play'라는 기본 개념을 표방하면서 고급인력 유치에 필요한 완벽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200만ha 규모의 연구동과 비즈니스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60% 이상의 공간을 레저·위락·교육·의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분위기의 기업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항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다국적 물류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 많은 외국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 5) 핀란드

핀란드는 90년대 초 금융위기를 겪은 후 구조조정, 투자개방 등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 엔진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1994년 「핀란드: 지식기반사회」라는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GDP의 3%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정보통신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결합되어 노키아라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탄생했다. 제지회사였던 노키아는 90년대 초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정보통신 전문기업으로 변신한 것이다. 노키아는 핀란드를 먹여 살리는 대표기업이자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휴대폰 시장점유율 세계 1위에, 시가총액 기준 유럽 최대기업이며 연간 핀란드 GDP의 15%, 수출은 국가 총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산학협력체제를 통해 노키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노키아는 헬싱키, 울루(Oulu) 대학 등과 120여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노키아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상 직속기구인 과학기술정책이사회(VTTN)에는 노키아그룹의 CEO가 외부전문가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VTTN은 핀란드 과학기술정

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외부전문가 10명, 정부각료 7명으로 구성되며 연간 3~5차례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핀란드 정부의 기업유치 주요 정책은 민간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관주도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민간기업들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고 있다.

## 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1세기 국가비전 달성의 산업 개발 동인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세감면 등 광범위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첨단산업 등에 10년간 소득세 면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서비스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안정적인 투자환경, 지자체의 경쟁적 유치 노력이 외국인투자 유치의 성공요인이라면 말레이시아 같은 후발개도국은 불리한 투자여건 극복을 위해 조세 감면 등 광범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외자 유치 조직을 살펴보면 중앙에서는 산업개발청(MIDA)이 담당하고 있는데 통산부 산하 외청으로 1967년 설립되어 투자 유치 정책을 전담하고 있으며 해외사무소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정부의 유치활동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 조직으로는 연방 주별로 별도의 외국인투자 지원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MIDA 소속 내 13개 지방 사무소를 두고 있어 밀착된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MIDA가 강력한 권한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 조직의 효율성 이외에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국민성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 등이 말레이시아 외자 유치의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 2. 국내 사례

### 1) 경기도 파주시

#### (1) 유치 배경

통신분야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모토로라(Motorola Inc.)가 1967년 754만 달러를 투자하여 모토로라 코리아(Motorola Korea Ltd.)를 설립하였다. 이는 모토로라 최초의 해외 반도체공장으로, 아시아지역에 건설된 최초의 생산시설이었으며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조립 후 전량 수출하는 보세가공공장의 형태였다.

당시의 한국투자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은 유휴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이후 모토로라 코리아는 불모지이었던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모태가 되어, 이후 국내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모토로라의 국내 수출과 고용의 형태를 추이해보면 69년 12백만 달러이던 수출액이 88년에는 248백만 달러로 20년간 20배의 증가율을 보이며 80년대 중반까지는 수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이후 80년대 후반부터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모토로라 코리아의 한국투자는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모토로라 코리아의 지속적 한국투자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모토로라사에서 처음에 한국진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메리트로 떠올랐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노사관계의 악화 등으로 노동자가 공장을 점거하는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한국투자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공장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반도체 생산은 대만 등의 타국으로 이동하고 이에 저부가가치제품만 생산하게 된 모토로라코리아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장확장을 통한 신규투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67년 입지당시의 서울시 광장동은 서울의 외곽지역에 속했으나 공장주변부의 시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주변에 주거시설의 대규모 조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공장 이전요구와 민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도권집중억제 정책에 따라 증설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이전의 공장부지 무료 또는 저가공급, 생산시설 자금 장기 저리융자 등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모토로라 공장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토로라사는 90년대 초반이후 신규사업인 통신제품(셀룰러폰, 페이지)의 호황에 따라 지속적 한국투자 필요성 증대와 경쟁지역인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임금은 비싸나 질과 생산적인 면에서 우수한 한국의 재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모토로라코리아는 재 입지를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먼저 모토로라 코리아는 기존 광장동 공장부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를 매각하면 추가투자 없이도 신규공장의 설립이 가능함을 본사에 제시하고 신규공장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장기근속자의 누적에 따른 고비용구조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통신사업 부문에 대한 확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에 이른다.

## (2) 새로운 공장부지의 입지선정

모토로라 코리아의 새로운 공장부지의 입지선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우선 서울시 바로 인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철저히 제한되었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개발유도권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경기 서남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장이전이 어려우나, 이 지역은 서울에서 통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조건들은 회사 내 사정 및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나, 법·제도상의 규제는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

‘국가경쟁력’의 중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적정 이전지 확보 가능성이 확대되었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이 실시되었고, 93년에 수립된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수도권의 권역구분을 종래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이전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모토로라코리아에서는 이전관련문제를 처리할 대행사로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였다.

이전예정지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소재 문발 제2공단을 선정하였다. 서울에서 42Km거리로 자유로 등을 이용해 1시간이내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김포공항까지 30Km로 접근성이 양호하며, 향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유리한 것을 고려하였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94년1월) 및 동시행령(94년 4월)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94년 7월)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라도 첨단업종에 해당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업단지로의 이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3) 이전과정

이전결정 후에도 공단의 조기 조성 문제, 인프라공급 문제, 공장설립관련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었다.

문발 제2공단은 당시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공단조성을 위해서는 이후 토지수용, 하부구조 확충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며 공단 계획시부터 완공시까지 평균 5년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속해 있어 건물고도를 15Km까지로 제한해 공장 설립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기본적 인프라시설인 전력, 통신, 가스, 용수 등의 공급도 필요했다. 모토로라코리아 이러한 이전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하였다. 우선 국내사정에 밝은 대행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부는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개입을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조속한 실행을 확인하였다. 2차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관련부처로부터 공단조성의 기본적인 지원책을 확보(공단조성 절차의 완화 및 전력·통신·가스 등 하부구조의 설치지원)하고 파주시 및 경기도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실행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용지가격 인하, 지방세 감면, 조속한 기간 내 공단조성 및 인프라시설 설치, 공장설립지원을 하기에 이른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조정으로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단지정고시 이후에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를 공단지정절차와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 등 행정처리기간을 35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입지개발지침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지방공단 조기지정을 촉구하였다.

#### 가. 구체적인 절차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92종에서 32종으로 감소시키는 등 중복되거나 단순한 행정편의목적의 서류를 폐지하였고, 공단개발이전에 분묘 등 지장물의 이전대책, 기반시설공급계획 등을 세우도록 하여 공단지정 신청 시에 미리 묘지 등 지장물의 이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

하였다. 공단지정 신청 이전에 입주기업체의 수, 부지규모, 전기, 용수,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소요량에 대한 조사평가를 철저히 하였다.

#### 나. 사업자금의 확보와 용지가격 인하

모토로라가 선급금 128억원을 미리 납부하고 당시 내무부의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경기도를 통해 융자해주어 사업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총 6억원 지원 및 국유지의 저가매입을 통해 모토로라 코리아는 비교적 자금 압박을 덜 수가 있었다.

#### 다. 인프라 조기공급

상수도관, 통신시설, 가스시설, 전력, 오폐수처리장 등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각 부처의 지원사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통일동산에서 문발공단까지 직경 600m/m의 상수도관을 총연장 15Km만큼 설치, 통신시설로 데이터 송수신용 424회선 공급, 일산신도시에서 봉일천-금촌-교하로 도시가스 연결, 한전에서 모토로라 측의 부지제공을 조건으로 154Kw 용량의 변전소를 건설하여 공급하였고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등의 부대사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추진 가능하였다.

#### 라. 지자체의 지원사항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 한전, 전화국, 가스공사 사업비 부담액의 납입대행
- 상수도관로 설치 중 일부 구간이 난공사로 인하여 공정이 지연되자, 공장시험가동 기간 초기 2.5개월간 시정에서 저수조 물탱크에 물을 운반 공급
- 조속한 공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지자체의 원스톱서비스 시행
- 토지수용 및 분묘이장을 위한 주민설득 편의 제공
- 시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토지보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토지보상관련 등기서류를 보상 신청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행정서비스 제공
- 시장이 세무서장과 양도소득세감면을 위한 협의 등 주민 편의제고 노력
- 공장의 조기완공을 위해 공단지조성과 공장건설을 동시진행

- 모토로라가 사용할 부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모토로라 공장건설 · 나머지 부지조성 · 인프라 건설 동시 진행
- 공장건설 기간동안 시청직원 3~4명이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상주
- 파주시, 민통선 내 환경영향평가 용역시 생태계조사를 위한 출입허용에 편의 제공(6일 만에 조사완료)
-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공단조성용부지 수용 재결
- 경기도에서 공단준공 전 사용허가 및 외국인 토지취득인가에 대한 특례적용 및 신속 처리
- 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건물고도제한 완화
- 군사분계선 인근지역에 미국계 세계적 다국적기업의 유치는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

#### (4) 파주시에 미친 효과

우선 파주시는 외자유치에 대한 공무원의 자신감 및 투자여건 향상을 가져왔으며 대규모 쇼핑몰, 위락시설단지, 국제 태권도장, 외국인 전용공단 등을 외국자본유치를 통해 건립할 계획에 있다. 또한 휴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세계적 첨단기업 유치로 국가안보효과와 제고 및 대한 외국인 투자의 안보리스크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98년 소득으로 주민세 24억원, 99년은 40억 원 정도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파주시 지방세 수입 331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가적으로 파주 출판정보산업단지 등과 연계하여 산업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교통의 편리(서울과 인접, 공항 및 항만과의 접근성)와 개발 여유 공간 풍부 등을 활용하여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5) 시사점

모토로라코리아의 사례는 외국인 투자유치 측면보다는 기업자신의 필요에 따라 재입지하게 된 사례이나 당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여건으로 볼 때는 획기적인 사례에 속한다.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공장이전을 수도권규제 완화, 공단조성 및 공장설립 절차 단축, 군사시설보호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였으며 공단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전, 인프라시설의 공급,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조속히 처리하여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성공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고 있다. 모토로라는 국내사정에 밝은 대행사를 활용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통해 부처간 의견조정 및 조속한 실행을 확인하였으며, 지자체는 원스톱서비스를 진행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역할은 모토로라 공장이전 성공의 결정적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와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2) 경상남도 투자유치

### (1) 투자유치 전략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 비교적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국 6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 가운데 사천의 진사공단과 양산 어곡공단 등 2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신규공장 창설형(Green Field Investment) 기업유치가 일본의 한국 경남 태양유전 등 6건에 달한다. 총 투자금액은 3억 3300만 달러로 248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다. 이들 성과에 기초하여 지난해에는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유치부문 전국 최고실적을 보여 산업 훈·포상을 3회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경상남도는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전략으로 1997년도에는 조직 내에 기업투자유치팀을 발족하였으며 다음해에는 투자유치과로 확대·개편하였다. 투자유치과 내에 민간인 전문가 4명을 영입하여 과장과 팀장으로 임명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였다. 또한 삼성, LG, 대우, 한국소니 등 도내 대표적인 기업인들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시키고 있으며 북미 등 5개 지역에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여 투자정보 수집 및 홍보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환경을 세일즈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장소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경남의 투자유치 담당공무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2-1> 경상남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현황

|                        | 투자국 | 투자금액<br>(백만달러) | 고용인원<br>(명) | 생산제품         | 추진상황               | 연간주요<br>기대효과               |
|------------------------|-----|----------------|-------------|--------------|--------------------|----------------------------|
| 한국경남<br>태양유전           | 일본  | 212            | 1,400       | 적층세라믹<br>콘덴서 | 2000.5월<br>공장준공가동  | GRDP 2,760억원<br>수출 2,208억원 |
| 서머테크<br>코리아            | 미국  | 6              | 57          | 항공기<br>엔진부품  | 1999.11월<br>회사창립가동 | GRDP 124억원<br>수출 77억원      |
| 날코<br>코리아              | 미국  | 14             | 103         | 수처리<br>화학제품  | 1999.12월<br>공장기공식  | GRDP 616억원<br>수출 43억원      |
| 한국<br>L.S.T            | 일본  | 32             | 300         | 압착단자<br>커넥터  | 2001.3월<br>공장준공가동  | GRDP 1,126억원<br>수출 507억원   |
| EEW<br>성화산업            | 독일  | 24             | 220         | 용접강판         | 2000.12월<br>공장기공식  | GRDP 554억원<br>수출 230억원     |
| 한국경남<br>태양유전<br>(추가투자) | 독일  | 100            | 400         | 적층세라믹<br>콘덴서 | 2001.9월<br>공장기공예정  | GRDP 1,458억원<br>수출 1,166억원 |

자료: 이우배, “지방의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방안”, 인용.

이와 더불어 인센티브 및 지원체제의 제도화를 위해 1998년 12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공장용지 무상임대 및 분양가 보조, 고용·교육훈련·시설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면제, 공장건축 등 인허가 처리대행 등 지원체제를 체계화하고 제도화 하였다.

또한 투자가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매년 투자유치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9년에는 150억원, 2000년 158억원 그리고 2001년 70억원 확보로 경남이 전국 최적의 투자지역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지난 3년간 총 16회의 소규모 실리 위주 투자 세일즈 팀을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주요공업도시에 파견하여 날코(미국), 서머테크(미국), EEW(독일)와 직접 상담하여 유치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 기계부품 및 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경상도, 삼성테크윈 그리고 노무라종합연구소가 3자 협력을 체결하여 산·관·연 합동 세일즈 전략 또한 구사하고 있다.

도내 유치된 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도 운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가 결정되어 준공된 후에도 종전과 변함없는 사후관리를 위해 도내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을 분기별로 현장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투자규모 1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연 2회의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답변하고 있다.

구체적 성과로는 한국경남태양유전의 전력 인력 및 인력채용을 대행하였으며 EEW

성화산업에게는 공장신축 중 벽면 슬라이딩 현상을 복구 조치하였다. 태양유전 및 서머테크에게는 고용시설, 훈련보조금 8억원을 지급하였다.

## (2) 서머테크 투자유치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전문가를 경상도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위촉해 항공업계 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듬해인 1998년 10월에는 자문관으로부터 미국의 항공기부품 코팅 및 엔진부품 수리업체인 서머테크, 프락스에어(Praxair), 코말로이(Chomalloy) 사가 아시아시장 공략을 위해 아시아지역에 직접투자 또는 기술제휴를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였다. 항공기 부품 코팅 및 엔진부품 수리는 고도의 기술수반사업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도내 삼성항공과의 합작법인 설립을 주선하였다. 초기에는 합작법인 설립시 삼성항공 일부 라인 폐쇄와 직원들의 전출을 우려해 소극적 반응을 보였던 삼성항공 측도 공정소요시간과 비용절감, 그리고 첨단기술 이전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로 곧 적극적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서머테크와 합작법인 설립에 합의하였다.

추진과정에 있어 경쟁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의 범정부적 유치노력 등 강력한 도전과 서머테크는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와 투명하지 못한 제도 및 관행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의 우수한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인력, 그리고 파트너사인 삼성항공의 특수공정능력 등을 적극 부각시켜 아시아 경쟁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점하였고 도지사가 직접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민·관 합동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기업유치에 성공하였다.

서머테크 유치로 외자 도입 및 고용창출, 국내 항공사의 비용과 시간절약, 기술이전 효과 등 유형적 성과와 더불어 세계적 전문업체의 진출로 항공산업에서의 경남 이미지 제고 및 21세기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의 획기적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등 무형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3) 태양유전 투자유치

태양유전은 마산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최근 1억 달러 상당의 베트남 투자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국내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과 함께 사천시의 진사지방공단에 유치한 사례이다. 적층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무라다, TDK와 함께 이 부문 세계시장의 87%를 점유하고 있는 태양유전은 TV, 휴대폰, 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에서 축전지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으로서 극소화, 고집적화 부문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대형 저용량 제품만 생산하는 실정으로 유치를 통한 기술습득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태양유전의 추가투자 결정에는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로 형성된 신뢰감이 큰 몫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장건축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종업원 채용업무 대행처리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에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외국인 투자유치 경남 유공자로 태양유전 사장을 추천하여 일본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산업훈장 수상 축하 리셉션 자리에서 베트남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추가투자를 전격적으로 경남도에 선회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국 실행에 옮기게 되었던 것이다.

태양유전의 경우도 추가투자 과정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임대부지 매입비는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지매입비 85억 원을 국가, 경남도, 사천시가 일정비율로 분담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사천시가 외국기업 임대부지 매입비 13억원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에 경남은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국가: 경남도: 사천시의 50: 35: 15 비율에서 86: 10: 4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경남도와 사천시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외 추가 투자분에 대한 부지임대기간과 세금감면 문제 등을 적극 수용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 (4) 시사점

경남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지방도시를 생산이나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정책과 같이 지역노동력의 통제와 효과적 공급을 위한

특별지구형 입지유인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기존 생산연계 네트워크, 판매망 그리고 기술혁신 잠재력까지를 활용하는 복합된 장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한 유치전략은 단순한 생산공간의 제공보다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착근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과 더불어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을 고려되어야 한다.

투자전략의 개념이 장소에 대한 투자로 사고가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을 세일즈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장소마케팅 전략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경로도 국가 차원의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유치노력과 거래관계에 있는 지역 기업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해 우선 투자기업의 경영전략을 세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기존의 획일적 세제혜택이나 입지지원정책 등은 직접적인 투자동기를 유발할 수 없다.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과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제 3 장

## 전라북도 기업유치 환경 분석

- 제 1 절 인문사회 환경 분석
- 제 2 절 기업체 현황 분석
- 제 3 절 산업기반시설 현황 분석
- 제 4 절 기업이전 현황 분석
- 제 5 절 설문조사분석
- 제 6 절 기업유치 SWOT 분석



# 제 3 장 전라북도 기업유치 환경 분석

## 제 1 절 인문사회 환경 분석

### 1. 인적자원

#### 1) 경제활동 인구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수는 2003년 기준으로 87만3천명이며, 전국 경제활동인구수의 3.7%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실업률이 2.4%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고령인구가 농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실업자가 적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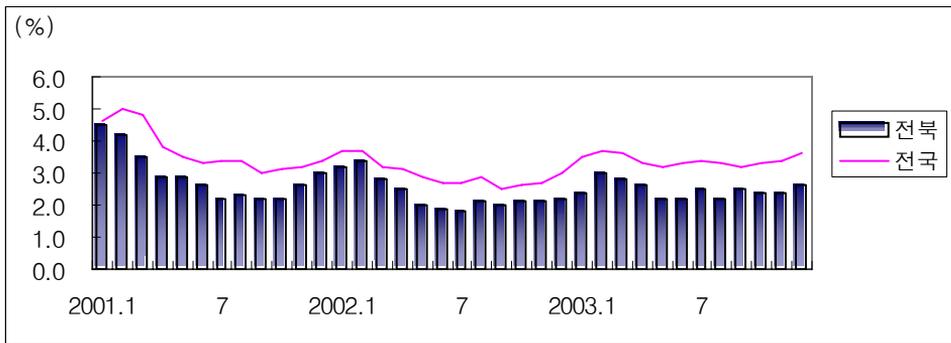
<표 3-1> 지역별 경제활동 인구 (2003년 기준)

(단위: 천명, %)

| 연도별         | 15세 이상인구     | 경제활동인구     |            |           | 비경제 활동인구   |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
|-------------|--------------|------------|------------|-----------|------------|-------------|------------|
|             |              | 계          | 취업자        | 실업자       |            |             |            |
| 전 국         | 37,475       | 23,218     | 22,425     | 792       | 14,257     | 62.0        | 3.4        |
| 서울특별시       | 8,020        | 5,014      | 4,781      | 234       | 3,006      | 62.5        | 4.7        |
| 부산광역시       | 2,913        | 1,664      | 1,598      | 66        | 1,250      | 57.1        | 4.0        |
| 대구광역시       | 1,987        | 1,209      | 1,160      | 49        | 778        | 60.8        | 4.1        |
| 인천광역시       | 2,004        | 1,240      | 1,193      | 47        | 764        | 61.9        | 3.8        |
| 광주광역시       | 1,084        | 620        | 593        | 26        | 465        | 57.2        | 4.2        |
| 대전광역시       | 112          | 669        | 646        | 23        | 451        | 59.7        | 3.4        |
| 울산광역시       | 814          | 500        | 483        | 16        | 314        | 61.4        | 3.2        |
| 경기도         | 7,878        | 4,910      | 4,748      | 162       | 2,968      | 62.3        | 3.3        |
| 강원도         | 1,161        | 693        | 679        | 13        | 469        | 59.7        | 1.9        |
| 충청북도        | 1,160        | 702        | 684        | 18        | 458        | 60.5        | 2.6        |
| 충청남도        | 1,455        | 921        | 899        | 23        | 534        | 63.3        | 2.5        |
| <b>전라북도</b> | <b>1,451</b> | <b>873</b> | <b>852</b> | <b>21</b> | <b>578</b> | <b>60.2</b> | <b>2.4</b> |
| 전라남도        | 1,489        | 979        | 961        | 18        | 510        | 65.7        | 1.8        |
| 경상북도        | 2,150        | 1,434      | 1,398      | 36        | 717        | 66.7        | 2.5        |
| 경상남도        | 2,380        | 1,501      | 1,466      | 35        | 879        | 63.1        | 2.3        |
| 제주도         | 407          | 290        | 285        | 5         | 117        | 71.3        | 1.7        |

자료 :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2003년 12월말 기준 2.4%로 전월대비 0.2%pt 상승하였고, 12월중 전북 실업률이 전국평균(3.4%)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실질적인 도내 고용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점차 도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고 도내 노동시장 수급여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의 하나로서 기업유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그림 3-1> 실업률 추이 비교

## 2) 인적자원

### (1) 실업계 고등학교

2003년 4월 기준 전라북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주·야간 모두 62개교이고 졸업생은 11,650명이다. 이 중에서 상급학교로 7,214(61.9%)명이 진학하였고, 3,645(31.3%)명이 취업의 길을 선택하였다. 전공계열별로 상업계열이 2,103(45.2%)명으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정보통신계열이 89(43.4%)명, 공업계열이 1,211(38.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           | 학급수<br>(개) | 졸업자(명)            |                  | 진학자(명)          |                 | 취업자(명)          |                 | 국가기술<br>자격취득자(명) |     |
|-----------|------------|-------------------|------------------|-----------------|-----------------|-----------------|-----------------|------------------|-----|
|           |            | 남·여               | 여자               | 남·여             | 여자              | 남·여             | 여자              | 남·여              | 여자  |
| 농업계열      | 75         | 547<br>(100.0)    | 120<br>(100.0)   | 290<br>(53.0)   | 49<br>(40.8)    | 191<br>(34.9)   | 51<br>(42.5)    | 219              | 46  |
| 공업계열      | 310        | 3,142<br>(100.0)  | 387<br>(100.0)   | 1,628<br>(51.8) | 139<br>(35.9)   | 1,211<br>(38.5) | 226<br>(58.4)   | 1,400            | 78  |
| 상업계열      | 369        | 4,653<br>(100.0)  | 3,355<br>(100.0) | 2,297<br>(46.4) | 1,364<br>(40.6) | 2,103<br>(45.2) | 1,851<br>(55.2) | 832              | 617 |
| 정보통신계열    | 70         | 205<br>(100.0)    | 182<br>(100.0)   | 105<br>(51.2)   | 99<br>(54.4)    | 89<br>(43.4)    | 75<br>(41.2)    | 0                | 0   |
| 기타실업에체능계열 | 349        | 3,103<br>(100.0)  | 2,222<br>(100.0) | 2,894<br>(93.3) | 2,107<br>(94.8) | 51<br>(1.6)     | 28<br>(1.3)     | 15               | 0   |
| 총 계       | 1,173      | 11,650<br>(100.0) | 6,266<br>(100.0) | 7,214<br>(61.9) | 3,758<br>(60.0) | 3,645<br>(31.3) | 2,231<br>(35.6) | 2,466            | 741 |

자료: 전라북도 교육청, 2003.

주: 기타실업계열은 종합고등학교 내 보통과와 공통과로 분류된 전공을 포함.

## (2) 고등교육기관

전북도내 11개의 전문대학과 9개의 4년제 대학의 졸업자는 전문대학이 8,458명, 4년제 대학이 14,262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으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전문대학 1,557명과 4년제 대학 5,676명이 미취업된 것으로 아주 극심한 실업상태를 보였고, 특히 4년제 대학의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율이 5대 5를 보였다.

<표 3-3> 전공계열별 전복의 대학 인력

(단위: 명)

| 전공계열  | 전문대학  |       |       |       | 대학교    |       |       |       |
|-------|-------|-------|-------|-------|--------|-------|-------|-------|
|       | 졸업자   | 취업자   | 미취업자  | 기타    | 졸업자    | 취업자   | 미취업자  | 기타    |
| 인문계열  | 228   | 133   | 46    | 49    | 1,496  | 491   | 667   | 338   |
| 사회계열  | 1,737 | 1,208 | 301   | 228   | 3,688  | 1,362 | 1,540 | 786   |
| 사범계열  | 81    | 62    | 17    | 2     | 978    | 352   | 521   | 105   |
| 공학계열  | 2,754 | 1,924 | 486   | 344   | 3,990  | 1,544 | 1,714 | 732   |
| 자연계열  | 773   | 562   | 81    | 130   | 1,851  | 732   | 798   | 321   |
| 의약계열  | 1,277 | 819   | 301   | 157   | 951    | 744   | 64    | 143   |
| 예체능계열 | 1,608 | 830   | 423   | 355   | 1,308  | 631   | 372   | 305   |
| 합 계   | 8,458 | 5,476 | 1,557 | 1,265 | 14,262 | 5,856 | 5,676 | 2,730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2004.

주: 2003년 8월 및 2004년 2월 졸업자를 기준으로 함.

기타는 상위학교 진학자, 군 입대자, 미파악자를 포함.

## 2. 과학기술인력

### 1) 과학기술인력 현황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는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구축 운영중인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통합 Meta DB를 구축하고, 통합 검색 서비스 및 각종 현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총 17개 기관의 인력DB를 연계하여 등록된 연구자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지역별 과학기술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대학교     | 연구소    | 산업체    | 기술사    | 관공서   | 기타      | 계       |
|-----|---------|--------|--------|--------|-------|---------|---------|
| 강원  | 4,438   | 75     | 99     | 62     | 32    | 1,420   | 6,126   |
| 경기  | 10,496  | 2,371  | 2,051  | 738    | 295   | 6,096   | 22,047  |
| 경남  | 4,316   | 425    | 422    | 175    | 59    | 1,979   | 7,376   |
| 경북  | 6,622   | 510    | 280    | 91     | 29    | 1,847   | 9,379   |
| 광주  | 4,706   | 74     | 261    | 98     | 7     | 1,873   | 7,019   |
| 대구  | 4,336   | 71     | 214    | 178    | 16    | 2,862   | 7,677   |
| 대전  | 5,601   | 5,625  | 730    | 198    | 64    | 1,897   | 14,115  |
| 부산  | 7,979   | 233    | 289    | 242    | 11    | 4,145   | 12,899  |
| 서울  | 32,126  | 2,608  | 3,081  | 2,877  | 134   | 17,210  | 58,036  |
| 울산  | 1,004   | 7      | 271    | 68     | 4     | 633     | 1,987   |
| 인천  | 2,499   | 173    | 312    | 137    | 52    | 1,505   | 4,678   |
| 전남  | 2,605   | 95     | 124    | 68     | 74    | 1,055   | 4,021   |
| 전북  | 4,937   | 130    | 129    | 76     | 25    | 1,846   | 7,143   |
| 제주  | 1,043   | 35     | 16     | 25     | 10    | 348     | 1,477   |
| 충남  | 4,861   | 230    | 186    | 79     | 40    | 1,427   | 6,823   |
| 충북  | 3,928   | 69     | 171    | 69     | 16    | 1,350   | 5,603   |
| 미입력 | 23,454  | 1,133  | 5,463  | 16,826 | 4,010 | 95,341  | 146,227 |
| 계   | 124,951 | 13,864 | 14,099 | 22,007 | 4,878 | 142,834 | 322,633 |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2004

주: 기타는 미등록 등의 사유로 분류가 되지 못한 이들을 포함함.

전북은 등록된 과학기술인력이 7,14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약 70% 정도인 4,937명이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평균수준은 대학교에 근무하는 비율은 38.7%에 불과하고 나머지 연구소가 파악되지 않는 기타를 포함하여 60%가 넘는 비율이 연구소와 실무에서 기술사로 활동하는 등 연구 인력의 활용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전북은 우수한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학교에 머물러 있거나,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표 3-5> 학위별 과학기술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박사     | 석사     | 학사     | 기타      | 계(명)    |
|----|--------|--------|--------|---------|---------|
| 강원 | 1,189  | 250    | 212    | 4,475   | 6,126   |
| 경기 | 3,551  | 1,533  | 1,060  | 15,903  | 22,047  |
| 경남 | 1,395  | 357    | 259    | 5,365   | 7,376   |
| 경북 | 1,891  | 578    | 309    | 6,601   | 9,379   |
| 광주 | 1,102  | 897    | 150    | 4,870   | 7,019   |
| 대구 | 1,192  | 339    | 220    | 5,926   | 7,677   |
| 대전 | 2,479  | 869    | 350    | 10,417  | 14,115  |
| 부산 | 2,257  | 456    | 312    | 9,874   | 12,899  |
| 서울 | 11,301 | 3,201  | 2,489  | 41,045  | 58,036  |
| 울산 | 277    | 90     | 67     | 1,553   | 1,987   |
| 인천 | 770    | 268    | 185    | 3,455   | 4,678   |
| 전남 | 564    | 228    | 109    | 3,120   | 4,021   |
| 전북 | 1,349  | 325    | 155    | 5,314   | 7,143   |
| 제주 | 272    | 132    | 33     | 1,040   | 1,477   |
| 충남 | 1,519  | 334    | 222    | 4,748   | 6,823   |
| 충북 | 1,249  | 282    | 212    | 3,860   | 5,603   |
| 기타 | 4,113  | 2,583  | 3,733  | 135,810 | 146,239 |
| 계  | 36,470 | 12,722 | 10,077 | 263,376 | 322,645 |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2004.

전라북도의 과학기술인력 분야의 박사학위 비율은 18.9%에 달해 전국 평균인 11.3%보다 더 많은 박사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석사는 4.5%로 역시 전국 수준(3.9%)보다 상대적인 비율로는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미입력 했거나 자료가 파악이 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타 부분의 비율이 워낙 커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한계가 있다.

## 2) 연구인력 현황

대학별 연구인력 보유현황은 전북대가 가장 많고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우석대 순으로 이들 5개 대학이 전북 전체의 82%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표 3-6> 전북 소재 대학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학교       | 인문사회<br>과학 | 자연<br>과학 | 공학  | 의약학 | 농수<br>해양 | 예체능 | 기타  | 계(명)  |
|----------|------------|----------|-----|-----|----------|-----|-----|-------|
| 군산간호대학   | 4          | 0        | 0   | 13  | 0        | 0   | 0   | 17    |
| 군산대학교    | 121        | 67       | 121 | 4   | 25       | 41  | 33  | 412   |
| 군산대(소롱)  | 0          | 2        | 9   | 1   | 10       | 0   | 2   | 24    |
| 군장대학     | 12         | 2        | 16  | 0   | 0        | 1   | 6   | 37    |
| 백제예술대학   | 8          | 1        | 6   | 0   | 0        | 22  | 9   | 46    |
| 벽성대학     | 4          | 0        | 11  | 0   | 0        | 6   | 0   | 21    |
| 예수간호대학   | 3          | 0        | 0   | 13  | 0        | 0   | 1   | 17    |
| 예원예술대학교  | 10         | 0        | 1   | 0   | 0        | 22  | 2   | 35    |
| 우석대학교    | 120        | 49       | 37  | 43  | 21       | 28  | 27  | 325   |
| 원광대학교    | 281        | 113      | 115 | 303 | 20       | 82  | 74  | 988   |
| 원광디지털대학교 | 1          | 1        | 1   | 0   | 0        | 0   | 0   | 3     |
| 원광보건대학   | 26         | 12       | 16  | 44  | 3        | 12  | 16  | 129   |
| 익산대학     | 7          | 5        | 36  | 0   | 21       | 2   | 2   | 73    |
| 전북과학대학   | 6          | 5        | 10  | 2   | 0        | 1   | 4   | 28    |
| 전북기능대학   | 0          | 0        | 2   | 0   | 0        | 0   | 0   | 2     |
| 전북대학교    | 473        | 234      | 349 | 254 | 91       | 69  | 199 | 1,669 |
| 전주공업대학   | 11         | 2        | 66  | 0   | 0        | 12  | 9   | 100   |
| 전주교육대학교  | 57         | 14       | 5   | 1   | 2        | 17  | 3   | 99    |
| 전주기전여자대학 | 26         | 11       | 10  | 4   | 4        | 11  | 12  | 78    |
| 전주대학교    | 190        | 52       | 77  | 3   | 1        | 52  | 36  | 411   |
| 호원대학교    | 62         | 14       | 53  | 1   | 3        | 8   | 7   | 148   |
| 합계(명)    | 1,422      | 584      | 941 | 686 | 201      | 386 | 442 | 4,662 |

자료: 학술진흥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 2004.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둔 각 대학의 학문분야별 연구인력 현황에서 전체 4,662명 가운데 1,422명(30.5%)의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연구 인력과 2,412(51.7%)명의 이공계 계열 그리고 기타 연구 인력으로 구분된다. 학술진흥재단의 연구인력 데이터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과학기술인력 간에는 연구원 등록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에 등록된 학문분야별 연구 인력을 전국 인력현황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학문분야별 연구인력 현황

(단위: 명)

| 구분 | 인문사회과<br>학     | 자연<br>과학      | 공학             | 의약학           | 농수<br>해양      | 예술<br>체육      | 기타               | 계                 |
|----|----------------|---------------|----------------|---------------|---------------|---------------|------------------|-------------------|
| 강원 | 1099<br>17.9%  | 253<br>4.1%   | 379<br>6.2%    | 565<br>9.2%   | 117<br>1.9%   | 194<br>3.2%   | 3,519<br>57.4%   | 6,126<br>100.0%   |
| 경기 | 2852<br>12.9%  | 753<br>3.4%   | 1,956<br>8.9%  | 516<br>2.3%   | 453<br>2.1%   | 768<br>3.5%   | 14,749<br>66.9%  | 22,047<br>100.0%  |
| 경남 | 1154<br>15.6%  | 331<br>4.5%   | 541<br>7.3%    | 332<br>4.5%   | 135<br>1.8%   | 162<br>2.2%   | 4,721<br>64.0%   | 7,376<br>100.0%   |
| 경북 | 1571<br>16.8%  | 508<br>5.4%   | 880<br>9.4%    | 288<br>3.1%   | 116<br>1.2%   | 293<br>3.1%   | 5,723<br>61.0%   | 9,379<br>100.0%   |
| 광주 | 1013<br>14.4%  | 318<br>4.5%   | 403<br>5.7%    | 278<br>4.0%   | 71<br>1.0%    | 218<br>3.1%   | 4,718<br>67.2%   | 7,019<br>100.0%   |
| 대구 | 1029<br>13.4%  | 274<br>3.6%   | 370<br>4.8%    | 417<br>5.4%   | 73<br>1.0%    | 219<br>2.9%   | 5,295<br>69.0%   | 7,677<br>100.0%   |
| 대전 | 1277<br>9.0%   | 934<br>6.6%   | 1,848<br>13.1% | 322<br>2.3%   | 161<br>1.1%   | 183<br>1.3%   | 9,390<br>66.5%   | 14,115<br>100.0%  |
| 부산 | 2336<br>18.1%  | 488<br>3.8%   | 859<br>6.7%    | 567<br>4.4%   | 126<br>1.0%   | 471<br>3.7%   | 8,052<br>62.4%   | 12,899<br>100.0%  |
| 서울 | 11490<br>19.8% | 2,184<br>3.8% | 3,026<br>5.2%  | 3,087<br>5.3% | 362<br>0.6%   | 1,748<br>3.0% | 36,139<br>62.3%  | 58,036<br>100.0%  |
| 울산 | 158<br>8.0%    | 68<br>3.4%    | 153<br>7.7%    | 107<br>5.4%   | 1<br>0.1%     | 16<br>0.8%    | 1,484<br>74.7%   | 1,987<br>100.0%   |
| 인천 | 683<br>14.6%   | 184<br>3.9%   | 419<br>9.0%    | 189<br>4.0%   | 12<br>0.3%    | 118<br>2.5%   | 3,073<br>65.7%   | 4,678<br>100.0%   |
| 전남 | 488<br>12.1%   | 134<br>3.3%   | 303<br>7.5%    | 68<br>1.7%    | 81<br>2.0%    | 96<br>2.4%    | 2,851<br>70.9%   | 4,021<br>100.0%   |
| 전북 | 1367<br>19.1%  | 366<br>5.1%   | 442<br>6.2%    | 440<br>6.2%   | 105<br>1.5%   | 293<br>4.1%   | 4,130<br>57.8%   | 7,143<br>100.0%   |
| 제주 | 326<br>22.1%   | 61<br>4.1%    | 66<br>4.5%     | 52<br>3.5%    | 37<br>2.5%    | 56<br>3.8%    | 879<br>59.5%     | 1,477<br>100.0%   |
| 충남 | 1358<br>19.9%  | 301<br>4.4%   | 525<br>7.7%    | 420<br>6.2%   | 108<br>1.6%   | 320<br>4.7%   | 3,791<br>55.6%   | 6,823<br>100.0%   |
| 충북 | 1136<br>20.3%  | 286<br>5.1%   | 367<br>6.6%    | 251<br>4.5%   | 72<br>1.3%    | 215<br>3.8%   | 3,276<br>58.5%   | 5,603<br>100.0%   |
| 기타 | 5041           | 1,002         | 2,608          | 801           | 294           | 717           | 135,776          | 146,239           |
| 계  | 34378<br>10.7% | 8,445<br>2.6% | 15,145<br>4.7% | 8,700<br>2.7% | 2,324<br>0.7% | 6,087<br>1.9% | 247,566<br>76.7% | 322,645<br>100.0% |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 종합DB, 2004.

### 3. 연구기관 현황

#### 1) 연구기관

2000년 기준 연구기관 유형별로 분포현황을 보면, 전국대비 시험연구기관은 5.3%, 대학부설연구소는 4.3%로 인구점유율보다 높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기업의 열악한 산업기반을 대변하듯 기업체연구소 점유율은 2.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8> 연구기관 분포

(단위: 개, %)

| 지역 | 시험연구기관      |            |            |            | 대학부설연구소     |            |             | 기업체연구소      |          |             | 총계           |
|----|-------------|------------|------------|------------|-------------|------------|-------------|-------------|----------|-------------|--------------|
|    | 합계          | 국<br>공립    | 정부출<br>연   | 기타         | 합계          | 국<br>공립    | 사립          | 연구소         | 정부투<br>자 | 민간<br>기업    |              |
| 전북 | 12<br>(5.3) | 8<br>(7.8) | 2<br>(3.2) | 2<br>(3.1) | 16<br>(4.3) | 5<br>(5.4) | 11<br>(4.0) | 75<br>(1.6) | -        | 75<br>(1.6) | 103<br>(2.0) |
| 전국 | 228         | 102        | 62         | 64         | 368         | 92         | 276         | 4,631       | 38       | 4,593       | 5,227        |

자료: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지방과학기술연감 2001.

2000년 기준, 전라북도 각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지출은 전국대비 1% 수준으로 더욱 열악한 형편이다.

#### 2) 연구개발비

<표 3-9> 연구개발비 분포

(단위: 백만 원, %)

| 지역 | 시험연구기관          |                 |              |              | 대학부설연구소         |                |                 | 기업체연구소          |          |                 | 총계               |
|----|-----------------|-----------------|--------------|--------------|-----------------|----------------|-----------------|-----------------|----------|-----------------|------------------|
|    | 합계              | 국<br>공립         | 정부<br>출연     | 기타           | 합계              | 국<br>공립        | 사립              | 합계              | 정부<br>투자 | 민간<br>기업        |                  |
| 전북 | 21,202<br>(1.0) | 20,081<br>(5.7) | 954<br>(0.1) | 167<br>(0.1) | 21,805<br>(1.4) | 8,552<br>(1.5) | 13,253<br>(1.3) | 92,475<br>(0.9) | -        | 92,475<br>(0.9) | 135,482<br>(1.0) |
| 전국 | 2,031,981       | 355,364         | 1,488,512    | 188,105      | 1,561,865       | 551,981        | 1,009,884       | 10,254,655      | 465,271  | 9,789,384       | 13,848,501       |

자료: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지방과학기술연감 2001.

지방정부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예산도 총예산의 1%대에 머물고 있으며, 전북의 총예산은 2000년에 비해 2001년도에 4,000억 원 정도 증가했으나 연구개발예산은 거의 증가하지 않아 연구개발예산의 점유비율은 오히려 1.36%에서 1.05%로 하락하였다.

<표 3-10> 연구개발예산 현황

| 구 분 |      | 총예산(A)(백만원) | 재정자립도(%) | 연구개발예산(B) | B/A(%) |
|-----|------|-------------|----------|-----------|--------|
| 지역  | 연도   |             |          |           |        |
| 전북  | 1999 | 1,385,400   | 20.9     | 16,727    | 1.21   |
|     | 2000 | 1,320,014   | 22.8     | 17,914    | 1.36   |
|     | 2001 | 1,712,277   | 23.7     | 17,959    | 1.05   |

자료: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지방과학기술연감 2001.

2002년 전라북도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특허가 218(0.7%)건으로 전국 대비로 차지하는 비중이 실용신안 566(1.4%)건, 의장 290(1.2%)건, 상표 414(1.3%)건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산업재산권 시·도별 등록 현황

(단위: 건, %)

| 구분 | 특 허      |          | 실용신안     |          | 의 장      |          | 상 표      |          |
|----|----------|----------|----------|----------|----------|----------|----------|----------|
|    | 2001년    | 2002년    | 2001년    | 2002년    | 2001년    | 2002년    | 2001년    | 2002년    |
| 전북 | 117(0.5) | 218(0.7) | 668(1.5) | 566(1.4) | 238(1.4) | 290(1.2) | 365(1.4) | 414(1.3) |
| 전국 | 21,833   | 30,175   | 43,372   | 39,417   | 17,373   | 25,318   | 26,872   | 32,678   |

주: 1) 상표는 갱신등록 제외, 신규등록 건수만 임.

자료: 2002년 지식재산통계연보 (2002. 특허청).

## 제 2 절 기업체 현황 분석

### 1. 사업체 현황

#### 1) 사업체 수

2003년에 제조업 사업체(301,089개)의 증감률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30.6%), 울산(26.6%), 인천(24.0%), 경남(16.5%)등은 '98년과 비교하여 사업체가 증가한 반면, 전남(-10.7%), 전북(-9.8%), 대구(-2.1%), 서울(-1.5%) 등은 감소하였다.

<표 3-12> 지역별 제조업 사업체수 · 출하액

| 시도 | 제조업 사업체수(개) |         | 출 하 액(10억원) |         | 제조업 사업체수(%) |       |       | 출 하 액(%) |       |       |
|----|-------------|---------|-------------|---------|-------------|-------|-------|----------|-------|-------|
|    | 1998년       | 2003년   | 1998년       | 2003년   | 증감률         | 구 성 비 |       | 증감률      | 구 성 비 |       |
|    |             |         |             |         | 5년간         | 1998년 | 2003년 | 5년간      | 1998년 | 2003년 |
| 전국 | 276,482     | 301,089 | 439,435     | 693,110 | 8.9         | 100.0 | 100.0 | 57.7     | 100.0 | 100.0 |
| 서울 | 62,913      | 61,938  | 30,861      | 46,205  | -1.5        | 22.8  | 20.6  | 49.7     | 7.0   | 6.7   |
| 부산 | 25,697      | 26,958  | 18,395      | 24,686  | 4.9         | 9.3   | 9.0   | 34.2     | 4.2   | 3.6   |
| 대구 | 22,659      | 22,181  | 14,012      | 18,008  | -2.1        | 8.2   | 7.4   | 28.5     | 3.2   | 2.6   |
| 인천 | 15,864      | 19,676  | 30,440      | 38,848  | 24.0        | 5.7   | 6.5   | 27.6     | 6.9   | 5.6   |
| 광주 | 6,314       | 6,881   | 6,904       | 10,786  | 9.0         | 2.3   | 2.3   | 56.2     | 1.6   | 1.6   |
| 대전 | 5,943       | 5,790   | 6,282       | 8,232   | -2.6        | 2.1   | 1.9   | 31.0     | 1.4   | 1.2   |
| 울산 | 3,523       | 4,459   | 53,460      | 80,328  | 26.6        | 1.3   | 1.5   | 50.3     | 12.2  | 11.6  |
| 경기 | 54,116      | 70,699  | 98,977      | 170,872 | 30.6        | 19.6  | 23.5  | 72.6     | 22.5  | 24.7  |
| 강원 | 6,062       | 6,163   | 5,810       | 7,093   | 1.7         | 2.2   | 2.0   | 22.1     | 1.3   | 1.0   |
| 충북 | 7,147       | 7,826   | 17,547      | 26,344  | 9.5         | 2.6   | 2.6   | 50.1     | 4.0   | 3.8   |
| 충남 | 10,245      | 10,437  | 25,080      | 54,622  | 1.9         | 3.7   | 3.5   | 117.8    | 5.7   | 7.9   |
| 전북 | 9,844       | 8,883   | 12,414      | 17,930  | -9.8        | 3.6   | 3.0   | 44.4     | 2.8   | 2.6   |
| 전남 | 10,753      | 9,604   | 27,880      | 41,414  | -10.7       | 3.9   | 3.2   | 48.5     | 6.3   | 6.0   |
| 경북 | 15,650      | 16,631  | 49,083      | 77,992  | 6.3         | 5.7   | 5.5   | 58.9     | 11.2  | 11.3  |
| 경남 | 18,174      | 21,177  | 41,813      | 68,956  | 16.5        | 6.6   | 7.0   | 64.9     | 9.5   | 9.9   |
| 제주 | 1,578       | 1,786   | 478         | 794     | 13.2        | 0.6   | 0.6   | 66.3     | 0.1   | 0.1   |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제조업 사업체의 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경기(19.6% → 23.5%), 경남(6.6% → 7.0%),

인천(5.7% → 6.5%), 울산(1.3% → 1.5%) 등은 '98년과 비교하여 높아진 반면, 서울(22.8% → 20.6%), 부산(9.3% → 9.0%), 대구(8.2% → 7.4%) 등은 낮아졌다.

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693조 1,100억원) 증감률은 지역별로 충남(117.8%), 경기(72.6%), 경남(64.9%), 경북(58.9%) 등은 '98년에 비하여 전국 제조업 출하액인 평균 증가율(57.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강원(22.1%), 인천(27.6%), 대구(28.5%) 등은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증가 수준에 그쳤고, 전북은 일부 광역시와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44.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제조업 사업체의 출하액 구성비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22.5% → 24.7%), 충남(5.7% → 7.9%), 경남(9.5% → 9.9%), 경북(11.2% → 11.3%) 등은 '98년에 비하여 높아진 반면, 서울(7.0% → 6.7%), 부산(4.2% → 3.6%), 대구(3.2% → 2.6%), 인천(6.9% → 5.6%), 울산(12.2% → 11.6%) 등은 낮아졌다.

전라북도의 일반 사업체를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비법인사업체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아주 미미하나 법인사업체는 큰 성장을 보이며 그 수가 늘어났으며 특히 회사법인의 증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북은 전국평균보다 법인사업체 내에서 회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의 수가 많아서 수익성 있는 사업체 구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 3-13>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 구 분              | 사업체수(개)   |           | 증 감(개, %) |        | 구 성 비(%) |       |       |
|------------------|-----------|-----------|-----------|--------|----------|-------|-------|
|                  | 2001년     | 2002년     | 사업체수      | 증감률    | 2001년    | 2002년 |       |
| 전<br>국           | 전 체       | 3,046,724 | 3,132,016 | 85,292 | 2.8      | 100.0 | 100.0 |
|                  | -법인사업체    | 294,095   | 343,367   | 49,272 | 16.8     | 9.7   | 11.0  |
|                  | · 회 사 법 인 | 210,878   | 252,629   | 41,751 | 19.8     | 6.9   | 8.1   |
|                  | · 회사이외법인  | 83,217    | 90,738    | 7,521  | 9.0      | 2.7   | 2.9   |
|                  | -비법인사업체   | 2,752,629 | 2,788,649 | 36,020 | 1.3      | 90.3  | 89.0  |
| 전<br>라<br>북<br>도 | 전 체       | 118,429   | 119,443   | 1,014  | 0.8      | 100.0 | 100.0 |
|                  | -법인사업체    | 12,554    | 13,102    | 548    | 4.4      | 10.6  | 11.0  |
|                  | · 회 사 법 인 | 5,464     | 6,527     | 1,063  | 19.4     | 4.6   | 5.4   |
|                  | · 회사이외법인  | 7,090     | 6,575     | -515   | -7.3     | 6.0   | 5.5   |
|                  | -비법인사업체   | 105,875   | 106,341   | 466    | 0.4      | 89.4  | 89.0  |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전라북도의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업체 수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2001년에 큰 감소를 하다가 2002년에 약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2년에는 가장 큰 증가를 보인 완주군(6%), 김제시(5.5%)와 큰 감소를 보인 장수군(-5.1%)이 매우 대조적인 양상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었고, 특히 장수군의 경우는 2001년의 -5.2%에 이어 연속적으로 -5%대 이상의 감소로 나타났다.

<표 3-14> 전라북도 시·군별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 시군별         | 사업체수    |        |         |        |         | 구성비     |         |         |        |
|-------------|---------|--------|---------|--------|---------|---------|---------|---------|--------|
|             | 2000년   | 증감률    | 2001년   | 증감률    | 2002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합계          | 121,548 | -2.60% | 118,429 | 0.90%  | 119,443 | 100.00% | 100.00% | 100.00% |        |
| 시<br>지<br>역 | 전주시     | 37,654 | -0.70%  | 37,401 | 3.00%   | 38,517  | 31.00%  | 31.60%  | 32.20% |
|             | 군산시     | 17,774 | -1.10%  | 17,575 | 0.50%   | 17,668  | 14.60%  | 14.80%  | 14.80% |
|             | 익산시     | 21,126 | -6.80%  | 19,692 | -1.90%  | 19,323  | 17.40%  | 16.60%  | 16.20% |
|             | 정읍시     | 8,601  | -2.50%  | 8,387  | -1.70%  | 8,247   | 7.10%   | 7.10%   | 6.90%  |
|             | 남원시     | 7,266  | -4.50%  | 6,942  | -0.10%  | 6,933   | 6.00%   | 5.90%   | 5.80%  |
|             | 김제시     | 6,154  | -1.40%  | 6,068  | 5.50%   | 6,400   | 5.10%   | 5.10%   | 5.40%  |
| 군<br>지<br>역 | 완주군     | 4,090  | -2.50%  | 3,986  | 6.00%   | 4,227   | 3.40%   | 3.40%   | 3.50%  |
|             | 진안군     | 1,783  | -2.00%  | 1,748  | -0.40%  | 1,741   | 1.50%   | 1.50%   | 1.50%  |
|             | 무주군     | 2,001  | -0.30%  | 1,995  | -0.50%  | 1,985   | 1.60%   | 1.70%   | 1.70%  |
|             | 장수군     | 1,741  | -5.20%  | 1,650  | -5.10%  | 1,566   | 1.40%   | 1.40%   | 1.30%  |
|             | 임실군     | 2,228  | -2.20%  | 2,179  | -1.40%  | 2,148   | 1.80%   | 1.80%   | 1.80%  |
|             | 순창군     | 2,283  | -5.70%  | 2,152  | -0.90%  | 2,133   | 1.90%   | 1.80%   | 1.80%  |
|             | 고창군     | 4,255  | -2.50%  | 4,147  | -3.60%  | 3,999   | 3.50%   | 3.50%   | 3.30%  |
| 부안군         | 4,592   | -1.90% | 4,507   | 1.10%  | 4,556   | 3.80%   | 3.80%   | 3.80%   |        |

자료: 전북통계연보, 2003.

## 2) 사업체 종사자 수

2002년 중 종사자수를 시도별로 보면, 모든 시·도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6.6%), 광주(6.0%), 대구(5.9%) 등에서 비교적 높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전북도 2.7%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국평균 수준(3.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년도 대비 종사자수 구성비는 전북이 3.3%로 전년과 동일한 구성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5> 전국 시·도별 종사자수

|    | 종사자수(명)    |            | 증감(명, %) |     | 구성비(%) |       |
|----|------------|------------|----------|-----|--------|-------|
|    | 2001년      | 2002년      | 종사자수     | 증감률 | 2001년  | 2002년 |
| 전국 | 14,111,690 | 14,629,833 | 518,143  | 3.7 | 100.0  | 100.0 |
| 서울 | 3,764,364  | 3,817,261  | 52,897   | 1.4 | 26.7   | 26.1  |
| 부산 | 1,107,059  | 1,146,506  | 39,447   | 3.6 | 7.8    | 7.8   |
| 대구 | 697,645    | 738,980    | 41,335   | 5.9 | 4.9    | 5.1   |
| 인천 | 694,233    | 723,516    | 29,283   | 4.2 | 4.9    | 4.9   |
| 광주 | 393,434    | 416,879    | 23,445   | 6.0 | 2.8    | 2.8   |
| 대전 | 395,833    | 403,330    | 7,497    | 1.9 | 2.8    | 2.8   |
| 울산 | 351,473    | 370,800    | 19,327   | 5.5 | 2.5    | 2.5   |
| 경기 | 2,556,533  | 2,724,543  | 168,010  | 6.6 | 18.1   | 18.6  |
| 강원 | 415,369    | 431,467    | 16,098   | 3.9 | 2.9    | 2.9   |
| 충북 | 418,979    | 434,717    | 15,738   | 3.8 | 3.0    | 3.0   |
| 충남 | 503,527    | 526,235    | 22,708   | 4.5 | 3.6    | 3.6   |
| 전북 | 466,138    | 478,816    | 12,678   | 2.7 | 3.3    | 3.3   |
| 전남 | 491,659    | 496,481    | 4,822    | 1.0 | 3.5    | 3.4   |
| 경북 | 772,981    | 790,160    | 17,179   | 2.2 | 5.5    | 5.4   |
| 경남 | 920,142    | 956,821    | 36,679   | 4.0 | 6.5    | 6.5   |
| 제주 | 162,321    | 173,321    | 11,000   | 6.8 | 1.2    | 1.2   |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각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01년에는 -0.6%정도가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구성비로는 2002년 전주시가 158,949(33.2%)명, 군산시 73,117(15.3%)명, 익산시가 84,592(17.7%)명으로 16개 시군 중에서 3개의 시가 차지하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체의 66%를 상회하고 있다. 2002년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폭은 무주군(10.7%), 순창군(8.4%), 김제시(7.3%) 등의 증가가 눈에 띄게 컸으며, 완주군(-4.8%), 고창군(-2.9%) 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여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감 현황을 보면, 전북은 5명 미만의 사업체 종사자의 수가 2002년 전북의 사업체 중에서 38.1% (전국 평균은 32.7%)를 차지하고 있었고,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북에서 9.3%(전국 평균은 12.3%)를 구성하고 있어 사업체 규모가 전국에 비해 영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6> 전라북도 시·군별 사업체 종사자 현황

(단위: 개소)

| 시군별  | 종사자수    |         |         |         |         | 구성비     |         |         |        |
|------|---------|---------|---------|---------|---------|---------|---------|---------|--------|
|      | 2000년   | 증감률     | 2001년   | 증감률     | 2002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 합계   | 470,946 | -0.60%  | 468,326 | 2.10%   | 478,066 | 100.00% | 100.00% | 100.00% |        |
| 시 지역 | 전주시     | 149,613 | 2.90%   | 153,999 | 3.20%   | 158,949 | 31.80%  | 32.90%  | 33.20% |
|      | 군산시     | 72,223  | -2.40%  | 70,524  | 3.70%   | 73,117  | 15.30%  | 15.10%  | 15.30% |
|      | 익산시     | 88,295  | -3.90%  | 84,880  | -0.30%  | 84,592  | 18.70%  | 18.10%  | 17.70% |
|      | 정읍시     | 30,579  | -2.80%  | 29,724  | 1.30%   | 30,099  | 6.50%   | 6.30%   | 6.30%  |
|      | 남원시     | 24,031  | 1.70%   | 24,444  | 1.60%   | 24,840  | 5.10%   | 5.20%   | 5.20%  |
|      | 김제시     | 22,963  | 4.20%   | 23,938  | 7.30%   | 25,678  | 4.90%   | 5.10%   | 5.40%  |
| 군 지역 | 완주군     | 21,322  | 3.70%   | 22,108  | -4.80%  | 21,049  | 4.50%   | 4.70%   | 4.40%  |
|      | 진안군     | 6,430   | -7.10%  | 5,973   | 1.30%   | 6,050   | 1.40%   | 1.30%   | 1.30%  |
|      | 무주군     | 6,782   | 0.80%   | 6,835   | 10.70%  | 7,569   | 1.40%   | 1.50%   | 1.60%  |
|      | 장수군     | 5,427   | -3.70%  | 5,225   | 0.00%   | 5,225   | 1.20%   | 1.10%   | 1.10%  |
|      | 임실군     | 7,114   | 0.60%   | 7,154   | 3.30%   | 7,388   | 1.50%   | 1.50%   | 1.50%  |
|      | 순창군     | 6,992   | -9.80%  | 6,305   | 8.40%   | 6,834   | 1.50%   | 1.30%   | 1.40%  |
|      | 고창군     | 13,744  | -7.10%  | 12,762  | -2.90%  | 12,389  | 2.90%   | 2.70%   | 2.60%  |
| 부안군  | 15,431  | -6.30%  | 14,455  | -1.20%  | 14,287  | 3.30%   | 3.10%   | 3.00%   |        |

자료: 전북통계연보, 2003.

<표 3-17> 업체규모별 종사자수

| 구 분  | 종사자수(명)   |            | 증 감(명, %)  |         | 구성비(%) |       |       |
|------|-----------|------------|------------|---------|--------|-------|-------|
|      | 2001년     | 2002년      | 종사자수       | 증감률     | 2001년  | 2002년 |       |
| 전    | 전 체       | 14,111,690 | 14,629,833 | 518,143 | 3.7    | 100.0 | 100.0 |
|      | ·1 ~ 4명   | 4,643,245  | 4,787,326  | 144,081 | 3.1    | 32.9  | 32.7  |
|      | ·5 ~ 99명  | 6,301,359  | 6,623,652  | 322,293 | 5.1    | 44.7  | 45.3  |
| 국    | ·100~299명 | 1,428,597  | 1,419,303  | -9,294  | -0.7   | 10.1  | 9.7   |
|      | ·300명 이상  | 1,738,489  | 1,799,552  | 61,063  | 3.5    | 12.3  | 12.3  |
| 전라북도 | 전 체       | 468,326    | 478,066    | 9,740   | 2.1    | 100.0 | 100.0 |
|      | ·1 ~ 4명   | 176,425    | 181,973    | 5,548   | 3.1    | 37.6  | 38.1  |
|      | ·5 ~ 99명  | 207,326    | 210,185    | 2,859   | 1.4    | 44.3  | 44.0  |
|      | ·100~299명 | 38,265     | 41,364     | 3,099   | 8.1    | 8.2   | 8.6   |
|      | ·300명 이상  | 46,310     | 44,544     | -1,766  | -3.8   | 9.9   | 9.3   |

자료: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 2003.

## 2. 중소기업 현황

### 1) 중소기업체 수

전라북도 기업의 생산액은 전국의 2.5%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기업 규모의 비율이 3.3%로 가장 많은 금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도 비슷한 전국대비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의 종업원 수로는 소기업이 가장 많으나 전국대비 비율로는 대기업의 종업원 수가 17,800여명으로 가장 많은 2.9%에 해당하고 있다. 사업체 수로는 전국 비중에 2.2%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비율로는 중소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표 3-18> 중소제조업 현황

|          |         | 생산액(백만 원)   |                  | 종업원 수(명)  |              | 사업체수(개) |             |
|----------|---------|-------------|------------------|-----------|--------------|---------|-------------|
|          |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전국      | 전북          |
| 중소<br>기업 | 5~49인   | 149,077,923 | 3,282,614(2.2%)  | 1,273,693 | 28,110(1.7%) | 100,954 | 1,956(1.9%) |
|          | 50~299인 | 169,883,932 | 5,552,018(3.3%)  | 784,123   | 22,227(2.8%) | 7,865   | 216(2.7%)   |
|          | 계       | 318,961,855 | 8,834,632(2.8%)  | 2,057,816 | 50,337(2.4%) | 108,819 | 2,172(2.0%) |
| 대기업      |         | 309,323,412 | 6,976,336(2.3%)  | 617,476   | 17,845(2.9%) | 670     | 25(3.7%)    |
| 합계       |         | 628,285,267 | 15,810,968(2.5%) | 2,675,292 | 68,182(2.5%) | 109,489 | 2,197(2.0%)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전국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대기업과 함께 비교하여 보면,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은 대기업의 부가가치가 중소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전북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기업 규모의 부가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기업의 높은 부가가치 생산성을 보면 대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전북지역에 대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표 3-19> 중소기업 조업 부가가치

(단위: 백만 원)

|    | 중소기업                |                     |                     | 대기업                 | 합계                  |
|----|---------------------|---------------------|---------------------|---------------------|---------------------|
|    | 5~49인               | 50~299인             | 계                   |                     |                     |
| 전국 | 58,285,215          | 66,291,015          | 124,576,230         | 116,254,770         | 240,831,000         |
| 서울 | 8,152,569           | 4,058,876           | 12,211,445          | 5,339,965           | 17,551,410          |
| 부산 | 3,845,322           | 3,019,681           | 6,865,003           | 2,382,299           | 9,247,302           |
| 대구 | 3,019,200           | 2,569,337           | 5,588,537           | 760,573             | 6,349,110           |
| 인천 | 5,092,804           | 4,900,936           | 9,993,740           | 3,075,124           | 13,068,864          |
| 광주 | 739,965             | 1,144,532           | 1,884,497           | 2,645,298           | 4,529,795           |
| 대전 | 593,030             | 1,527,539           | 2,120,569           | 1,585,580           | 3,706,149           |
| 울산 | 1,162,314           | 4,492,194           | 5,654,508           | 19,395,540          | 25,050,048          |
| 경기 | 18,980,332          | 19,019,111          | 37,999,443          | 28,093,596          | 66,093,039          |
| 강원 | 714,216             | 942,797             | 1,657,013           | 1,194,497           | 2,851,510           |
| 충북 | 1,836,496           | 3,884,420           | 5,720,916           | 5,065,423           | 10,786,339          |
| 충남 | 2,520,025           | 5,510,513           | 8,030,538           | 8,438,741           | 16,469,279          |
| 전북 | 1,215,774<br>(2.1%) | 2,195,322<br>(3.3%) | 3,411,096<br>(2.7%) | 2,853,919<br>(2.5%) | 6,265,015<br>(2.6%) |
| 전남 | 1,308,764           | 2,413,652           | 3,722,416           | 6,450,568           | 10,172,984          |
| 경북 | 3,697,187           | 4,910,033           | 8,607,220           | 18,265,284          | 26,872,504          |
| 경남 | 5,235,928           | 5,646,686           | 10,882,614          | 10,708,363          | 21,590,977          |
| 제주 | 171,289             | 55,386              | 226,675             | 0                   | 226,675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 2) 중소기업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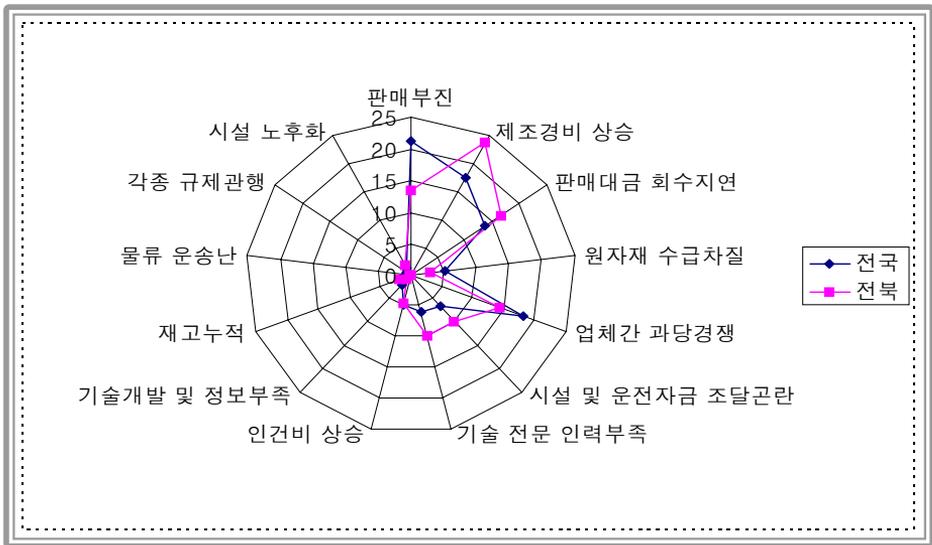
다음 표에서 전국의 중소기업 인력의 과잉률을 현황을 보면, 전북은 전국에서 최고의 높은 연구직 과잉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산업연구진보다는 학교와 관련된 연구진의 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또한 고학력의 연구진을 흡수할 만한 산업체 활성화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표 3-20> 직종별 고용 과잉률 비교

|    | 사무직 | 생산직 | 연구직 | 기타직 | 전체  |
|----|-----|-----|-----|-----|-----|
| 전국 | 0.1 | 0.1 | 0   | 0   | 0.1 |
| 전북 | 0   | 0.1 | 0.9 | 0   | 0.1 |

자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2002년에 조사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활동상 애로사항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판매부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반면에 전북은 제조경비 상승이 기업 당사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느끼는 점은 전국적으로는 업체간 과다경쟁이었지만, 전북은 판매대금 회수지연의 회수가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

### 3. 벤처기업 현황

#### 1)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

벤처기업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8,474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전북은 97개의 벤처기업으로 약 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투자나 연구개발 분야보다는 신기술관련 벤처기업이 많았고 그 중 특허와 산업 관련 신기술벤처기업이 그나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21> 벤처기업 유형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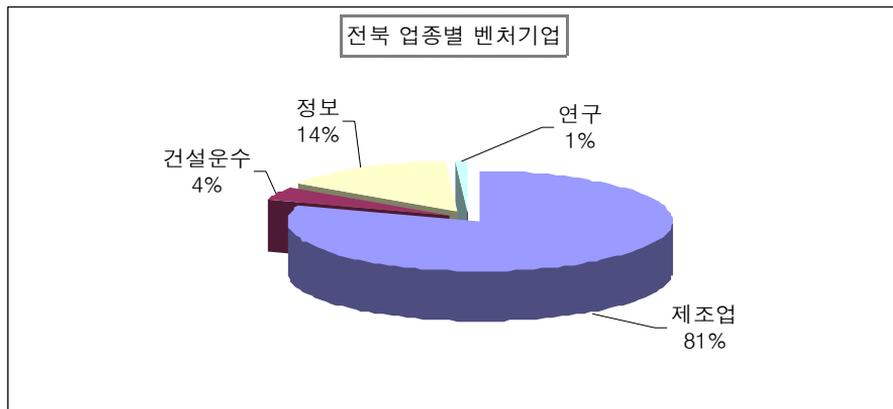
(단위: 개소, %)

|    | 벤처투자<br>기업 | 연구개발<br>기업 | 신기술기업 |       |       |       |       |       |       | 합계    |
|----|------------|------------|-------|-------|-------|-------|-------|-------|-------|-------|
|    |            |            | 특허    | 고도    | 산업    | 이전    | 출연    | 예비    | 소계    |       |
| 전북 | 7          | 7          | 31    | 18    | 33    |       | 1     |       | 83    | 97    |
|    | (0.6)      | (0.5)      | (1.9) | (0.7) | (2.4) | (0.0) | (0.5) | (0.0) | (1.4) | (1.1) |
| 전국 | 1,092      | 1,421      | 1,597 | 2,731 | 1,399 | 18    | 182   | 34    | 5,961 | 8,474 |

자료: 중소기업청, 2003.

## 2)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

전라북도 소재 벤처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8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광업 분야의 기업은 0(0%)개 이다.



자료: 전북지방중소기업청,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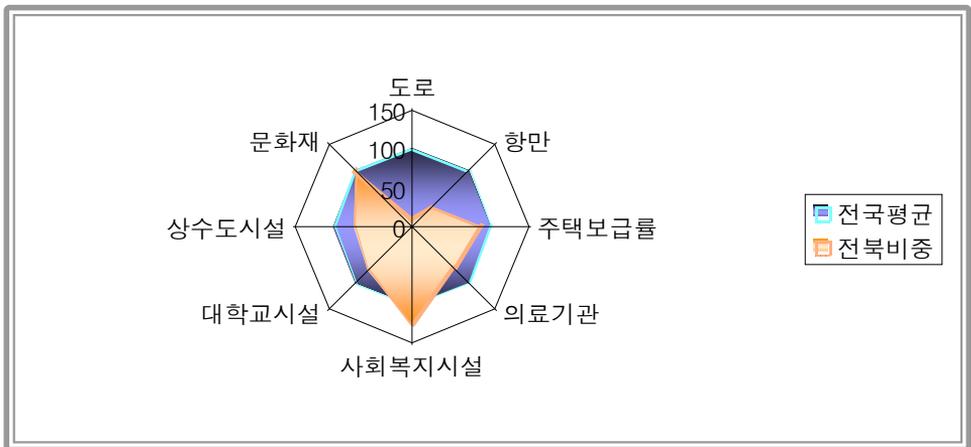
<그림 3-3> 전라북도 업종별 벤처기업

### 제 3 절 산업기반시설 현황 분석

#### 1. 사회 간접 자본

전북지역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도로, 항만, 주택보급률, 상수도 시설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대학교, 국가지정문화재수 등 지역 내 소프트한 여건을 나타내는 사회복지수준은 전국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공항, 군장신항만, 군산-장항 연결철도 건설, 군산-전주간 도로 완공, 군산-함양 및 군산-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예정으로 있어 환황해권 중심 거점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를 구비하고 있다.



<그림 3-4> 사회간접자본 비교(2002년)

#### 1) 도로

전라북도는 교통중심지로서 4통8달의 도로망과 육상교통의 허브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서울~무주, 부산~무주간 도로, 88고속도로,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와 건설 중인 영호남 연결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군산~대구간 고속도로 등이

새로운 물류의 소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 기능은 산업부문의 발달 및 인구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기능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표 3-22> 도로 현황

| 연 도  | 계(m)      | 포 장(m)    | 포장율(%) | 미포장(m)    | 미개통(m)  |
|------|-----------|-----------|--------|-----------|---------|
| 1997 | 6,084,080 | 4,054,620 | 66.6   | 1,743,746 | 285,714 |
| 1998 | 6,090,106 | 4,142,826 | 68.0   | 1,664,166 | 283,114 |
| 1999 | 6,081,426 | 4,179,106 | 68.7   | 1,609,706 | 292,614 |
| 2000 | 6,092,688 | 4,317,517 | 70.9   | 1,491,457 | 283,714 |
| 2001 | 6,322,648 | 4,555,924 | 72.1   | 1,445,710 | 321,014 |
| 2002 | 6,310,899 | 4,634,427 | 73.4   | 1,393,680 | 282,792 |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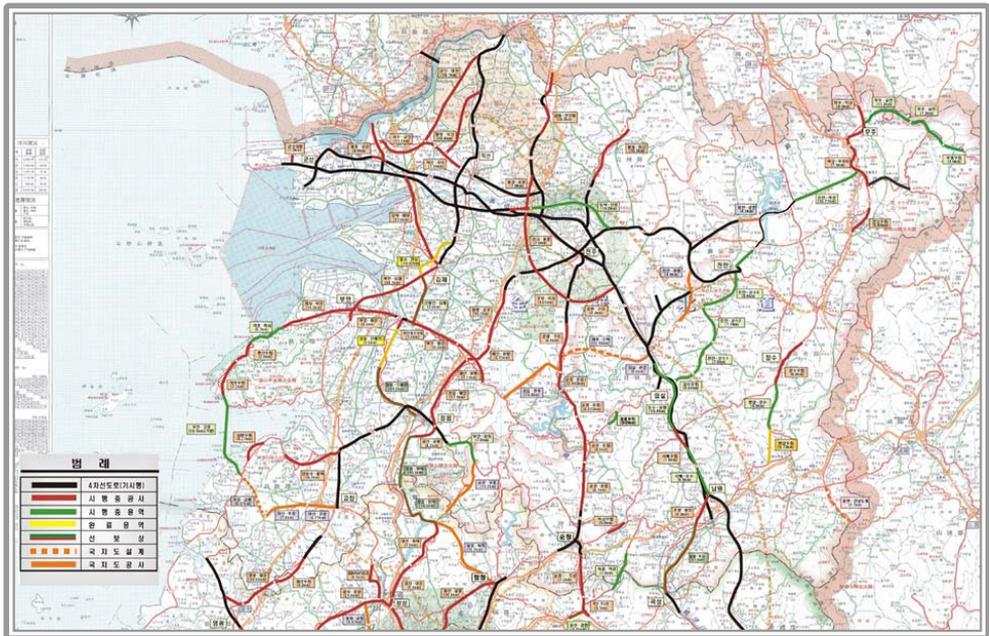
2002년 기준, 총 길이가 6,310km이고 전체 도로 중 포장율이 전국평균과 비슷한 73.4%에 이르고 있으며, 익산국토관리청에 의하면 전북의 진행 중인 도로망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3> 도로망 계획

(단위: 억원)

| 사 업 명                 | 총 사업비  | 2003년까지 투자금액 | 향후 소요 금액 |
|-----------------------|--------|--------------|----------|
| 정읍~남원간 국도 4차로 확·포장    | 5,800  |              | 5,610    |
| 전북관광순환고속화도로건설         | 47,758 | 2,091        | 42,011   |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19,858 | 732          | 11,626   |
|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 13,305 | 2,730        |          |
| 논산~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3,500  | 90           |          |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건설        | 6,394  | 1,087        | 1,507    |
| 부안~고창간 국도건설           | 7,833  | 20           | 5,213    |
|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간도로 건설 | 800    | -            |          |
| 번암~장계간 국도4차로 확·포장     | 3,240  |              | 1,630    |
| 진안~적상간 국도4차로 확·포장     | 5,500  | 40           | 3,420    |
| 진안~장계간 국도4차로 확·포장     | 3,560  |              | 3,250    |
| 졸포C~격포간 국도4차로 확·포장    | 3,456  |              | 2,436    |
| 무주지역 개발도로 건설          | 500    |              | 240      |
| 임실~강진간 국도4차로 확·포장     | 2,160  | 8            | 1,502    |
| 군장대교 건설               | 3,090  |              | 2,860    |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3.



자료: 익산지방국도관리청, 2004

<그림 3-5> 전라북도 도로망 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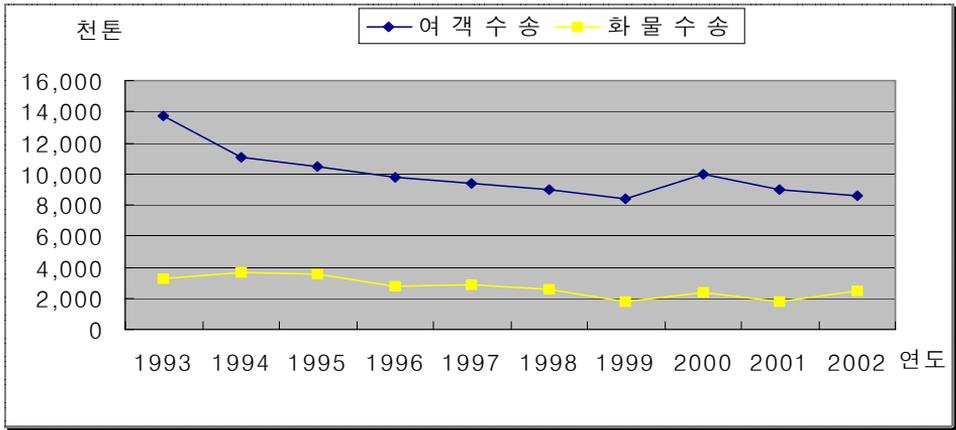
## 2) 철도

<표 3-24> 전라북도 철도 수송

| 연도   | 여객(명)     |           |            | 화물(톤)   |           |           |
|------|-----------|-----------|------------|---------|-----------|-----------|
|      | 승차인원      | 강차인원      | 여객수입(천원)   | 발송톤수    | 도착톤수      | 화물수입(천원)  |
| 1997 | 4,627,134 | 4,734,971 | 27,638,671 | 912,167 | 1,984,512 | 6,114,533 |
| 1998 | 4,453,501 | 4,526,713 | 28,055,703 | 771,051 | 1,787,419 | 6,360,871 |
| 1999 | 4,613,999 | 4,687,362 | 30,391,014 | 244,679 | 705,481   | 2,514,589 |
| 2000 | 4,639,178 | 5,352,814 | 31,996,324 | 802,789 | 1,560,986 | 6,089,363 |
| 2001 | 4,489,084 | 4,415,234 | 23,013,641 | 821,710 | 1,542,855 | 4,602,924 |
| 2002 | 4,086,790 | 3,911,646 | 32,388,582 | 750,723 | 1,552,255 | 6,128,497 |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2.

전라북도의 철도는 1997년과 비교했을 때, 여객과 화물의 이용 수가 모두 줄어들었으며, 수입으로 보았을 때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6> 전북 철도의 여객과 화물수송량

계획 중에 있는 전북의 철도사업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포함하여 전라선복선 전철화 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부진했던 물류수단으로서의 철도가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5> 전라북도 철도사업 계획

(단위: 억원)

| 사 업 명            | 총 사업비   | '03년까지 투자 | 연도별 소요액(3년간) |      |       | 향후 소요   |
|------------------|---------|-----------|--------------|------|-------|---------|
|                  |         |           | '04년         | '05년 | '06년  |         |
|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 3,900   | -         | 20           | 30   | 500   | 3,350   |
| 군산선 복선 전철화       | 4,115   | -         | 20           | 800  | 800   | 2,495   |
| 호남고속 철도 건설       | 124,340 | 126       | 200          | 200  | 300   | 123,514 |
| 군산~장항간 철도 건설     | 3,000   | 1,337     | 1,000        | 332  | 331   |         |
| 전라선복선 전철화        | 11,678  | 123       | 1,500        | 100  | 2,000 | 7,955   |

### 3) 항만

전북의 항만은 군장신항만이 건설 중에 있고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라 새만금신항만이 계획되어 있으며, 군산지역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군산항의 항만시설 현황과 능력은 앞으로의 물동량을 생각한다면 매우 부

족한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확장과 새로운 대안이 강력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지역의 직교류기반인 항만은 전국 주요항만 13개중 전국평균의 36.4%인 11,717톤의 하역능력을 지니며, 전국대비 52.1%인 27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다.

<표 3-26> 항만시설 현황 및 능력

| 시설현황 | 안벽(m)   | 물양장(m) | 잔교(기) | 방파제(m) | 상옥 및 창고(동) | 야적장(천m <sup>2</sup> ) |
|------|---|--------|-------|--------|------------|-----------------------|
|      | 3,409   | 2,207  | 5     | 500    | 6          | 702                   |
| 시설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안능력 : 27선석</li> <li>· 하역능력 : 14,937천 톤/년</li> </ul> |        |       |        |            |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2.

<표 3-27> 화물처리실적 현황

(단위: 천 톤)

|      | 하역능력   | 총화물량   | 연안    |       |       |
|------|--------|--------|-------|-------|-------|
|      |        |        | 연안    | 수입    | 수출    |
| 1990 | 3,312  | 4,516  | 2,475 | 2,033 | 8     |
| 1995 | 3,523  | 8,441  | 4,999 | 3,207 | 235   |
| 2000 | 7,266  | 11,787 | 5,163 | 4,571 | 2,053 |
| 2003 | 11,717 | 15,827 | 5,821 | 7,033 | 2,973 |

기준: 군산항 기준.

자료: 군산지방해양 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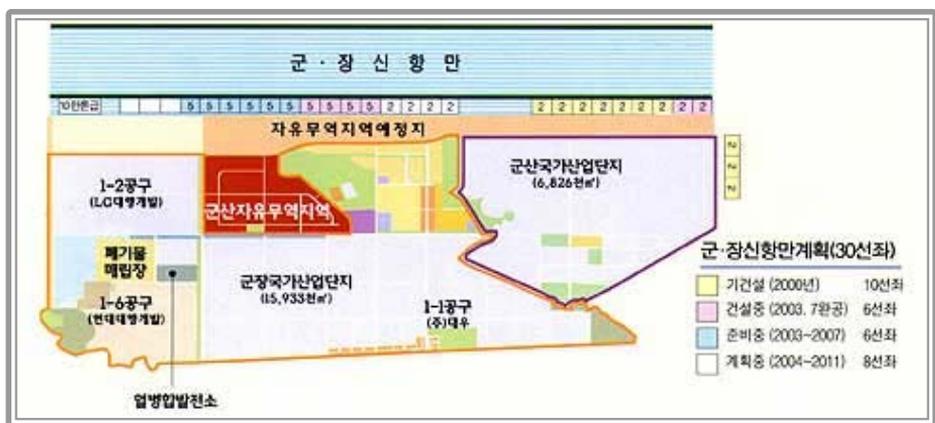
전북은 해운화물의 수송량에 있어 98년에 큰 폭의 감소 이후, 꾸준히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곡과 유류 등은 증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료, 시멘트, 기계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전라북도 해운 화물 수송

(단위: 톤)

| 연 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합 계       | 12,044,938 | 10,165,197 | 11,502,821 | 11,786,792 | 12,005,972 | 12,776,414 |           |
| 외 항       | 6,034,816  | 4,917,756  | 5,889,053  | 6,624,065  | 6,957,688  | 7,607,481  |           |
| 연 안       | 6,010,122  | 5,247,441  | 5,613,768  | 5,162,727  | 5,048,284  | 5,168,933  |           |
| 주요 화물 수송량 | 양 곡        | 0          | 10,034     | 36,441     | 18,465     | 23,135     | 151,091   |
|           | 유 류        | 3,071,954  | 2,091,618  | 2,253,087  | 2,109,133  | 2,119,480  | 2,613,374 |
|           | 당 류        | 419,496    | 503,779    | 423,050    | 486,586    | 532,974    | 529,309   |
|           | 유지류        | 0          | 0          | 19         | 0          | 0          | 0         |
|           | 비 료        | 15,261     | 25,843     | 120,950    | 146,072    | 118,119    | 40,907    |
|           | 시멘트        | 1,418,909  | 1,087,939  | 941,973    | 848,544    | 914,431    | 843,514   |
|           | 목 재        | 1,096,728  | 398,730    | 800,532    | 839,206    | 1,107,205  | 1,270,650 |
|           | 선 어        | 13,831     | 11,549     | 18,214     | 17,703     | 15,149     | 13,640    |
|           | 모 래        | 330,747    | 202,610    | 553,706    | 537,572    | 450,928    | 460,685   |
|           | 기타광석       | 771,231    | 612,370    | 931,021    | 922,778    | 893,826    | 807,629   |
|           | 기계류        | 20,020     | 20,912     | 32,646     | 23,276     | 60,781     | 14,105    |
|           | 철 재        | 69,174     | 130,192    | 216,189    | 186,267    | 111,012    | 192,844   |
|           | 기 타        | 4,810,632  | 5,069,621  | 5,184,993  | 5,651,190  | 5,658,932  | 6,682,180 |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3.



<그림 3-7> 군장신항만계획(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발생화물량과 배후세력권 발생화물량을 구분하고, 공업항 기능과 상

업항 기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군장국가산업단지의 개발규모 및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국 교역기지 및 배후산업단지의 수출입 전진기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3-29> 군산 항만 개요

| 부두명  | 길이(m) | 접안능력 (DWTX 선식)           | 아적장   | 창고 (m³) | 주요취급화물            |
|------|-------|--------------------------|-------|---------|-------------------|
| 계    | 4,626 | 32척                      | 1,233 | 44,537  |                   |
| 제1부두 | 525   | 20,000 x 1<br>10,000 x 2 | 146   | 4,840   | 양곡, 원목, 잡화        |
| 제2부두 | 551   | 20,000 x 2<br>5,000 x 1  | 63    | 7,867   | 양곡, 원목, 잡화        |
| 제3부두 | 640   | 20,000 x 3               | 158   | 12,030  | 시멘트, 양곡, 원목, 액체화물 |
| 제4부두 | 300   | 20,000 x 1               |       |         | 자동차               |
| 제5부두 | 1,260 | 20,000 x 6               | 190   | 19,810  | 자동차, 컨테이너, 펄프, 잡화 |
| 제6부두 | 1,350 | 50,000 x 4<br>20,000 x 2 | 676   |         | 양곡, 컨테이너          |

자료: www.gftz.org.

군산항은 대련 564km, 청도 582km, 상해 806km 중국의 항만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국 교역 최적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020년까지 군산항의 필요한 총화물량, 시설소요, 하역능력 등 시설수급을 예측해보면, 물량에 맞는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표 3-30> 시설수급 전망

(단위: 천 톤, 천TEU)

| 구분                 | 2000          | 2006            | 2011            | 2020            |
|--------------------|---------------|-----------------|-----------------|-----------------|
| 총 화 물 량(천 톤)       | 12,395        | 30,245          | 36,350          | 53,652          |
| 시 설 소 요(천 톤, 천TEU) | 10,276<br>(4) | 26,418<br>(334) | 31,581<br>(464) | 47,556<br>(883) |
| 하 역 능 력(천 톤, 천TEU) | 14,937<br>(0) | 31,965<br>(321) | 35,739<br>(428) | 51,249<br>(856) |
| 과 부 족(천 톤, 천TEU)   | 4,661<br>(-4) | 5,547<br>(-13)  | 4,158<br>(-36)  | 3,693<br>(-27)  |

주. ( )내는 컨테이너.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2002.

한국산업개발연구원<sup>6)</sup>에 따르면, 군산항과 장항항의 품목별 물동량 예측을 통해 집안능력을 10만 톤급 등 21선석 증가 (27선석→48선석)시키고 하역능력을 20,802천 톤/년 증가 (14,937천 톤/년→35,739천 톤/년)시켜야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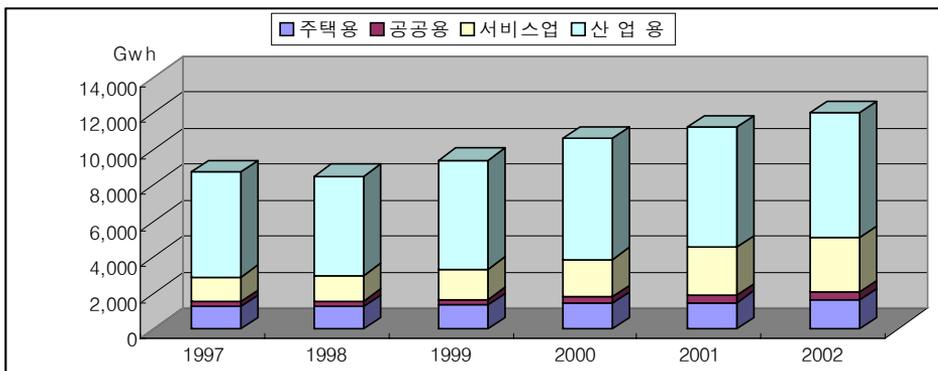
#### 4) 전력

<표 3-31> 발전 현황

| 연도/발전소   | 발전설비 (MW) | 발전량 (MMh/연간) | 평균전력 (kW) | 최대전력 (kW) |
|----------|-----------|--------------|-----------|-----------|
| 1997     | 1,009     | 1,245,100    | 114,125   | 406,000   |
| 1999     | 701       | 1,143,020    | 130,535   | 685,000   |
| 2002     | 701       | 1,066,038    | 121,693   | 709,300   |
| 무주양수발전처  | 600       | 576,400      | 65,799    | 607,000   |
| 군산화력발전처  | 66        | 365,889      | 41,768    | 70,000    |
| 섬진강수력발전처 | 35        | 123,749      | 14,126    | 32,300    |

자료 : 무주양수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섬진강수력발전처, 2002.

전반적인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사용비율이 줄고 대신 서비스업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3.

6) 전라북도, (2004).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세계물류박람회 개최 추진방안.

<그림 3-8> 용도별 전력사용량

1997년 이후 화학 관련 분야의 제조업과 1차 금속산업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 그리고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하였으며, 다른 분야의 제조업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제조업 중분류별 전력사용량

(단위: GWh)

| 연 도  | 합 계   | 음식료품<br>및<br>담배제조<br>업 | 섬유의복<br>및<br>가죽산업 | 나무 및<br>나무제품<br>제조업,<br>가구포함 | 종이및종<br>이제품<br>인쇄및출<br>판업 | 화학물과<br>화학석유<br>석탄<br>고무및플<br>라스틱제<br>품 | 비금속광<br>물제조업<br>(석유및<br>석탄제품<br>제외) | 제1차<br>금속산업 | 조립금속<br>제품기계<br>및<br>장비제조<br>업 | 기타제조<br>업 |
|------|-------|------------------------|-------------------|------------------------------|---------------------------|---|-------------------------------------|-------------|--------------------------------|-----------|
| 1997 | 5,486 | 725                    | 731               | 194                          | 1,504                     | 723                                     | 419                                 | 466         | 656                            | 68        |
| 1998 | 5,222 | 681                    | 738               | 144                          | 1,514                     | 726                                     | 312                                 | 431         | 616                            | 60        |
| 1999 | 5,724 | 733                    | 754               | 193                          | 1,480                     | 799                                     | 350                                 | 622         | 725                            | 68        |
| 2000 | 6,269 | 831                    | 817               | 204                          | 1,557                     | 890                                     | 423                                 | 661         | 815                            | 71        |
| 2001 | 6,188 | 870                    | 802               | 213                          | 1,402                     | 904                                     | 461                                 | 669         | 800                            | 67        |
| 2002 | 6,448 | 880                    | 791               | 216                          | 1,431                     | 1,015                                   | 452                                 | 769         | 824                            | 70        |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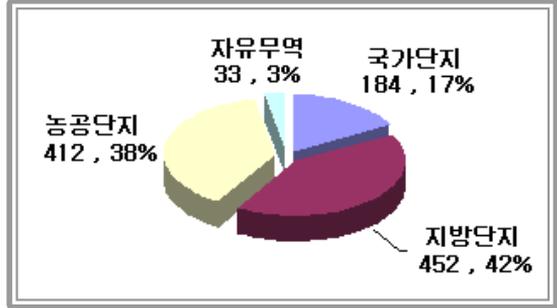
## 2. 산업단지 현황

### 1) 산업단지 개황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제도는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체도로 나누어지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입지제도는 외국인 기업전용단지제도와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로 나뉜다. 일반 산업단지는 관리권자를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나눌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수출자유지역 등을 배치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 또는 두 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지역에서 지정된다.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되며, 농공단지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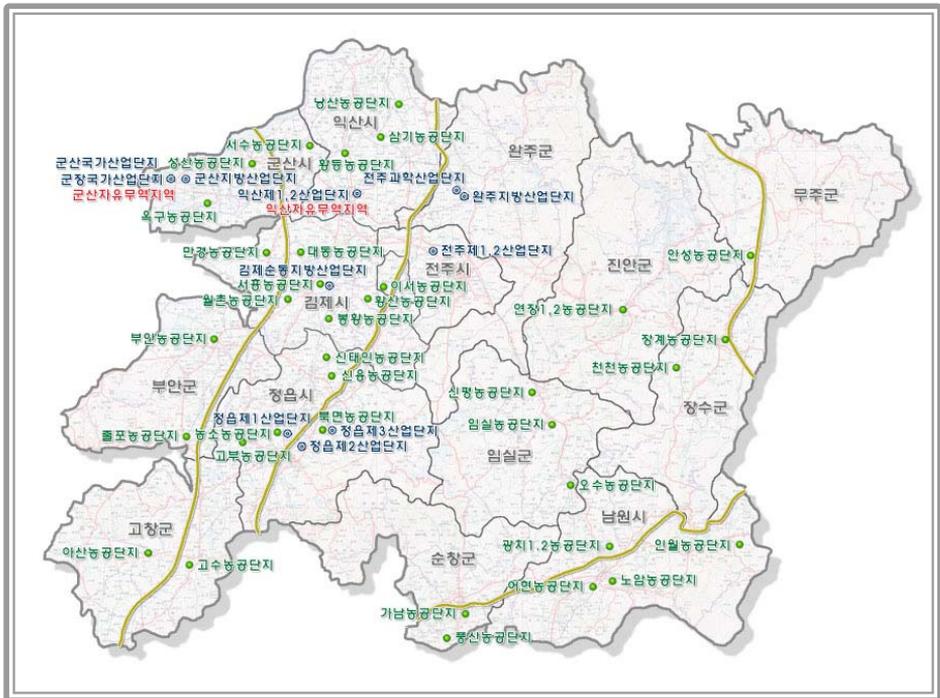
2003년 12월 기준 전라북도의 국가·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계획입지와 그 밖의 개별입지에 등록된 공장은 모두 3,258개가 된다.

이중에서 계획입지에는 1,081개의 공장이 계획입지에 들어서있는데, 지방산업단지(42%)와 농공단지(38%)에 많은 수가 입지에 있고 국가산업단지에는 17%, 그리고 나머지 3%정도가 자유무역지대에서 가동 중에 있다.



<그림 3-9> 전북 계획입지 공장등록현황, 2003.

그 수에 비해 면적은 국가산업단지가 21,438천㎡, 지방산업단지가 20,240천㎡, 농공단지가 4,537천㎡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비슷하게 넓은 면적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3-10> 전북 국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포도

<표 3-33> 산업단지 현황(2004년 6월말 기준)

| 지역별 | 구분     | 단지수 | 입주계약<br>(개) | 가동<br>(개) | 고용<br>(명) | 생산(누계)<br>(억원) | 수출(누계)<br>(백만달러) | 조성면적<br>(천㎡) | 분양률<br>(%) |
|-----|--------|-----|-------------|-----------|-----------|----------------|------------------|--------------|------------|
|     | 국가35개  |     | 19,556      | 17,604    | 601,374   | 1,286,834      | 57,402           | 414,126      | 96.9       |
|     | 지방176개 |     | 11,109      | 9,534     | 374,826   | 488,368        | 18,914           | 210,395      | 95.0       |
|     | 농공319개 |     | 4,559       | 4,220     | 112,162   | 11,123,367     | 2,474,290        | 46,160       | 98.3       |
| 서울  | 국가     | 1   | 3,463       | 2,748     | 68,066    | 46,947         | 1,479            | 3,728        | 100        |
|     | 지방     | 1   | 215         | 215       | 2,091     | 814            | 7                | 155          | 100        |
| 부산  | 국가     | 1   | 1,149       | 929       | 21,912    | 14,597         | 476              | 6,972        | 94.7       |
|     | 지방     | 5   | 849         | 700       | 22,336    | 21,000         | 519              | 10,325       | 96.6       |
|     | 농공     | 1   | 22          | 22        | 1,868     | 353,656        | 96,799           | 259          | 100        |
| 대구  | 지방     | 5   | 2,242       | 1,919     | 73,631    | 48,663         | 1,348            | 19,264       | 100        |
|     | 농공     | 2   | 61          | 61        | 1,166     | 82,622         | 9,015            | 353          | 100        |
| 인천  | 국가     | 1   | 3,992       | 3,987     | 64,092    | 42,015         | 742              | 9,574        | 100        |
|     | 지방     | 6   | 657         | 602       | 11,077    | 11,760         | 90               | 5,332        | 100        |
| 광주  | 국가     | 2   | 224         | 150       | 6,481     | 14,321         | 947              | 3,664        | 85.8       |
|     | 지방     | 5   | 1,208       | 1,084     | 29,407    | 33,709         | 1,009            | 9,361        | 100        |
|     | 농공     | 1   | 41          | 41        | 1,400     | 98,804         | 7                | 324          | 100        |
| 대전  | 지방     | 5   | 466         | 330       | 12,795    | 24,259         | 698              | 8,662        | 97.2       |
| 울산  | 국가     | 2   | 808         | 707       | 96,922    | 379,824        | 17,926           | 63,381       | 100        |
|     | 지방     | 1   | -           | -         | -         | -              | -                | 554          | 40.9       |
|     | 농공     | 4   | 111         | 111       | 4,055     | 386,091        | 40               | 597          | 100        |
| 경기  | 국가     | 4   | 6,962       | 6,597     | 122,587   | 134,415        | 4,017            | 33,401       | 100        |
|     | 지방     | 53  | 1,894       | 1,674     | 59,705    | 63,538         | 1,484            | 19,260       | 99.2       |
|     | 농공     | 1   | 4           | 4         | 327       | 120,902        | 9                | 117          | 100        |
| 강원  | 국가     | 1   | 5           | 4         | 235       | -              | -                | 1,872        | 27.5       |
|     | 지방     | 9   | 276         | 220       | 6,087     | 7,175          | 39               | 4,812        | 86.3       |
|     | 농공     | 24  | 515         | 461       | 9,899     | 727,009        | 300              | 3,610        | 95.8       |
| 충북  | 국가     | 3   | 5           | 1         | 287       | 212            | -                | 8,395        | 78.0       |
|     | 지방     | 16  | 412         | 303       | 30,516    | 59,575         | 2,937            | 21,809       | 91.5       |
|     | 농공     | 38  | 391         | 371       | 13,534    | 1,610,792      | 281              | 4,870        | 100        |
| 충남  | 국가     | 3   | 236         | 146       | 7,246     | 17,313         | 531              | 23,678       | 95.0       |
|     | 지방     | 21  | 259         | 199       | 29,606    | 38,078         | 6,439            | 23,007       | 95.3       |
|     | 농공     | 71  | 715         | 622       | 20,435    | 2,210,086      | 484              | 9,805        | 99.4       |
| 전북  | 국가     | 3   | 254         | 202       | 9,840     | 15,820         | 788              | 21,438       | 98.9       |
|     | 지방     | 10  | 561         | 450       | 26,151    | 49,432         | 1,789            | 20,240       | 88.2       |
|     | 농공     | 37  | 497         | 394       | 9,531     | 8,629          | 228              | 4,537        | 98.2       |
| 전남  | 국가     | 5   | 376         | 273       | 26,290    | 181,535        | 5,387            | 138,392      | 95.2       |
|     | 지방     | 9   | 166         | 147       | 10,356    | 18,671         | 722              | 28,390       | 99.5       |
|     | 농공     | 35  | 729         | 668       | 12,469    | 822,759        | 232              | 6,237        | 99.0       |
| 경북  | 국가     | 3   | 728         | 579       | 83,814    | 268,732        | 17,141           | 60,151       | 98.1       |
|     | 지방     | 19  | 1,079       | 927       | 32,700    | 64,256         | 1,123            | 23,237       | 95.1       |
|     | 농공     | 53  | 812         | 760       | 20,523    | 2,221,016      | 541              | 8,795        | 96.9       |
| 경남  | 국가     | 6   | 1,354       | 1,281     | 93,602    | 171,103        | 7,968            | 39,480       | 96.9       |
|     | 지방     | 11  | 825         | 764       | 28,368    | 47,438         | 710              | 15,987       | 91.2       |
|     | 농공     | 49  | 654         | 602       | 16,450    | 1,584,646      | 237              | 6,344        | 97.5       |
| 제주  | 농공     | 3   | 47          | 44        | 505       | 41,993         | 3                | 312          | 97.5       |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 2)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분양가 현황

전국 시도별 산업단지 용지 분양가를 서로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전라북도 소재 산업단지들의 분양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내 용지의 가격 경쟁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평국가산업단지, 대불국가산업단지, 울산의 온산국가산업단지 등은 국장국가산업단지나 전주과학산업단지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분양가로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타 지역과의 공단용지 분양가 비교

| 지 역  | 산 업 단 지  | 분양가격 (원/평)      | 산 업 단 지                          | 분양가격 (원/평)                     |
|------|----------|-----------------|----------------------------------|--------------------------------|
| 전라북도 | 정읍제2산업단지 | 183,000         | 군산국가산업단지<br>군장국가산업단지<br>군산자유무역지역 | 194,000<br>378,000<br>무상(저가임대) |
|      | 정읍제3산업단지 | 114,000~149,000 |                                  |                                |
|      | 김제순동산업단지 | 119,000~179,000 |                                  |                                |
|      | 전주과학산업단지 | 288,000         |                                  |                                |
| 부 산  | 녹산국가산업단지 | 617,000         |                                  |                                |
| 대 구  | 성서3차산업단지 | 490,000         |                                  |                                |
| 광 주  | 첨단과학산업단지 | 403,000         | 평동2차산업단지                         | 500,000                        |
| 대 전  | 과학산업단지   | 400,000         | 제4산업단지                           | 495,000                        |
| 경기도  | 시화산업단지   | 413,000         | 김포울생산업단지<br>평택장단산업단지             | 570,000<br>560,000             |
|      | 아산산업단지   | 418,000         |                                  |                                |
|      | 김포상마산업단지 | 470,000         |                                  |                                |
| 강원도  | 강릉과학산업단지 | 354,000         | 북평국가산업단지                         | 267,000                        |
| 충청북도 | 맹동산업단지   | 386,000         | 오창과학산업단지                         | 337,000                        |
| 충청남도 | 석문국가산업단지 | 505,000         | 아산국가산업단지                         | 342,000                        |
|      | 서산대죽산업단지 | 400,000         |                                  |                                |
| 전라남도 | 대불국가산업단지 | 229,000         | 삼진산업단지                           | 350,000                        |
|      | 여천국가산업단지 | 380,000         |                                  |                                |
| 경상북도 | 구미국가산업단지 | 400,000         | 건천제2산업단지<br>온산국가산업단지             | 320,000<br>238,010             |
|      | 경산진량산업단지 | 460,000         |                                  |                                |
| 경상남도 | 창원국가산업단지 | 455,000         | 함안철서산업단지<br>응산산업단지               | 400,000<br>670,000             |
|      | 덕암산업단지   | 500,000         |                                  |                                |
|      | 양산어곡산업단지 | 660,000         |                                  |                                |

주: 내부 자료인 관계로 금액이 상황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3.

### 3) 전라북도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현황

전라북도는 10개의 지방산업단지와 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있으며, 이 가운데 2006년까지 조성 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가 사업비 7,907억원, 조성면적 4,436천 평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표 3-35> 전라북도 지방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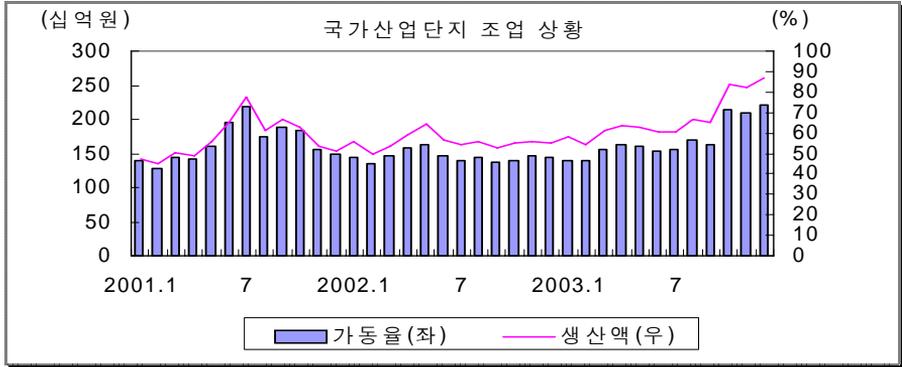
| 단지명      | 조성기간  | 사업비<br>(억원) | 조성면적<br>(천 평) | 분양계획<br>(천 평) | 분양실적<br>(천 평) | 분양률<br>(%) |
|----------|-------|-------------|---------------|---------------|---------------|------------|
| 합 계      | 15단지  | 17,550      | 13,439        | 6,193         | 5,387         | 86.7       |
| 지방 산단 소계 | 10단지  | 6,117       | 6,122         | 4,392         | 3,678         | 83.4       |
| 전주1      | 66-67 | 6           | 509           | 388           | 388           | 100.0      |
| 전주2      | 84-87 | 138         | 208           | 168           | 168           | 100.0      |
| 전주3(완주)  | 91-94 | 1,160       | 1,016         | 788           | 788           | 100.0      |
| 전주과학     | 91-01 | 1,799       | 930           | 563           | 103           | 18.2       |
| 군산지방     | 89-01 | 763         | 1,616         | 1,122         | 1,122         | 100.0      |
| 군산지방확장지구 | 01-05 | 24          | 90            | 67            | 20            | 29.8       |
| 익산지방     | 84-94 | 1,148       | 1,001         | 770           | 770           | 100.0      |
| 정읍1      | 79-81 | 8           | 61            | 46            | 46            | 100.0      |
| 정읍2      | 91-95 | 412         | 302           | 200           | 94            | 47.0       |
| 정읍3      | 91-98 | 533         | 310           | 226           | 129           | 57.5       |
| 김제순동     | 95-99 | 126         | 79            | 54            | 50            | 92.5       |
| 국가 산단 소계 | 5단지   | 11,433      | 7,317         | 1,801         | 1,709         | 94.8       |
| 군산국가     | 88-94 | 2,413       | 2,070         | 1,448         | 1,356         | 93.6       |
| 익산자유     | 73-74 | 6           | 94            | 89            | 89            | 100.0      |
| 익산국가     | 73-74 | 15          | 337           | 264           | 264           | 100.0      |
| 군산자유     | 00-04 | 1,092       | 380           | 350           | 5             | 1.4        |
| 군장국가     | 90-06 | 7,907       | 4,436         | 1,943         | 633           | 32.5       |

주: 익산국가산단과 국장국가산단 내 자유무역지역을 세분화하였음.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2003년 12월중 전북 내 국가산업단지(군산, 익산)의 생산액은 2,61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8.3% 증가하였으며, 수출 또한 전년 동월대비 258.3% 증가한 1억 3,4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자동차 수출호조에 힘입어 생산규모 확

대가 두드러진 반면 익산국가산업단지는 수출·생산 모두 회복하는 수준이다. 2003년 중 전북도내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은 전년대비 20.6% 증가한 2조 4,31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3-11> 전북 국가산업단지 조업현황

2003년 12월말 현재 전체 국가산업단지 고용인원은 GM대우자동차 군산공장에서도 대규모 생산인력 고용으로 전년 동월대비 33.8% 증가한 8,910명으로 확대되었고,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정상 생산능력 대비 당월 생산실적 비율)과 생산액이 모두 증가하는 시계열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GM대우자동차의 생산 본격화로 군산산업단지의 가동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04년 6월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 수는 530개로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35개, 지방산업단지는 176개, 농공단지는 319개가 조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670백만㎡로 우리나라 면적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지수로는 농공단지가 319개로 가장 많으나 조성면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가 414,126천㎡로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 단지수는 10배 가까이 되나 조성면적은 1/10수준에 머물고 있다.

#### 4) 농공단지현황

<표 3-36> 전북 농공단지 입주, 고용, 생산, 수출 현황

| 시·군 | 단지명  | 입주계약<br>(개) | 가동<br>(개) | 고용<br>(명) | 생산(누계)<br>(백만원) | 수출(누계)<br>(천달러) | 조성면적<br>(천㎡) |
|-----|------|-------------|-----------|-----------|-----------------|-----------------|--------------|
| 군산시 | 성산   | 6           | 3         | 148       | 5,741           | 4,754           | 142          |
|     | 서수   | 48          | 36        | 953       | 49,070          | 1,499           | 287          |
|     | 옥구   | 24          | 16        | 342       | 10,513          | -               | 140          |
| 익산시 | 삼기   | 23          | 21        | 402       | 36,796          | 3,007           | 131          |
|     | 황등   | 51          | 49        | 265       | 17,015          | -               | 149          |
|     | 남산   | 10          | 6         | 35        | 884             | -               | 128          |
| 정읍시 | 농소   | 4           | 4         | 841       | 72,495          | 59,818          | 185          |
|     | 북면   | 27          | 19        | 557       | 25,542          | 1,721           | 211          |
|     | 신용전문 | -           | -         | -         | -               | -               | -            |
|     | 고부   | 16          | 14        | 452       | 109,822         | 1,861           | 152          |
|     | 신태인  | 10          | 5         | 103       | 29,753          | -               | 149          |
| 남원시 | 광치1  | 15          | 14        | 299       | 20,254          | 109,546         | 140          |
|     | 광치2  | 21          | 16        | 193       | 12,505          | -               | 112          |
|     | 어현   | 1           | 1         | 258       | 15,874          | 9,945           | 116          |
|     | 인월   | 4           | 4         | 285       | 14,960          | 1,958           | 50           |
|     | 노암   | -           | -         | -         | -               | -               | -            |
| 김제시 | 서흥   | 26          | 25        | 510       | 69,906          | 397             | 280          |
|     | 봉황   | 30          | 24        | 465       | 19,337          | -               | 233          |
|     | 월촌   | 18          | 14        | 306       | 11,981          | -               | 145          |
|     | 황산   | 10          | 9         | 341       | 12,062          | -               | 73           |
|     | 만경   | 17          | 15        | 390       | 112,926         | -               | 216          |
|     | 대동전문 | -           | -         | -         | -               | -               | -            |
| 완주군 | 이서   | 3           | 3         | 359       | 27,209          | 11,260          | 398          |
| 진안군 | 연장1  | 10          | 7         | 171       | 10,889          | 4,235           | 53           |
|     | 연장2  | 13          | 8         | 76        | 3,739           | 60              | 146          |
| 무주군 | 안성   | 16          | 12        | 69        | 4,650           | 340             | 94           |
| 장수군 | 천천   | 11          | 9         | 227       | 30,666          | 15,238          | 57           |
|     | 장계   | -           | -         | -         | -               | -               | -            |
| 임실군 | 신령   | 9           | 9         | 360       | 22,776          | -               | 53           |
|     | 오수   | 13          | 9         | 139       | 12,542          | 1,434           | 132          |
|     | 임실   | -           | -         | -         | -               | -               | -            |
| 순창군 | 가남   | 5           | 4         | 231       | 51,413          | 513             | 82           |
|     | 풍산   | -           | -         | -         | -               | -               | -            |
| 고창군 | 고수   | 12          | 9         | 213       | 6,166           | 215             | 105          |
|     | 아산   | 14          | 10        | 95        | 4,444           | 470             | 140          |
| 부안군 | 졸포   | 12          | 6         | 313       | 21,244          | 146             | 89           |
|     | 부안   | 18          | 13        | 133       | 19,817          | -               | 149          |
| 합계  | 37개  | 497         | 394       | 9,531     | 862,991         | 228,417         | 4,537        |

자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2004.

전북의 농공단지의 수는 37개이고, 입주 계약한 497개 업체 중 394개 업체가 가동

중(79%)이며, 9,531명의 인원이 고용되어 있다. 정읍의 신용, 남원의 노암, 김제의 대동, 장수의 장계, 순창의 풍산 등의 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또한, 익산 전문농공단지 330천㎡(100천 평), 무주 특화 농공단지 149천㎡(45천 평), 완주 봉동 농공단지 330천㎡(100천 평) 등 3개단지 809천㎡(245천 평)이 2005년 지정 계획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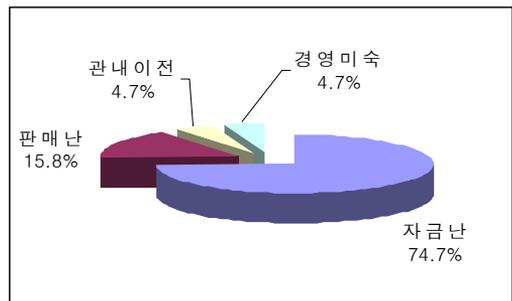
<표 3-37> 전라북도의 조성 중인 농공단지 현황

| 구분         | 위치                      | 지정면적                  | 사업기간              | 비고  |
|------------|-------------------------|-----------------------|-------------------|---|
| 진안 제2농공단지  | 진안군 진안을 연장리 1078번지 일원   | 146,000㎡<br>(44,000평) | 1999 ~ 2002년 12월  | 소득세·법인세 : 최소소득발생년도 포함 4년간 50%감면(무소득 경우 5년간)<br>취득세·등록세 : 100% 면제<br>재산세·종토세 : 5년간 100% 면제 |
| 장수 장계 농공단지 |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송천 일원       | 285,340㎡<br>(86,315평) | 2001 ~ 2004년      | 우선지원농어촌 지역<br>진행 상황 : 2004. 11월 준공  |
| 남원 노암 농공단지 | 남원시 노암동 산 81-1번지 일원     | 142,532㎡<br>(43,116평) | 2002 ~ 2005년      | 추가지원농어촌<br>부지조성공사 공정 80%(2005년 4월 준공예정)   |
| 김제 대동 농공단지 |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일원          | 330,302㎡<br>(99,916평) | 2003 ~ 2005년      | 추가지원농어촌 - 전문단지<br>부지 매입 및 실시계획 설계중(2005. 10월 준공예정)  |
| 임실농공단지     |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갈마리 일원     | 147,043㎡<br>(44,480평) | 2003 ~ 2005년      | 우선지원농어촌<br>부지매입 및 실시계획 설계중(2005. 10월 준공예정)  |
| 정읍 신용 농공단지 |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33-2번지 일원  | 143,216㎡<br>(43,323평) | 2003~2005(3년간)    | 일반농어촌 -육가공 전문단지<br>부지매입 및 실시계획 설계중(2005. 10월 준공예정)  |
| 순창 풍산 농공단지 | 순창군 풍산면 죽전리 산 78-1번지 일원 | 138,827㎡<br>(41,995평) | 2003 ~ 2005년(4년간) | 우선지원농어촌<br>부지조성공사 공정 30%(2005년 8월 준공예정)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4.

### 5) 전라북도 폐업업체 분석

2001년에 폐업한 공장은 총 132개사로 이중 개별입지에는 103개사(78%), 농공단지21개사(15.9%), 산업단지에 8개사(6.1%)이고, 2002년에는 115개사, 2003년에는 66개 공장이 문을 닫았다. 2001년 폐업된 업체 중 업종별로 분석하면 음식료품이 27개사(20.4%)



<그림 3-12> 도산·폐업 원인

비금속 25개사(18.9%), 조립금속24개사(18.2%), 화학22개사(16.7%)이며 이어서 기타, 섬유, 제지, 목재의 순으로 약간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2003년에 폐업한 주요 원인으로는 자금부족이 7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부진(15.8%) 경영미숙 (4.7%), 관내이전 (4.7%) 순으로 나타났다.

## 제 4 절 기업이전 현황 분석

### 1. 기업유치 현황

전북의 업종별 공장설립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제지와 화학분야의 공장설립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립금속 분야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의 자동차관련 협력업체의 공장설립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8> 전북 업종별 공장설립 추이

(단위: 개사, %)

| 구 분  | 식품           | 섬유          | 목재          | 제지          | 비금속          | 기타          | 화학           | 조립금속          | 합계           |
|------|--------------|-------------|-------------|-------------|--------------|-------------|--------------|---------------|--------------|
| 2001 | 70<br>(18.3) | 20<br>(5.2) | 16<br>(4.2) | 24<br>(6.3) | 52<br>(13.6) | 15<br>(3.9) | 64<br>(16.8) | 121<br>(31.7) | 382<br>(100) |
| 2002 | 99<br>(19.8) | 19<br>(3.8) | 13<br>(2.6) | 23<br>(4.6) | 74<br>(14.8) | -           | 79<br>(15.7) | 194<br>(38.7) | 501<br>(100) |
| 2003 | 98<br>(19.2) | 24<br>(4.7) | 21<br>(4.1) | 16<br>(3.1) | 78<br>(15.3) | -           | 53<br>(10.4) | 289<br>(56.6) | 511<br>(100)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3.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별 입지보다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내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주변의 여러 집적시설과 동종업계가 집적화 되어 기업간에 협력관계가 용이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개별입지보다 더 선호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39> 전북 입지별 공장설립 추이

(단위: 개사, %)

|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합계        |
|------|------------|------------|------------|-----------|
| 2001 | 93(24.3%)  | 76(19.9%)  | 213(55.8%) | 382(100%) |
| 2002 | 129(25.7%) | 101(20.2%) | 271(54.1%) | 501(100%) |
| 2003 | 144(28.2%) | 113(22.1%) | 254(49.7%) | 511(100%)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3.

또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은 개별입지에 비해 대기업이나 고용인원이나 투자금액이 큰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 전라북도의 2001년의 입지별 회사의 형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주식회사는 47.4%를 보이고 개인회사는 38.2%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주식회사의 각각 비율은 65.6%와 56.6%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단지별 경영조직 형태

(단위: 개사, %)

| 구 분  | 합 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개인회사       |            |
|------|-------------|------------|------------|------------|------------|
| 2001 | 합계          | 382(100%)  | 181(47.4%) | 55(14.4%)  | 146(38.2%) |
|      | 산업단지        | 93         | 61(65.6%)  | 8 (8.6%)   | 24(25.8%)  |
|      | 농공단지        | 76         | 43(56.6%)  | 10 (13.1%) | 23(30.3%)  |
|      | 개별입지        | 213        | 77(36.1%)  | 37(17.4%)  | 99(46.5%)  |
| 2003 | 511(100.0%) | 265(50.3%) | 65(12.8%)  | 181(36.8%)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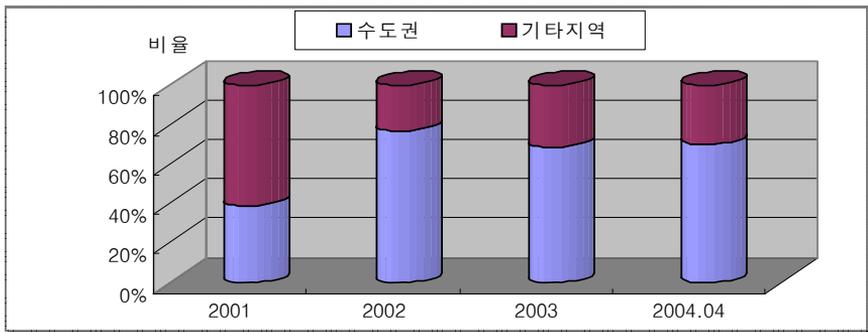
2002년 5개의 대기업과 2003년 2개의 대기업은 매일뉴질랜드치즈(주)만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선 산업단지 내의 차별화 된 투자인센티브를 가지고 적극적인 산업단지 별 마케팅전략을 펼 칠 필요가 있다.

<표 3-41> 대기업체 입주 현황

| 대기업체 명 | 공단명                     | 부지(천평)<br>(건물) | 투자액<br>(억원) | 종업원<br>(명) | 입주<br>형태 | 착공/준공/생산     |                      |
|--------|-------------------------|----------------|-------------|------------|----------|--------------|----------------------|
| 2002   | 다임리현대상용차(주)<br>(스벤에너스트) | 전주과학           | 17<br>(10)  | 2,400      | 400      | 현대-다임러<br>합작 | '02.7/'03.12/'04. 1  |
|        | 대상(주) (이덕림)             | 군장국가           | 21(10)      | 1,000      | 400      | 서울<br>부산     | '02.7.1/'03.12/'04.1 |
|        | 윤영(주)                   | 군산국가           | 10(5)       | 170        | 200      | 천안           | '03.8/'04.12/'05.1   |
|        | 매일뉴질랜드치즈(주)             | 고창상하           | 20(10)      | 400        | 200      | 광주           | '02.10.10/'03.5      |
|        | 한국바스프(주)                | 군산지방           | 20(5)       | 650        | 100      | 독일           | '03.5/'04.5/'05.6    |
| 2003   | 트라넷(주)                  | 군산국가           | 40          | 380        | 260      | 인천           | '04.5                |
|        | 보해주정(주)                 | 전주팔복           | 건축          | 100        | 50       | 목포           | '04.5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3.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온 기업들은 2001년에는 36개, 2002년에는 26개, 2003년에는 35개, 2004년 1월에서 4월까지의 10개가 있다. 이전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본 그 비율은 2001년의 38.9% 정도인 수도권지역이 2002년 이후 2004년 4월까지 꾸준히 70%가 넘는 강세를 보임으로써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전략을 펼 때 타깃을 수도권에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13> 전북으로 이전해 온 기업 출신지역

## 2. 외국인투자 현황

전라북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담보상태를 유지하다가 1995년 지자체가 시행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단체장들의 경쟁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점에 달했던 외국인투자는 2000년 이후로는 투자금액의 규모가 점차 작아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는 국제적인 정세불안으로 인한 전반적인 세계 해외투자의 위축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전라북도 내의 투자환경이 다른 상대국이나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중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투자가 중국의 환경요인 등의 개선으로 직접 중국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외국인 투자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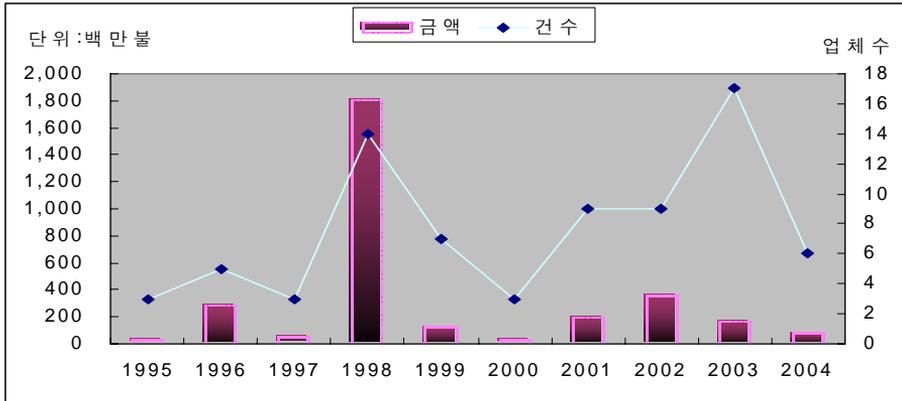
(단위: 건, 천불)

|      | 전북        |       |    |      | 전국         |       |
|------|-----------|-------|----|------|------------|-------|
|      | 금액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금액         | 건수    |
| 1995 | 27,606    | 1.4%  | 3  | 0.3% | 1,947,000  | 873   |
| 1996 | 282,812   | 8.8%  | 5  | 0.5% | 3,203,000  | 967   |
| 1997 | 53,231    | 0.8%  | 3  | 0.3% | 6,970,916  | 1,055 |
| 1998 | 1,806,366 | 20.4% | 14 | 1.0% | 8,852,566  | 1,401 |
| 1999 | 124,763   | 0.8%  | 7  | 0.3% | 15,541,547 | 2,105 |
| 2000 | 36,074    | 0.2%  | 3  | 0.1% | 15,216,711 | 4,140 |
| 2001 | 198,710   | 1.8%  | 9  | 0.3% | 11,291,844 | 3,340 |
| 2002 | 362,983   | 4.0%  | 9  | 0.4% | 9,101,324  | 2,402 |
| 2003 | 170,454   | 2.6%  | 17 | 0.7% | 6,467,861  | 2,561 |
| 2004 | 83,303    | 1.0%  | 6  | 0.3% | 8,414,863  | 2,164 |

주: 2004년은 9월말 시점까지 수치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동향, 전북 경제통상실 2004. 재인용.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70년 투자신고가 이루어진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를 시초로 커 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다가 1998년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의 한솔제지 전주공장 인수로 약 9억 6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을 기록하면서 전북 사상 최대의 약 18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실적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기간동안의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설투자보다는 기존 기업의 주인만 바뀌는 M&A형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 2004년은 9월말 시점까지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 2004.

<그림 3-14> 전북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기준 각 지자체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에 대한 총 외국인투자에서 투자건수 기준 75.8%, 투자금액 기준 71.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투자건수 기준 0.7%, 투자금액기준 2.6%에 불과하고, 인접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지역에 비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금액기준으로는 강원, 투자건수 기준으로는 전남지역과 비교해 볼 때도 전북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말 기준 전북지역에는 116개 업체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7개 업체가 중복투자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9개 업체가 투자하고 있다.<sup>7)</sup> 투자시기 및 각 지역별 투자현황은 1995년 이전에는 주로 익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1994년 말 전북 총 44개 업체 중 29개 업체가 익산지역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 후로 익산지역과 함께 군산지방산업단지 및 군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입 증가로 2003년 말 기준 군산지역에 27개 업체가 투자하고 있었고, 완주지역은 전주 제3지방산업단지 및 전주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입이 증가하였다.

7) 한국은행, 전북의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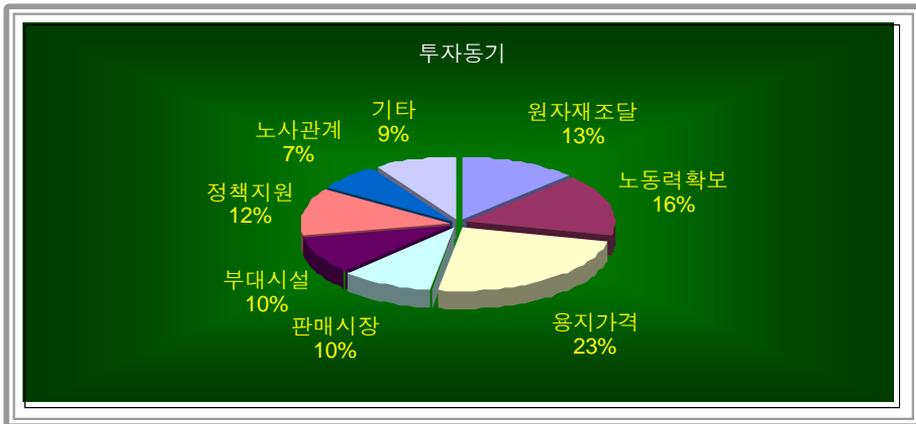
<표 3-43> 전북지역 외국인투자기업 수

(단위: 개사)

|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완주 | 기타 | 계   |
|-----------|----|----|----|----|----|----|-----|
| 1994년 이전  | 1  | 7  | 29 | 2  | 2  | 3  | 44  |
| 1995~2003 | 8  | 20 | 27 | 6  | 7  | 5  | 72  |
| 계         | 9  | 27 | 56 | 8  | 9  | 8  | 116 |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 2004.

2003년 말 기준 익산지역 54개 업체로 가장 많고, 군산지역에 27개 업체, 전주와 완주지역에 각각 9개 업체, 정읍지역에 8개 업체가 투자해왔다.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주로 공단과 연계된 집적시설을 이용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북지역에 투자한 동기 중에서 용지가격과 노동력 확보, 원자재 조달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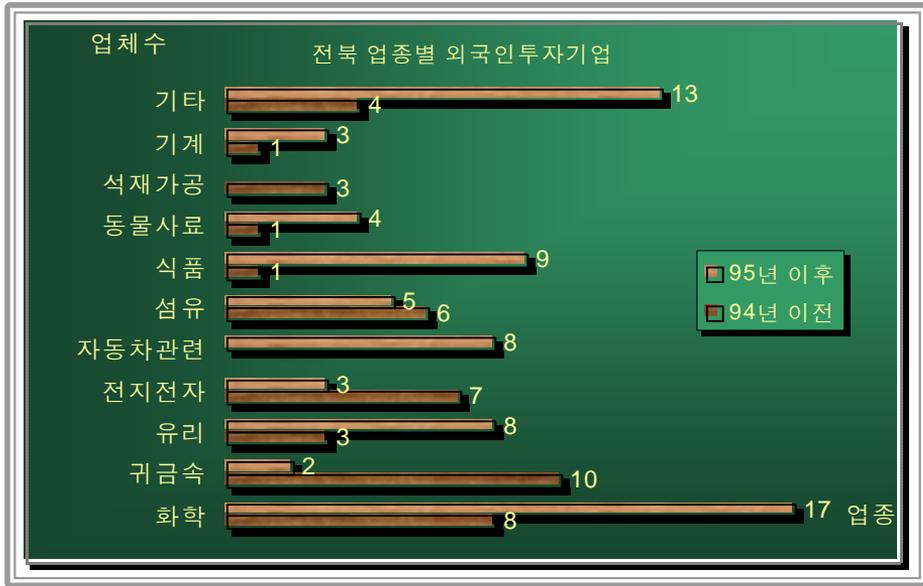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 2003.

<그림 3-15> 외국인투자기업의 전북 투자동기

전북지역에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장용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동기가 되고 다음으로 노동력 확보가 뒤를 이어 우위에 있다고 보이며, 노사관계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비율을 보이지는 않고 있었다.

전북지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요 생산업종을 살펴보면 1995년 이전에는 귀금속, 화학, 전기전자, 섬유업종이 많았으나, 1995년 이후 2003년 말까지 자동차 관

련, 식품, 유리, 화학 등 기존 지역산업과 연관된 업종의 투자가 많았다.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 2003.

<그림 3-16> 전북 업종별 외국인투자기업

전체를 보면, 화학업종이 25개 업체로서 21.5%를 점유하고 있고, 귀금속이 10.3%를 차지하며 12개 업체가, 유리와 섬유가 각각 11개 업체로 9.5%를, 전지전자업종과 식품이 8.6%를 그리고 자동차 관련업종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GM의 대우자동차 군산 공장 인수와 다임러-현대 상용차의 합작투자법인과 관련 부품업체의 투자로 8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2003년 말 총 116개 외국인 투자업체 중 휴·폐업한 업체가 25곳이고 합병과 생산준비중인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78개 업체에 불과하다. 특히, 귀금속업종의 경우 12개 중에서 10개 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업종변환이 귀금속이나 섬유, 전지전자 등에서 유리, 화학, 자동차, 기계, 식품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생산요소 비용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서 오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3. 수도권 기업 이전계획 현황

#### 1) 지방이전 기업 현황

정부의 지방이전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시행된 이후 5년간(2000~2004.6)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655개사로 집계되었다. 이전지역별로는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이 전체의 35.7%인 234개사로 가장 많고, 부산이 104개사(15.9%), 대전 77개사(11.8%)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2001년 이후로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수가 증가하면서 5년간 68개사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였다.

<표 3-44>를 보면, 충북 61개사(9.3%)와 충남 48개사(7.3%)를 포함하여 전체의 64.1%에 해당하는 420개사가 강원권과 충청권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 기업의 선택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일지라도 제품판매나 원부자재 구매 등 제반 기업활동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를 원하는 기업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4> 시·도별 지방이전기업 현황

(단위: 개사, %)

| 이전지역 | 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6 |
|------|------------|------|------|------|------|---------|
| 부 산  | 104(15.9)  | 9    | 13   | 22   | 35   | 25      |
| 대 구  | 2(0.3)     | 1    | 1    | -    | -    | -       |
| 광 주  | 6(0.9)     | 2    | 3    | -    | 1    | -       |
| 대 전  | 77(11.8)   | 20   | 13   | 17   | 16   | 11      |
| 울 산  | 12(1.8)    | 3    | 1    | -    | 2    | 6       |
| 강 원  | 234(35.7)  | 18   | 76   | 67   | 37   | 36      |
| 전 북  | 68(10.4)   | 4    | 11   | 26   | 11   | 16      |
| 전 남  | 16(2.4)    | 2    | 6    | 2    | -    | 6       |
| 충 북  | 61(9.3)    | 17   | 12   | 6    | 17   | 9       |
| 충 남  | 48(7.3)    | 5    | 6    | 14   | 11   | 12      |
| 경 북  | 24(3.7)    | 4    | 7    | 8    | 5    | -       |
| 경 남  | 3(0.5)     | 1    | -    | -    | -    | 2       |
| 계    | 655(100.0) | 86   | 149  | 162  | 135  | 123     |

주) ( )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산업자원부, (2004).

또한 지역별 이전 현황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이 전체의 1/3에 가까운 234개사이며, 이 중 123개사가 원주시로 이전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지역이 고속도로의 신설 및 확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의료기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2) 이전대상지역 현황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004년 4월~5월 중에 수도권에 소재한 3,07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계획 현황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정리하였다.<sup>8)</sup>

설문대상 전체 기업(3,073개사)중에서 이전의사가 있는 기업(380개사)의 이전지역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1%(213개사)로 가장 많았고, 서울 (6.8%, 26개사), 인천(10.0%, 38개사)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고려하는 기업이 277개사로 72.9%에 달한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인 기업은 103개사(27.1%)이며, 이 중 충남이 42개사(1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충북 21개사(5.5%), 광주 9개사(2.4%)등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을 희망하는 조사대상 수도권 기업은 8개사로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5개년 간 실제로 전북지역으로 이전해 온 기업이 전국에서 10.4%를 차지하였던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권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권이 66개사(17.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호남권이 19개사(5.0%), 영남권이 12개사(3.2%)로 조사되어 이전을 하는 경우라도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으며, 실제로 충청권을 선택한 기업의 지역분포를 보면 당진, 아산, 천안, 청원, 음성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계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기업 규모별 이전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 277개사 중 100인 미만 기

---

8) 산업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업은 182개사(65.7%)이고, 100인 이상은 95개사(34.3%)로 나타났고, 규모에 상관없이 경기도로의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서울지역을 택하였다.

지방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103개사의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이 12개사(11.7%), 50~99인이 44개사(42.7%), 100~299인이 37개사(35.9%),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개사(9.7%)로 100인 미만 기업이 총 56개사(54.4%)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100인 이상 기업에서 광주(47개사 중 5개사, 10.6%)의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전북(56개사 중 6개사, 10.7%)을 선택한 기업이 가장 많이 나타나 전북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표 3-45> 기업 규모별 이전대상지역

(단위: 개사, %)

| 이전지역 | 기업 규모  |    |         |     |          |    |          |    |         |    | 계       |     |         |
|------|--------|----|---------|-----|----------|----|----------|----|---------|----|---------|-----|---------|
|      | 50인 미만 |    | 50~99인  |     | 100~199인 |    | 200~299인 |    | 300인 이상 |    |         |     |         |
| 수도권  | 서울     | 7  | (12.3)  | 6   | (4.8)    | 8  | (12.5)   | 1  | (6.7)   | 4  | (25.0)  | 26  | (9.4)   |
|      | 인천     | 6  | (10.5)  | 18  | (14.4)   | 13 | (20.3)   |    | -       | 1  | (6.3)   | 38  | (13.7)  |
|      | 경기     | 44 | (77.2)  | 101 | (80.8)   | 43 | (67.2)   | 14 | (93.3)  | 11 | (68.8)  | 213 | (76.9)  |
|      | 계      | 57 | (100.0) | 125 | (100.0)  | 64 | (100.0)  | 15 | 100.0)  | 16 | (100.0) | 277 | (100.0) |
| 지방   | 부산     | 1  | (8.3)   |     | -        |    | -        |    | -       |    | -       | 1   | (1.0)   |
|      | 광주     | 2  | (16.7)  | 2   | (4.5)    | 3  | (10.0)   | 1  | (14.3)  | 1  | (10.0)  | 9   | (8.7)   |
|      | 대전     | 1  | (8.3)   | 2   | (4.5)    |    | -        |    | -       | 1  | (10.0)  | 4   | (3.9)   |
|      | 울산     | 1  | (8.3)   | 1   | (2.3)    |    | -        |    | -       | 1  | (10.0)  | 3   | (2.9)   |
|      | 강원     |    | -       | 3   | (6.8)    | 1  | (3.3)    |    | -       | 1  | (10.0)  | 5   | (4.9)   |
|      | 충북     | 2  | (16.7)  | 10  | (22.7)   | 5  | (16.7)   | 1  | (14.3)  | 3  | (30.0)  | 21  | (20.4)  |
|      | 충남     | 4  | (33.3)  | 16  | (36.4)   | 13 | (43.3)   | 5  | (71.4)  | 3  | (30.0)  | 41  | (39.8)  |
|      | 전북     |    | -       | 6   | (13.6)   | 2  | (6.7)    |    | -       |    | -       | 8   | (7.8)   |
|      | 전남     |    | -       |     | -        | 2  | (6.7)    |    | -       |    | -       | 2   | (1.9)   |
|      | 경북     |    | -       |     | -        | 2  | (6.7)    |    | -       |    | -       | 2   | (1.9)   |
|      | 경남     | 1  | (8.3)   | 3   | (6.8)    | 2  | (6.7)    |    | -       |    | -       | 6   | (5.8)   |
|      | 제주     |    | -       | 1   | (2.3)    |    | -        |    | -       |    | -       | 1   | (1.0)   |
|      | 계      | 12 | (100.0) | 44  | (100.0)  | 30 | (100.0)  | 7  | (100.0) | 10 | (100.0) | 103 | (100.0)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업종별 이전지역을 보면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이 많았으며, 특히 식품, 비금속은 대상기업 전부가 경기도를 선택하였다. 반면 지원서비스업은 서울을 대상지역으로 선택한 기업이 많았고, 인천은 기계업종과 기타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업종에 상관없이 충청권에 밀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북은 기계가 3개사로 가장 많고 식품, 유화, 비금속, 전자, 서비스 업종의 기업이 각각 1개사로 나타났다.

<표 3-46> 업종별 이전대상지역(수도권→지방)

(단위: 개사, %)

| 구분  |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식품  |             |             |            |             |             | 2<br>(66.7)  | 1<br>(33.3)  |             |             |            |             |             | 3<br>(100.0)   |
| 섬유  |             |             |            | 1<br>(25.0) |             | 1<br>(25.0)  | 1<br>(25.0)  |             |             |            | 1<br>(25.0) |             | 4<br>(100.0)   |
| 목재  |             |             |            |             |             |              | 3<br>(100.0) |             |             |            |             |             | 3<br>(100.0)   |
| 유화  |             | 1<br>(5.3)  |            | 2<br>(10.5) | 1<br>(5.3)  | 6<br>(31.6)  | 7<br>(36.8)  | 1<br>(5.3)  |             |            | 1<br>(5.3)  |             | 19<br>(100.0)  |
| 비금속 |             |             |            |             |             | 1<br>(33.3)  | 1<br>(33.3)  | 1<br>(33.3) |             |            |             |             | 3<br>(100.0)   |
| 철강  |             |             |            |             |             |              | 1<br>(100.0) |             |             |            |             |             | 1<br>(100.0)   |
| 기계  |             | 4<br>(14.8) | 2<br>(7.4) |             | 1<br>(3.7)  | 4<br>(14.8)  | 11<br>(40.7) | 3<br>(11.1) |             |            | 2<br>(7.4)  |             | 27<br>(100.0)  |
| 전자  |             | 4<br>(15.4) | 2<br>(7.7) |             | 2<br>(7.7)  | 5<br>(19.2)  | 9<br>(34.6)  | 1<br>(3.8)  | 1<br>(3.8)  | 2<br>(7.7) |             |             | 26<br>(100.0)  |
| 운송  |             |             |            |             |             | 3<br>(30.0)  | 6<br>(60.0)  |             |             |            | 1<br>(10.0) |             | 10<br>(100.0)  |
| 기타  |             |             |            |             | 1<br>(33.3) | 1<br>(33.3)  |              |             | 1<br>(33.3) |            |             |             | 3<br>(100.0)   |
| 서비스 | 1<br>(25.0) |             |            |             |             |              |              | 1<br>(25.0) |             |            | 1<br>(25.0) | 1<br>(25.0) | 4<br>(100.0)   |
| 계   | 1<br>(1.0)  | 9<br>(8.7)  | 4<br>(3.9) | 3<br>(2.9)  | 5<br>(4.9)  | 21<br>(20.4) | 41<br>(39.8) | 8<br>(7.8)  | 2<br>(1.9)  | 2<br>(1.9) | 6<br>(5.8)  | 1<br>(1.0)  | 103<br>(100.0)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 3) 이전경로와 이전기능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로를 보면 서울에서의 이전은 총 10개사로 지역별로는 광주, 대전, 충북지역으로, 인천에서는 28개사로 충남 13개사, 전북 5개사, 경남 3개사 등이며, 경기도는 총 28개사로 이 중 충남이 28개로 가장 많고, 충북 18개사, 광주 5개사, 전북 3개사 등으로 나타나 전북지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이 소재한 지역이 특히 인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경기도 지역으로 파악된다.

<표 3-47> 기업이전 경로(수도권→지방)

(단위: 개사, %)

| 이전지역 | 현 소재지 |         |    |         |    |         |
|------|-------|---------|----|---------|----|---------|
|      | 서울    |         | 인천 |         | 경기 |         |
| 부산   | 1     | (10.0)  |    | -       |    | -       |
| 광주   | 2     | (20.0)  | 2  | (7.1)   | 5  | (7.7)   |
| 대전   | 2     | (20.0)  |    | -       | 2  | (3.1)   |
| 울산   |       | -       | 1  | (3.6)   | 2  | (3.1)   |
| 강원   |       | -       | 2  | (7.1)   | 3  | (4.6)   |
| 충북   | 2     | (20.0)  | 1  | (3.6)   | 18 | (27.7)  |
| 충남   | 1     | (10.0)  | 13 | (46.4)  | 27 | (41.5)  |
| 전북   |       | -       | 5  | (17.9)  | 3  | (4.6)   |
| 전남   |       | -       | 1  | (3.6)   | 1  | (1.5)   |
| 경북   |       | -       |    | -       | 2  | (3.1)   |
| 경남   | 1     | (10.0)  | 3  | (10.7)  | 2  | (3.1)   |
| 제주   | 1     | (10.0)  |    | -       |    | -       |
| 계    | 10    | (100.0) | 28 | (100.0) | 65 | (100.0)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기업의 기능을 회사전체, 생산시설, 연구소, 물류시설, 기타 기능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기업이 어느 기능 부분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면 <표 3-48>과 같다.

이전 지역별로는 강원·충청권은 회사 전체를 이전하는 경우가 48.8% (40건), 생산시설 이전이 32.9%(27건)로 회사기능 전부를 이전한다는 기업이 많았다.

반면 호남(제주 1건 포함)이나 영남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생산, 물류시설 등 일부 기능만을 이전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동 지역에는 생산·물류거점

확보 차원에서 이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회사전체 이전이 1건, 생산시설 이전 6건, 물류시설 이전 1건으로 나타났으며, 본사나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었다.

<표 3-48> 지방이전 기업의 이전지역별 이전기능

(단위: 개사, %)

| 구 분   | 회사전체 이전 |        | 본사이전    |         | 생산시설 이전 |        | 연구소 이전 |       | 물류시설 이전 |        | 기타기능 이전 |       | 계     |         |         |
|-------|---------|--------|---------|---------|---------|--------|--------|-------|---------|--------|---------|-------|-------|---------|---------|
|       | 개사      | (%)    | 개사      | (%)     | 개사      | (%)    | 개사     | (%)   | 개사      | (%)    | 개사      | (%)   | 개사    | (%)     |         |
| 이전 지역 | 부 산     | -      | 1       | (100.0) | -       | -      | -      | -     | -       | -      | -       | -     | 1     | (100.0) |         |
|       | 광 주     | 3      | (30.0)  | -       | -       | 5      | (50.0) | -     | -       | 2      | (20.0)  | -     | -     | 10      | (100.0) |
|       | 대 전     | 2      | (33.3)  | -       | -       | 2      | (33.3) | 2     | (33.3)  | -      | -       | -     | -     | 6       | (100.0) |
|       | 울 산     | -      | -       | -       | -       | 3      | (75.0) | -     | -       | 1      | (25.0)  | -     | -     | 4       | (100.0) |
|       | 강 원     | 4      | (80.0)  | -       | -       | 1      | (20.0) | -     | -       | -      | -       | -     | -     | 5       | (100.0) |
|       | 충 북     | 14     | (60.9)  | 1       | (4.3)   | 6      | (26.1) | 1     | (4.3)   | 1      | (4.3)   | -     | -     | 23      | (100.0) |
|       | 충 남     | 20     | (41.7)  | 1       | (2.1)   | 18     | (37.5) | 3     | (6.3)   | 4      | (8.3)   | 2     | (4.2) | 48      | (100.0) |
|       | 전 북     | 1      | (12.5)  | -       | -       | 6      | (75.0) | -     | -       | 1      | (12.5)  | -     | -     | 8       | (100.0) |
|       | 전 남     | 2      | (100.0) | -       | -       | -      | -      | -     | -       | -      | -       | -     | -     | 2       | (100.0) |
|       | 경 북     | 1      | (50.0)  | -       | -       | 1      | (50.0) | -     | -       | -      | -       | -     | -     | 2       | (100.0) |
|       | 경 남     | 1      | (10.0)  | -       | -       | 4      | (40.0) | 1     | (10.0)  | 4      | (40.0)  | -     | -     | 10      | (100.0) |
|       | 제 주     | 1      | (10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0) |
| 계     | 49      | (40.8) | 3       | (2.5)   | 46      | (38.3) | 7      | (5.8) | 13      | (10.8) | 2       | (1.7) | 120   | (100.0) |         |

주) 복수응답 처리 결과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 4) 입지수요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의 입지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업체(355개사)의 부지수요 면적은 약 200만평으로 기업 당 평균적으로 5,6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요 부지면적은 이전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257개사)의 부지수요는 약 90만평으로 기업 당 3,5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98개사)의 부지수요는 약 110만평 규모로 기업

당 11,20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전기업 수는 절반에 불과하나 입지수요는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는 8개 업체수로 전체면적 45,500평으로 기업 당 5,688평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높은 공장용지 가격과 입지가능한 공간의 부족, 일정 규모 이상 공장의 신·증설 제한 등으로 대규모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부지가격이 저렴하고 부지확보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9> 이전지역별 입지수요

(단위: 개사, 평, 평/개사)

| 이 전 지 역 |     | 업체수(A)(개) |           | 필요부지(B)(평)  |           | (B/A)(평/개사) |
|---------|-----|-----------|-----------|-------------|-----------|-------------|
| 수도권     | 서울  | 22        | (11)      | 12,210      | (9,050)   | 555         |
|         | 인천  | 33        | (20)      | 73,977      | (32,100)  | 2,242       |
|         | 경기  | 202       | (139)     | 816,864     | (461,826) | 4,044       |
|         | 소 계 | 257       | (170)     | 903,051     | (502,976) | 3,514       |
| 지 방     | 부산  | 1         | (1)       | 200         | (200)     | 200         |
|         | 광주  | 8         | (6)       | 112,250     | (108,500) | 14,031      |
|         | 대전  | 4         | (2)       | 38,500      | (7,500)   | 9,625       |
|         | 울산  | 3         | (2)       | 104,000     | (101,000) | 34,667      |
|         | 강원  | 5         | (5)       | 166,000     | (166,000) | 33,200      |
|         | 충북  | 20        | (12)      | 229,100     | (179,600) | 11,455      |
|         | 충남  | 41        | (22)      | 379,800     | (186,900) | 9,263       |
|         | 전북  | 8         | (4)       | 45,500      | (28,000)  | 5,688       |
|         | 전남  | 2         | (2)       | 3,000       | (3,000)   | 1,500       |
|         | 경북  | 2         | (1)       | 11,500      | (1,500)   | 5,750       |
|         | 경남  | 3         | (2)       | 6,000       | (5,000)   | 2,000       |
|         | 제주  | 1         | (1)       | 1,000       | (1,000)   | 1,000       |
|         | 소 계 | 98        | (60)      | 1,096,850   | (788,200) | 11,192      |
| 계       | 355 | (230)     | 1,999,901 | (1,291,176) | 5,634     |             |

주 1) 이전계획이 있는 기업 중 구체적인 필요부지 면적을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 )는 조사시점 현재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의 숫자와 필요부지 면적임.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 5) 신·증설 대상지역

전체 대상기업(3,073개사) 가운데 향후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의사를 보인 기업은 293개로 이전의사를 표현한 기업(380개사)수보다 적게 나타났다.

지방의 권역별로는 충청권이 28개사(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영남권 25개사(8.5%), 호남권 16개사(5.5%), 강원 3개사(1.0%) 등으로 조사되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지역 등 기존 사업장과 가까운 장소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 중 충청권을 대상지역으로 희망하는 기업도 수도권과 가까운 아산, 당진, 천안 등에 밀집되어 있었다.

전북지역으로 신·증설을 희망하는 기업은 6개사로 경기지역에서 3개사, 인천 2개사, 서울 1개사로 나타났다.

<표 3-50> 현 소재지별 신증설 대상지역

(단위: 개사, %)

| 신증설 지역 |    | 현 소재지 |         |    |         |     |         |     |         |
|--------|----|-------|---------|----|---------|-----|---------|-----|---------|
|        |    | 서울    |         | 인천 |         | 경기  |         | 계   |         |
| 수도권    | 서울 | 17    | (40.5)  | 1  | (3.7)   | 2   | (1.3)   | 20  | (9.0)   |
|        | 인천 | 4     | (9.5)   | 18 | (66.7)  | -   | -       | 22  | (10.0)  |
|        | 경기 | 21    | (50.0)  | 8  | (29.6)  | 150 | (98.7)  | 179 | (81.0)  |
|        | 계  | 42    | (100.0) | 27 | (100.0) | 152 | (100.0) | 221 | (100.0) |
| 지방     | 부산 | 6     | (27.3)  | -  | -       | 1   | (2.7)   | 7   | (9.7)   |
|        | 대구 | -     | -       | 1  | (7.7)   | -   | -       | 1   | (1.4)   |
|        | 광주 | 1     | (4.5)   | 1  | (7.7)   | 5   | (13.5)  | 7   | (9.7)   |
|        | 대전 | 3     | (13.6)  | -  | -       | 1   | (2.7)   | 4   | (5.6)   |
|        | 울산 | 3     | (13.6)  | -  | -       | 4   | (10.8)  | 7   | (9.7)   |
|        | 강원 | 1     | (4.5)   | 1  | (7.7)   | 1   | (2.7)   | 3   | (4.2)   |
|        | 충북 | -     | -       | 2  | (15.4)  | 3   | (8.1)   | 5   | (6.9)   |
|        | 충남 | 3     | (13.6)  | 3  | (23.1)  | 13  | (35.1)  | 19  | (26.4)  |
|        | 전북 | 1     | (4.5)   | 2  | (15.4)  | 3   | (8.1)   | 6   | (8.3)   |
|        | 전남 | 2     | (9.1)   | -  | -       | 1   | (2.7)   | 3   | (4.2)   |
|        | 경북 | 1     | (4.5)   | -  | -       | 3   | (8.1)   | 4   | (5.6)   |
|        | 경남 | 1     | (4.5)   | 3  | (23.1)  | 2   | (5.4)   | 6   | (8.3)   |
|        | 계  | 22    | (100.0) | 13 | (100.0) | 37  | (100.0) | 72  | (100.0)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 제 5 절 설문조사 분석

### 1. 조사의 목적과 개요

본 설문조사 실시의 목적은 전북지역으로 이전해 온 기업체와 신규 기업이나 공장을 설립한 업체를 대상으로 본사 및 공장의 이전 동기와 전북의 입지 만족도를 살펴보고 전라북도의 투자인센티브의 대한 질문과 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는 최근 3년 내 전북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해 온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의 수가 부족한 탓에 전북지역 내에서 신규 설립이나 증설, 타 업체 양수로 인한 설립 등의 이유로 3년 내 설립·등록한 업체 및 공장을 중심으로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조사는 2004년 11월 29일에서 2004년 12월 1일까지 3일간 전북에 소재한 80여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 CEO 및 고위관리자를 상대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패키지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였다.

### 2.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1) 표본의 특성

설문대상이 되는 기업의 최초 설립연도는 평균 1994년으로 10년 정도이고 중간값과 최빈값은 1997년으로서 7년 전에 설립한 기업들이 많았다. 설문대상 기업 수는 총 81개로 각 문항마다 무응답한 항목이 많아 그대로 시스템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설립연도가 3년 이내와 10년 이내 그리고 10년 초과로 구분하여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음으로 후에 설립연도에 따른 입지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표 3-51> 회사 최초 설립연도

(단위: 개소, %)

| 설립연도 |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유효   | 3년 이내  | 23 | 28.4  | 28.8  | 28.8  |
|      | 3년~5년  | 9  | 11.1  | 11.3  | 40.0  |
|      | 6년~10년 | 19 | 23.5  | 23.8  | 63.8  |
|      | 10년 초과 | 29 | 35.8  | 36.3  | 100.0 |
|      | 소 계    | 80 | 98.8  | 100.0 |       |
| 무응답  |        | 1  | 1.2   |       |       |
| 합 계  |        | 81 | 100.0 |       |       |

대상 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액과 직원 수를 동시에 살펴보면, 2003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100억 사이의 기업이 유효 표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직원은 5명에서 19명이 38.3%, 20명에서 49명이 35.8%를 보여 전체의 74% 정도가 5명에서 50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3-52> 연간 매출액과 직원 수

(단위: 개소)

|      |           | 연간 매출액 |          |            |         | 합계 |
|------|-----------|--------|----------|------------|---------|----|
|      |           | 1억 미만  | 1억~10억미만 | 10억~100억미만 | 100억 이상 |    |
| 직원 수 | 5명 미만     | 4      | 3        | 0          | 0       | 7  |
|      | 5명~19명    | 4      | 12       | 11         | 1       | 28 |
|      | 20명~49명   | 0      | 3        | 22         | 2       | 27 |
|      | 50명~99명   | 0      | 0        | 3          | 4       | 7  |
|      | 100명~299명 | 0      | 0        | 0          | 3       | 3  |
|      | 300명 이상   | 0      | 0        | 0          | 1       | 1  |
| 합 계  |           | 8      | 18       | 36         | 11      | 73 |

설문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과 금속/조립금속 산업이 각각 동일하게 20.8%를 차지하였고, 화합물/화학제품 제조업과 전기/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문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최근 전북에 이전한 기업과 신설업체들이 군산에 50%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3-53> 표본 기업 업종

(단위: 개소, %)

| 업종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업종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
| 음식료품       | 3  | 3.7  | 6.3   | 전기/전자/통신장비  | 4  | 4.9  | 8.3   |
| 목재/종이/나무 등 | 1  | 1.2  | 2.1   | 자동차/트레일러    | 10 | 12.3 | 20.8  |
| 코크스/석유정제품  | 2  | 2.5  | 4.2   | 기타 제조업      | 5  | 6.2  | 10.4  |
| 화학물/화학제품   | 5  | 6.2  | 10.4  | 전기/가스/증기/수도 | 2  | 2.5  | 4.2   |
| 금속/조립금속    | 10 | 12.3 | 20.8  | 정보처리/SW     | 2  | 2.5  | 4.2   |
| 기계/장비      | 1  | 1.2  | 2.1   | 기타 서비스업     | 2  | 2.5  | 4.2   |
| 컴퓨터/사무용기기  | 1  | 1.2  | 2.1   |             |    |      |       |
| 계          | 48 | 59.3 | 100   | 무응답         | 33 | 40.7 |       |

대상 기업의 자산규모는 1억 이상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액 규모와 비슷하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부지소유 형태로는 자가 소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54(67.5%)개이지만, 자산규모와 같이 응답한 유효 빈도가 47개 기업체로 65%에 해당한다. 기업들이 군산 국가·지방산업단지, 전주 과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에서 조업 중이며 직접소유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4> 표본의 자산규모와 부지소유 형태

(단위: 개소)

|            |    | 자산규모  |          |            |         | 합계 |
|------------|----|-------|----------|------------|---------|----|
|            |    | 1억 미만 | 1억~10억미만 | 10억~100억미만 | 100억 이상 |    |
| 부지소유<br>형태 | 자가 | 2     | 13       | 19         | 13      | 47 |
|            | 임대 | 9     | 12       | 4          | 0       | 25 |
| 합계         |    | 11    | 25       | 23         | 13      | 72 |

표본기업의 생산품의 형태로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미미(6.8%)하였고,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60.8%로 가장 많았으며, 완성품은 32.4%에 해당하였다.

<표 3-55> 표본 기업의 생산품 형태

(단위: 개소, %)

| 생산품 형태 |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유      | 원재료 | 5  | 6.2   | 6.8   | 6.8   |
|        | 중간재 | 45 | 55.6  | 60.8  | 67.6  |
| 효      | 완성품 | 24 | 29.6  | 32.4  | 100.0 |
|        | 소 계 | 74 | 91.4  | 100.0 |       |
| 무응답    |     | 7  | 8.6   |       |       |
| 합 계    |     | 81 | 100.0 |       |       |

표본기업의 협력업체는 3개 이상 5개 이하를 가진 기업이 37%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10개를 초과하는 기업이 26%가까이 되어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주요 협력업체의 위치는 같은 공업지역 내(19%)보다는 전라북도 내(37%)에 거래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았다. 또한, 전라북도 외 지역이 16%로 나타났으며, 협력업체와의 공간상의 범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56> 표본기업의 협력업체 수와 위치

(단위: 개소)

|            |           | 협력업체 수 |       |        |        | 합계 |
|------------|-----------|--------|-------|--------|--------|----|
|            |           | 2개 이하  | 3개~5개 | 6개~10개 | 10개 초과 |    |
| 협력업체<br>위치 | 같은 공업지역 내 | 3      | 7     | 2      | 1      | 13 |
|            | 같은 시군 내   | 2      | 5     | 2      | 0      | 9  |
|            | 인접 시군 내   | 2      | 3     | 1      | 0      | 6  |
|            | 전라북도 내    | 7      | 6     | 6      | 7      | 26 |
|            | 전라북도 외 지역 | 0      | 3     | 0      | 8      | 11 |
|            | 기타        | 0      | 2     | 1      | 2      | 5  |
| 합 계        |           | 14     | 26    | 12     | 18     | 70 |

## 2) 이전(입주)동기

전북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입주한 기업들의 시기는 표본을 최근 4, 5년 내에서 추출한 결과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과 3년 이상 된 기업이 동일하게 각각 35.7%

를 차지하고 있었고, 1년에서 2년 된 기업이 18.6% 그리고 1년 미만의 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7> 기업 이전(입주)시기

(단위: 개소, %)

| 이전시기   |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유<br>효 | 1년 미만    | 7  | 8.6   | 10.0  | 10.0  |
|        | 1년~2년 미만 | 13 | 16.0  | 18.6  | 28.6  |
|        | 2년~3년 미만 | 25 | 30.9  | 35.7  | 64.3  |
|        | 3년 이상    | 25 | 30.9  | 35.7  | 100.0 |
|        | 소 계      | 70 | 86.4  | 100.0 |       |
| 무응답    |          | 11 | 13.6  |       |       |
| 합 계    |          | 81 | 100.0 |       |       |

전라북도 입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경로는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다는 비율이 28.8%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비율도 각각 20.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입지에 관련된 정보는 투자 마케팅 전략을 펼 때, 홍보 매체나 수단으로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

<표 3-58> 입지정보획득경로

(단위: 개소, %)

| 입지정보 원천 |         | 빈도 | 유효백분율 |
|---------|---------|----|-------|
| 유<br>효  | 지방자치단체  | 15 | 20.5  |
|         | 투자지원센터  | 15 | 20.5  |
|         | 금융기관    | 4  | 5.5   |
|         | 공급/협력업체 | 10 | 13.7  |
|         | 자체조사분석  | 21 | 28.8  |
|         | 외부컨설팅회사 | 3  | 4.1   |
|         | 기타      | 5  | 6.8   |
|         | 계       | 73 | 100.0 |

<표 3-59> 소요된 기간

(단위: 개소, %)

| 이전 소요기간 |           | 빈도 | 유효백분율 |
|---------|-----------|----|-------|
| 유<br>효  | 1개월~3개월이내 | 10 | 14.7  |
|         | 3개월~6개월이내 | 27 | 39.7  |
|         | 6개월~1년이내  | 24 | 35.3  |
|         | 1년~2년이내   | 5  | 7.4   |
|         | 2년~3년이내   | 1  | 1.5   |
|         | 3년 이상     | 1  | 1.5   |
|         | 계         | 68 | 100.0 |

다음으로 전북으로 이전이나 입주하면서 제반 이전절차에 소요된 공장 및 건물 공사기간을 제외한 총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도 35.3%의 비율로 상당하였다. 경상남도의 투자유치 지원서비스 사례에서 국내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기업까지도 이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49일 내로 목표를 잡고 실현시키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전북으로 이전하거나 입주를 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순위별 복수응답을 허용한 결과로 1순위는 저렴한 용지(45.1%), 2순위와 3순위는 교통접근성(14.5%)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그 밖에도 지역특성이나 주변지역 여건, 집적지역에 대한 이전동기들이 2순위와 비슷하게 나왔으며, 반면에 고객 및 시장 확보, 전문인력 확보, 저렴한 노무비, 연구기관과 교류, 자원 확보 등은 전북으로의 이전동기로 매우 미약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유인정책 및 제반혜택도 그다지 이전(입주)동기 요인으로 매력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표 3-60> 이전(입주)동기

(단위: 개수,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유<br>효 | 저렴한 용지   | 32    | (45.1) | 8     | (12.9) | 8     | (12.9) |
|        | 지역특성     | 9     | (12.7) | 8     | (12.9) | 8     | (12.9) |
|        | 교통 접근성   | 6     | (8.5)  | 9     | (14.5) | 9     | (14.5) |
|        | 고객/시장 확보 | 4     | (5.6)  | 2     | (3.2)  | 2     | (3.2)  |
|        | 주변지역 여건  | 3     | (4.2)  | 8     | (12.9) | 8     | (12.9) |
|        | 집적지역     | 4     | (5.6)  | 8     | (12.9) | 8     | (12.9) |
|        | 전문인력 확보  |       |        | 2     | (3.2)  | 2     | (3.2)  |
|        | 저렴한 노무비  | 2     | (2.8)  | 2     | (3.2)  | 2     | (3.2)  |
|        | 기존업체 인수  | 4     | (5.6)  | 2     | (3.2)  | 2     | (3.2)  |
|        | 연구기관과 교류 | 1     | (1.4)  |       |        |       |        |
|        | 전북의 유인정책 | 2     | (2.8)  | 4     | (6.5)  | 4     | (6.5)  |
|        | 자원 확보    | 3     | (4.2)  | 3     | (4.8)  | 3     | (4.8)  |
|        | 노사관계 원활  |       |        | 2     | (3.2)  | 2     | (3.2)  |
|        | 전북과 교류관계 |       |        | 3     | (4.8)  | 3     | (4.8)  |
|        | 기타       | 1     | (1.4)  | 1     | (1.6)  | 1     | (1.6)  |
| 합 계    | 71       | (100) | 62     | (100) | 62     | (100) |        |

### 3) 입지여건 만족도

전북으로 이전이 끝났거나 입주가 끝난 시점인 현재 전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제반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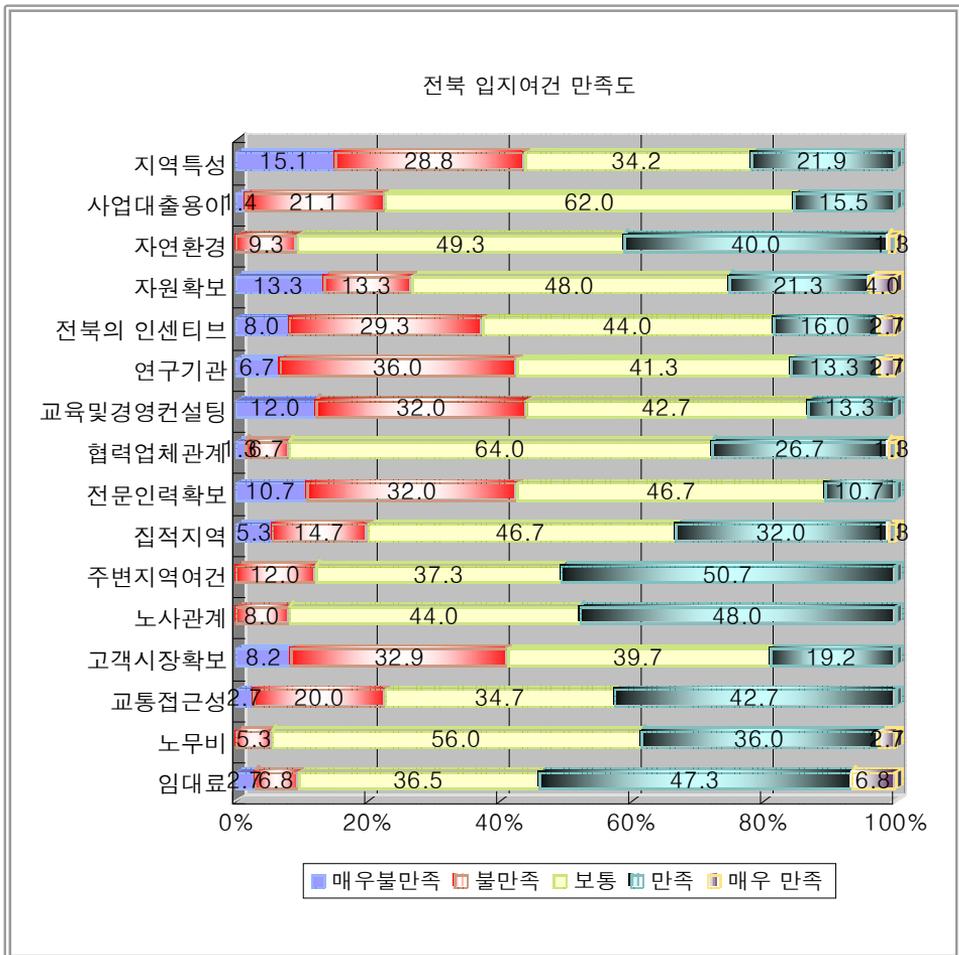
<표 3-61> 전북에 대한 기업유치 여건 만족도

(단위: 개소, %)

|            | 유 호   |      |      |      |       | 합계    | 무응답 |
|------------|-------|------|------|------|-------|-------|-----|
|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     |
| 저렴한 임대료    | 2     | 5    | 27   | 35   | 5     | 74    | 7   |
|            | 2.7   | 6.8  | 36.5 | 47.3 | 6.8   | 100.0 |     |
| 저렴한 노무비    | -     | 4    | 42   | 27   | 2     | 75    | 6   |
|            |       | 5.3  | 56.0 | 36.0 | 2.7   | 100.0 |     |
| 교통접근성 용이   | 2     | 15   | 26   | 32   | -     | 75    | 6   |
|            | 2.7   | 20.0 | 34.7 | 42.7 |       | 100.0 |     |
| 고객시장 확보용이  | 6     | 24   | 29   | 14   | -     | 73    | 8   |
|            | 8.2   | 32.9 | 39.7 | 19.2 |       | 100.0 |     |
| 노사관계 원활    | -     | 6    | 33   | 36   |       | 75    | 6   |
|            |       | 8.0  | 44.0 | 48.0 |       | 100.0 |     |
| 주변지역여건 양호  | -     | 9    | 28   | 38   | -     | 75    | 6   |
|            |       | 12.0 | 37.3 | 50.7 |       | 100.0 |     |
| 집적지역 형성    | 4     | 11   | 35   | 24   | 1     | 75    | 6   |
|            | 5.3   | 14.7 | 46.7 | 32.0 | 1.3   | 100.0 |     |
| 전문인력 확보용이  | 8     | 24   | 35   | 8    | -     | 75    | 6   |
|            | 10.7  | 32.0 | 46.7 | 10.7 |       | 100.0 |     |
| 협력업체 관계원활  | 1     | 5    | 48   | 20   | 1     | 75    | 6   |
|            | 1.3   | 6.7  | 64.0 | 26.7 | 1.3   | 100.0 |     |
| 교육 및 경영컨설팅 | 9     | 24   | 32   | 10   | -     | 75    | 6   |
|            | 12.0  | 32.0 | 42.7 | 13.3 |       | 100.0 |     |
| 연구기관 협력    | 5     | 27   | 31   | 10   | 2     | 75    | 6   |
|            | 6.7   | 36.0 | 41.3 | 13.3 | 2.7   | 100.0 |     |
| 전북의 인센티브   | 6     | 22   | 33   | 12   | 2     | 75    | 6   |
|            | 8.0   | 29.3 | 44.0 | 16.0 | 2.7   | 100.0 |     |
| 자원 확보용이    | 10    | 10   | 36   | 16   | 3     | 75    | 6   |
|            | 13.3  | 13.3 | 48.0 | 21.3 | 4.0   | 100.0 |     |
| 자연환경 양호    | -     | 7    | 37   | 30   | 1     | 75    | 6   |
|            |       | 9.3  | 49.3 | 40.0 | 1.3   | 100.0 |     |
| 사업대출용이     | 1     | 15   | 44   | 11   | -     | 71    | 10  |
|            | 1.4   | 21.1 | 62.0 | 15.5 |       | 100.0 |     |
| 지역특성       | 11    | 21   | 25   | 16   | -     | 73    | 8   |
|            | 15.1  | 28.8 | 34.2 | 21.9 |       | 100.0 |     |

만족도의 퍼센트는 설문응답자 내에서의 유효 백분율로서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

족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은 저렴한 임대료(54.1%)였고, 주변지역 여건 양호(50.7%), 노사관계 원활(48.0%), 교통접근성(42.7%) 등이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전라북도만의 입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렴한 노무비, 좋은 자연환경, 집적지역, 협력업체와 관계 등의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반면에 대체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 및 경영컨설팅 분야(44.0%)의 여건에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다. 다음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지명도(43.9%), 연구기관과의 교류 관계(42.7%)와 전문인력 확보(42.7%) 측면에서 동일한 불만 수준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고객 및 시장 확보(40.9%), 전라북도의 유인정책 및 제반 혜택(37.3%) 등의 순으로 불만요인이 조사되었다.



<그림 3-17> 전북 입지여건 만족도

전북으로 이전해 온 이후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의견은 보통의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 악화되었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고, 조금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17.6%, 조금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11.8%, 매우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4.4%를 보이면서 의견을 종합해본다면, 대체로 개선되었다는 쪽으로 약간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표 3-62> 경영성과

(단위: 개소, %)

| 사업 성과  |       | 빈도 | 백분율   | 유효백분율 | 누적백분율 |
|--------|-------|----|-------|-------|-------|
| 유<br>효 | 악화    | 8  | 9.9   | 11.8  | 11.8  |
|        | 보통    | 45 | 55.6  | 66.2  | 77.9  |
|        | 개선    | 12 | 14.8  | 17.6  | 95.6  |
|        | 매우 개선 | 3  | 3.7   | 4.4   | 100.0 |
|        | 소 계   | 68 | 84.0  | 100.0 |       |
| 무응답    |       | 13 | 16.0  |       |       |
| 합 계    |       | 81 | 100.0 |       |       |

사업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은 13명으로 소수에 불과하여 표본의 크기로 문제성이 제기되지만, 특정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개념에서 본다면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의견과 생산비나 판매비가 감소하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분석이 가능하겠다.

<표 3-63> 사업개선 측면

(단위: 개소)

|          |       |    | 매출증가 | 시장 점유율<br>증가 | 시장 성장률<br>증가 | 협력업체와<br>관계 | 생산비(판매<br>비)감소 | 합계 |
|----------|-------|----|------|--------------|--------------|-------------|----------------|----|
| 사업<br>성과 | 개선    | 12 | 6    | 2            | 2            | 2           | 4              | 16 |
|          | 매우 개선 | 1  | 1    | 0            | 0            | 0           | 0              | 1  |
| 합 계      |       |    | 7    | 2            | 2            | 2           | 4              | 17 |

사업성과와는 관계없이 향후 회사의 투자전망을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현재상태를 유지한다는 의견과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반반씩 차지하였다. 사업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에 비해 향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2배 가까이 많다는 것은 현재시점 보다는 미래에 설문대상 기업들의 경영환경의 개선이나 투자 전망이 밝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64> 투자전망

(단위: 개소, %)

| 투자 전망 |         | 빈도 | 유효백분율 |
|-------|---------|----|-------|
| 유     | 현재상태 유지 | 29 | 50.9  |
|       | 투자규모 확대 | 26 | 45.6  |
| 효     | 투자규모 축소 | 2  | 3.5   |
|       | 계       | 57 | 100.0 |

<표 3-65> 이전 의사

(단위: 개소, %)

| 타 시도 이전 의사 |      | 빈도 | 유효백분율 |
|------------|------|----|-------|
| 유          | 예    | 7  | 9.7   |
|            | 아니오  | 50 | 69.4  |
| 효          | 모르겠음 | 15 | 20.8  |
|            | 계    | 72 | 100.0 |

투자 전망과 연계하여 현 시점에서 앞으로 전북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할 의향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70%정도가 ‘아니오’라고 답변하였고 ‘예’라고 답변한 비율은 10%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한 해석도 투자전망의 의향을 물어보는 내용과 비슷하게 현재 입주한 지역에서 미래 전망이 비교적 밝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다고 판단된다.

이전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수는 매우 적지만 그 중에서 ‘거래처 및 고객 확보가 어려워져서’라고 생각한 비율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전북의 여건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서 고객의 확보에 불만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다고 보인다.

<표 3-66> 이전 이유

(단위: 개소)

|          |   | 거래처/고객 확보 | 비싼 임대료 | 인력확보 | 합계 |
|----------|---|-----------|--------|------|----|
| 이전 의사 있음 | 7 | 5         | 2      | 1    | 8  |

#### 4) 법적규제 및 환경규제

설문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의 사업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규제는 설문조사자 중 53.6%가 환경규제라고 답하고 있으며 환경규제에 따른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63.6%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7>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정도와 원인

(단위: 개소, %)

| 환경 규제  |          | 빈도 | 유효백분율 | 원인     |           | 빈도 | 유효백분율 |
|--------|----------|----|-------|--------|-----------|----|-------|
| 유<br>효 | 많이 느낀다   | 10 | 13.0  | 유<br>효 | 높은 배출기준   | 5  | 6.9   |
|        | 다소 느낀다   | 39 | 50.6  |        | 까다로운 행정절차 | 41 | 56.9  |
|        | 전혀 못 느낀다 | 12 | 15.6  |        | 지나친 지도단속  | 14 | 19.4  |
|        | 모르겠다     | 16 | 20.8  |        | 기타        | 12 | 16.7  |
|        | 계        | 77 | 100.0 |        | 계         | 72 | 100.0 |

조사대상 기업들은 환경규제 중에서 ‘폐기물 분야(65.8%)’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질분야(11.0%)’, 소음·진동분야(8.2%)’, ‘대기질분야(6.8%)’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이유가 ‘까다로운 행정절차(56.9%)’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지나친 지도단속(19.4%)’, ‘높은 배출기준(6.9%)’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중 폐기물분야와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8> 경영상 애로사항이 되는 법적규제와 환경규제 분야

(단위: 개소, %)

| 법적규제   |       | 빈도 | 유효백분율 | 환경 규제 분야 |        | 빈도 | 유효백분율 |
|--------|-------|----|-------|----------|--------|----|-------|
| 유<br>효 | 설립/증설 | 10 | 14.5  | 유<br>효   | 수질분야   | 8  | 11.0  |
|        | 고용    | 4  | 5.8   |          | 대기질분야  | 5  | 6.8   |
|        | 안전    | 9  | 13.0  |          | 폐기물분야  | 48 | 65.8  |
|        | 환경    | 37 | 53.6  |          | 소음진동분야 | 6  | 8.2   |
|        | 수출입   | 2  | 2.9   |          | 기타     | 6  | 8.2   |
|        | 검사    | 6  | 8.7   |          | 계      | 73 | 100.0 |
|        | 기타    | 1  | 1.4   |          |        |    |       |
|        | 계     | 69 | 100.0 |          |        |    |       |

## 5) 개선사항

전라북도로 이전이나 입주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제도를 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한 문항에서 1순위로는 조세감면제도(34.7%)가 가장 높게 나왔고, 공장부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제도(18.7%), 인턴제도를 포함한 인력지원제도(9.3%)등과 2순위로 각종 보조금(21.6%), 조세감면, 행정지원서비스, 기술 및 경영컨설팅이 각각 동일하게 15.7%를 보이고 있다. 지원받은 적이 없는 기업도 12개 업체나 되었다. 반면에 현금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다는 기업은 극히 일부분(2.7%)에 지나지 않아 이에 대한 조건이나 홍보 측면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개선해야 할 전북의 투자유치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1순위로 조세감면제도(36.8%)와 공장부지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21.1%) 또한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고 그 밖에 금융기관(대출)의 지원(13.2%)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2순위로는 인력지원, 금융기관(대출)지원, 각종 보조금, 조세감면시책, 행정지원서비스 등 순으로 거의 비슷하게 15%수준에서 거론되었다.

<표 3-69> 지원제도

|        |               | 1순위 |        | 2순위 |        |
|--------|---------------|-----|--------|-----|--------|
| 유<br>효 | 조세감면시책        | 26  | (34.7) | 8   | (15.7) |
|        | 공장부지 무상/저가 제공 | 14  | (18.7) | 1   | (2)    |
|        | 행정서비스 지원      | 3   | (4)    | 8   | (15.7) |
|        | 각종 보조금        | 3   | (4)    | 11  | (21.6) |
|        | 금융(대출)지원      | 5   | (6.7)  | 4   | (7.8)  |
|        | 기술/경영 컨설팅     | 3   | (4)    | 8   | (15.7) |
|        | 인력(인턴) 지원     | 7   | (9.3)  | 6   | (11.8) |
|        | 모두 도움 안 된다    |     |        | 1   | (2)    |
|        | 현금지원          | 2   | (2.7)  | 2   | (3.9)  |
|        | 지원받은 적 없다     | 12  | (16)   | 2   | (3.9)  |
|        | 계             | 75  | (100)  | 51  | (100)  |

<표 3-70> 개선제도

(단위: 개소, %)

|        |               | 1순위 |        | 2순위 |        |
|--------|---------------|-----|--------|-----|--------|
| 유<br>효 | 조세감면시책        | 28  | (36.8) | 11  | (14.5) |
|        | 공장부지 무상/저가 제공 | 16  | (21.1) | 6   | (7.9)  |
|        | 행정서비스 지원      | 7   | (9.2)  | 10  | (13.2) |
|        | 각종 보조금        | 3   | (3.9)  | 11  | (14.5) |
|        | 금융(대출)지원      | 10  | (13.2) | 12  | (15.8) |
|        | 법률/경영 컨설팅     | 2   | (2.6)  | 4   | (5.3)  |
|        | 인력(인턴) 지원     | 5   | (6.6)  | 13  | (17.1) |
|        | 기술/교육 훈련      | 5   | (6.6)  | 5   | (6.6)  |
|        | 정보/연구개발 지원    |     |        | 2   | (2.6)  |
|        | 현금지원          |     |        | 2   | (2.6)  |
|        | 계             | 76  | (100)  | 76  | (100)  |

## 6) 행정지원제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평가

행정지원제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활용하였다. 계층적 분석방법은 의사결정문제를 계층구조로 정리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 Saaty에 의해 1977년에 개발되었다. Saaty(1987)는 AHP를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기반을 두어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선호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계층구조를 사용하는 다기준의사결정모델(multi criteria decision model)이라고 정의하였다. 계층적 분석방법은 최종 목표, 단계의 구분, 단계별 평가기준, 대안 등으로 구성되며 기준과 단계들은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의사결정자는 각 평가기준에 상응하는 상대적 중요성과 대안의 각 평가기준에 대한 대안의 선호도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각 대안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를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식·경험·직관을 기반으로 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judgement)를 통해서 전문적인 평가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이 불가능한 정성적 요소에 대해서도 상대적 평가가 가능하여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쌍대비교를 통한 상위레벨의 각 요소인 평가항목에 대한 하위레벨 요소들의 우위를 나타내는 평가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전반적인 계층적 분석과정기법의 개발과정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대상을 파악한 후, 각 하위 수준에 대해서 일련의 쌍대비교 행렬을 작성한다. 쌍대비교 행렬은 평가요소간 우월성을 나타내는 정수형태로 기록한다. 또한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하여 평가기준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임의의  $n$ 에 확률적으로 생성된 일관성 지표(Consistency index, CI)와 최대 고유값(Maximum eigenvalue,  $\lambda_{max}$ )으로부터 일관성 비율을 계산한다 (Saaty & Vargas, 2001).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의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며 일관성 비율이 0.1보다 클 경우 평가기준의 일관성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표 3-71> 쌍대비교의 평가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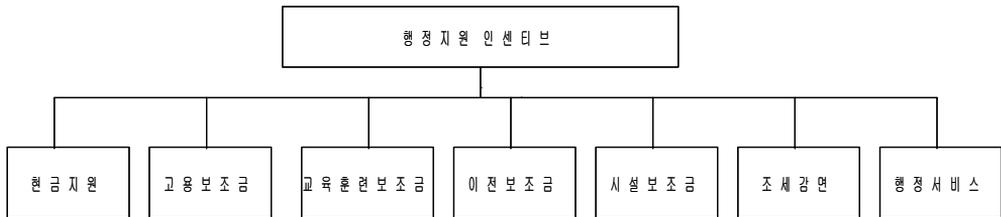
| 구분 | A   | B   | C   | D   | 가중치 |
|----|-----|-----|-----|-----|-----|
| A  | a11 | a12 | a13 | a14 | w1  |
| B  | a21 | a22 | a23 | a24 | w2  |
| C  | a31 | a32 | a33 | a34 | w3  |
| D  | a41 | a42 | a43 | a44 | w4  |

$$a_{ij} = \frac{w_i}{w_j}, \quad ij = 1, \dots, n$$

$$a_{ij} a_{jk} = \frac{w_i}{w_j} \cdot \frac{w_j}{w_k} = \frac{w_i}{w_k} = a_{ik} \quad a_{ji} = \frac{w_j}{w_i} = \frac{1}{w_i/w_j} = \frac{1}{a_{ij}}$$

<표 3-72> 쌍대비교를 위한 AHP 척도

| 척도     | 정의                     |
|--------|------------------------|
| 1      | 동등하게 중요                |
| 3      | 약간 중요                  |
| 5      | 꽤 중요                   |
| 7      | 아주 중요                  |
| 9      | 절대 중요                  |
| 24,6,8 | 위 척도들의 중간값             |
| 역수     | 1, 1/2, 1/3---1/8, 1/9 |



<그림 3-18> 행정지원 인센티브의 계층구조

전북에 이전된 기업 중 간부들을 중심으로 총42부를 배포하였고 응답에 문제가 있는 2부를 제외하고 총 40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7개 지표간 가중치를 구하고 설문분석과정에서 응답의 일관성이 없는 응답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CR이 0.06

으로 0.1에 포함되어 있어 안정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행정서비스가 0.287로 가장 높은 가중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반증하고 있다. 투자 기업들의 수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행정서비스는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촉진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투자 담당부서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처리와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투자 기업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규제나 공장 설립 절차 등 복잡한 처리와 기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표 3-73> 행정지원 인센티브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 행정지원제도  | 상대적 중요도 | 순위 |
|---------|---------|----|
| 현금지원    | 0.100   | 4  |
| 고용보조금   | 0.056   | 7  |
| 교육훈련보조금 | 0.186   | 2  |
| 이전보조금   | 0.094   | 5  |
| 시설보조금   | 0.186   | 2  |
| 조세감면    | 0.092   | 6  |
| 행정서비스   | 0.287   | 1  |

그 다음으로 가중치가 높은 것은 교육훈련보조금 0.186, 시설보조금 0.186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조건과 생산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력의 기술 및 지식의 숙련, 안정적 기반 형성을 위해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지원이 0.100으로 그 다음 높은 가중치가 나타났다. 현금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지원은 실제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강력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 외에 이전보조금 0.094, 조세감면 0.092, 고용보조금 0.056 등으로 나타났다. 조세감면이나 고용보조금이 다른 가중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조세감면이나 고

용보조금의 지원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안정적인 기반의 형성과 생산력 여건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또한 조세 감면이나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과 같은 행정지원제도의 제공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과 특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교차될 수도 있다.

### 3. 조사의 요약과 분석

본 설문조사 결과,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려거나 산업단지나 개별입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은 외부 컨설팅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자력으로 정보를 구하려고 노력하거나 해당 지자체나 투자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정보탐색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탐색이 끝나고 입지결정을 한 후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상 기간이 본 설문결과에 따를 때 전라북도의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 걸린다. 시간의 범위가 넓어서 좀 더 세분화된 조사가 차후 필요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 기간은 해당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가질 수 있는 장기간이라고 생각된다.

이전이나 입주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북에 대한 산업입지로서의 생각은 용지가 저렴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교통이 복잡하지 않아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기업이 많은 편이며 반면에, 지역 내 생산이나 판매의 시장규모나 연구기관의 조성으로 인한 협력관계 및 저렴한 노무비, 전문인력의 확보 측면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 이전을 한 기업들은 전북의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낮은 동기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투자유인정책은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홍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연구기관과 산학협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인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전라북도 입지 여건에 대하여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주변 여건과 노사관계 및 교통접근성 측면에서는 만족하는 편에 속하였고, 교육 및 경영관련 컨설팅 지원부分之一나 연구기관과 교류관계 및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불만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제공하였던 각종 보조금을 포함한 유인정책 및 제반 정책에 대

하여는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이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영성과와 투자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보다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으며 타 지역으로 이전의사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의 사업활동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규제가 환경규제라고 답하고 있으며 가장 큰이유가 높은 배출기준이라기 보다는 ‘까다로운 행정절차(56.9%)’라고 응답하고 있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표본수가 적은 탓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전라북도로 이전이나 입주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제도를 순위별로 두 가지를 선택한 문항에서 1순위로는 조세감면제도(34.7%)가 가장 높게 나왔고, 공장부지를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제도(18.7%), 인턴제도를 포함한 인력지원제도(9.3%)등과 2순위로 각종 보조금(21.6%), 조세감면, 행정지원서비스, 기술 및 경영컨설팅이 각각 동일하게 15.7%를 보이고 있다. 지원받은 적이 없는 기업도 12개 업체나 되었다. 반면에 현금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되었다는 기업은 극히 일부분(2.7%)에 지나지 않았으며, 개선해야 할 전북의 투자유치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1순위로 조세감면제도(36.8%)와 공장부지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21.1%) 또한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고 그 밖에 금융기관(대출)의 지원(13.2%)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다. 2순위로는 인력지원, 금융기관(대출)지원, 각종 보조금, 조세감면시책, 행정지원서비스 등 순으로 거의 비슷하게 15%수준에서 거론되었다.

지원 받는 기업입장에서는 어느 혜택이라도 좋게 생각하겠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조세감면제도가 높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조세감면제도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제도는 그 혜택의 규모가 작거나 직접적인 현금지원으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센티브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표본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비율이 높아 이들이 다른 보조금을 받기에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세감면 쪽으로만 생각을 하여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다른 보조금 제도가 최근 신설되어 이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의 장벽을 더 낮추어서 중소기업도 그 규모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보조금의 수혜범위를 전북으로 이전을 상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제 6 절 기업유치 SWOT 분석

### 1. 내부환경 분석

#### 1) 장점

21세기에 들어서 대규모 국가사업(서해안고속도로, 군장 신항만, 군장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사업, 군산-장항 철도연결, 전주권 신공항건설 등)의 실현으로 최상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대형 국책사업이 유사 이래 최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반 인프라나 산업발전여건이 기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하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군산-대전간, 서천-공주간, 군산-함양간 고속도로,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여 수도권, 대전-충남권, 광주-전남권과 2~3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여 물류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또한 호남고속전철의 완공과 군산-장항간 철도연결사업이 완공되면 장항선이 호남선-전라선과 연결되어 서해안의 철도체계가 완공될 전망이고, 군산이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집적지 및 동북아의 새로운 생산, 물류거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들어 내수관련 업종보다는 수출관련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화학물 및 화학제품의 수출호조에 따른 출하확대가 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GM대우, TATA대우상용차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이 서해안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부평-아산-군산-광주로 이어지는 자동차 산업벨트의 중심에 위치하여 자동차산업 연계의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전북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거리로 입지하여 기업의 대중국 진출 생산거점 및 교역관문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군산항은 청도항(580km), 대련항(565km), 상해항(805km) 등 중국도시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신산업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역할이 가능하다.

특히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1000만평에 가까운 군산국가공단, 군장국가공단 등의 산

업용지와 금강유역의 풍부한 공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하며 새만금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신규 산업용지의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며, 인적자원 면에서는 대학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풍부한 과학기술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학교 연구소 등에서 충분한 전문 기술 인력과 석·박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2) 약점

전북의 지역내총생산은 2001년 기준 전국의 약 3.3%에 불과하며,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약 80% 수준이고, 전국 각 도 단위에서 최하위권의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소득기준으로 최하위의 강원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으며, 낮은 기업증가율과 함께 산업활동의 약화가 원인이 되어 취업자 수나 인구 수 등에 있어 매우 저조한 양상을 보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다.

종업원 수나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도기업이 부족한 것도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풍부한 과학기술 및 기타 연구 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연구소 수나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적고 이와 관련 연구개발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공업계 고교·대학의 특성학과 부족 및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근로자 확보가 미비하다.

산업 및 도시개발이 대부분 군산~익산~전주 축에 분포되어 있어 개발효과의 지역 내 공간적 확산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지역의 중추기능 수행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중심성이 취약하다.

## 2. 외부환경 분석

### 1) 기회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축(광주-군산/전주-인천-신의주)과 남부내륙축(군산/전주-대

구/포항)의 교차지역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개발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전망이다. 제4차 국토계획에 의거하여 환황해축과 남부내륙축이 지역 내에서 교차토록 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의 개발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향후 수도권 개발 잠재력 약화와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잠재력을 점차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환황해 경제권의 부상과 함께 대중국 교역활성화로 전북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환황해 경제권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대중국교역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지역은 중국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이점을 지니고 있어 서해안의 대중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산업의 전문화와 집적에 따라 경쟁우위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정보화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기존 산업낙후지역에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가 도래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전환도 전북지역 산업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2004년 8월 17일자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면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7개 시범단지<sup>9)</sup> 중 군산산업단지(전주 기술연계)가 지정이 되면서 기업유치활성화,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혁신 인력양성, 생산기반 집적화 및 지원, 핵심 선도기술 개발, 우수인력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 위기

중국연안을 중심으로 한 공단 및 자유무역지역의 개발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전북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많다. 최근 중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단 또는 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고 있어서, 이 지역의 임대료나 기업의 입주환경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중국연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북지역의 입지 경쟁력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환경 개선이나 유치노력이 있지 않으면, 전북지역의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물류기지로서의 역할도 불확실할 전망은 당연한 일이다.

---

9) 창원(기계), 구미(디지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군산(자동차, 기계) 등 7개 산업단지.

소비시장의 세분화와 극심한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등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략이 없을 경우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할 우려가 있고, 또한 산업화 과정의 소외지역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거점지역, 서해안의 대중국 진출 생산거점으로서의 육성정책도 불확실해질 수 있게 된다.

전북지역 산업낙후의 원인은 산업발전을 이끌어갈 선도산업으로서의 첨단산업 또는 전략산업의 부재로 낙후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수립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표 3-74> 전북지역의 SWOT분석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미래 잠재력 보유</li> <li>○ 환황해권 시장진출의 최적 지리적 조건과 물류여건 구비</li> <li>○ 7개의 4년제 대학과 10여개의 2년제 대학, 직업훈련원 등에서 양질의 풍부한 인력공급 가능</li> <li>○ 군산국가공단, 군장국가공단 등의 산업용지와 금강유역의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가능</li> <li>○ 저렴한 노무비와 양질의 산업용지 공급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단위에서 하위권의 소득보유</li> <li>○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li> <li>○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위주 산업구조</li> <li>○ 지역의 중심성 취약 및 지역간 개발격차 심화</li> <li>○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 산업 부재</li> <li>○ 고급전문 기술인력 공급체계 및 지원 여건 미흡</li> </ul> |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계획상 환황해축과 남부내륙축의 교차지역으로서 접근성 개선 및 국가적 차원의 개발거점으로 부상 예상</li> <li>○ 환황해 경제권의 대중국교역 활성화 기회</li> <li>○ 서해안 산업물류 벨트 중간 거점</li> <li>○ 기존 산업취약지역의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 도래</li> <li>○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발전 기회</li> <li>○ 군산산업단지(전주 기술연계)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 지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의 입지적 경쟁력 약화</li> <li>○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li> <li>○ 수도권 규제완화에 기업유치 감소</li> </ul>  |



# 제 4 장

## 전라북도 기업유치제도 및 개선방향

- 제 1 절 행정지원 제도
- 제 2 절 이전촉진 제도
- 제 3 절 산업단지 환경 제도
- 제 4 절 노사관계 제도



## 제 4 장 전라북도 기업유치제도 및 개선방향

### 제 1 절 행정지원제도

#### 1. 행정지원 제도 현황

##### 1) 행정지원제도의 개념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는 기업 유치 및 투자를 위해 기업에게 세제감면, 제도지원,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안정된 기업 이전 및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지원제도는 지방정부가 도래됨에 따라 더 좋은 행정지원제도를 통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간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도 마찬가지이다. 전라북도의 경우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지리적 장점과 풍부한 인력, 중국과의 인접성 등의 비교우위와 적절한 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유치 경쟁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쟁 시장(competition market)은 투자유치의 매력적 요소들의 연계와 복합적 매트릭스가 구성되어 하나의 지역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게 한다. 행정지원제도는 유치라는 명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설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행정지원제도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들어 자본, 기업, 관광객, 주민들 간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롭게 되고 각국 및 지방정부에 있어 이들의 유치가 지역발전에 중요하게 되면서 한정된 정책 소비자인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이 관찰되고 있다. 행정지원제도는 정책 소비자들의 투자 결정을 유도하고 매력적 관심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행정지원제도는 투자인센티브(investment incentives)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되고 있다. 투자인센티브는 행정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원제도는 투자인센티브의 개념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행정지원제도나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논의 출발은 투자자들의 새로운 시장 진입이나 입지에 따른 긍정적인 생산이나 기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

한 부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 즉 투자로 인한 사적 투자수익률(private rate of return)과 사회적 투자수익률(social rate of return)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격차를 행정지원제도를 통해 보상해주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투자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Brewer & Young, 1998: 178).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사적 투자수익률이나 사회적 투자수익률의 격차를 보정해주는 것이라는 논리 이외에 정부 간섭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보상과 공공서비스의 미제공으로 인한 투자자의 부담 비용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주장하기도 한다(UNCTAD, 1995: 290). 전자는 정부간섭이나 특정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가 기대하는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투자유치국이나 지역에서 투자의 기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의 변동, 수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정치적 복잡성과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정책우선순위로 설정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지원제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공공서비스의 부족이나 사회적 숙련도의 저급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상대적 손실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각국이나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행정지원제도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되며 동시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근로자의 복지향상, 기술이전 및 혁신 기반 구축, 지역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연구들은 이미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고용창출, 세수증대효과 등을 밝힌 바 있다(김억현, 2000; 이용섭, 1999). 그러나 Oman(2000: 66)은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정부간 경쟁은 편익보다는 실익이 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의 과열은 터무니없는 보조금, 장려금 등을 부당하고 엄청난 수준까지 제공하고자 하는 각국간 글로벌 조건제시의 전쟁(bidding war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Oman, 2000)

행정지원제도의 유형은 크게 조세, 금융, 시장편의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UNCTAD, 1995). 조세부문은 소득세 감면, 투자 및 재투자 허가, 수입관세 면제 등의 조세 감면 및 면제에 관한 내용이며 금융부문은 정부 보조금, 신용보증, 정부지분참여, 보험가입 우대 등 직접적인 투자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달리 시장편의성은 시장 독점권 허용, 독점 수입권 부여, 정부수주 시 우선권 부여, 타 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 등 시장 차원에서 직접적 금전적 보조보다는 간접적 금전적 이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 지방정부는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의 변경과 인센티브의 발굴 등에 행정 비용의 투자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 과정의 수렴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지역 산업의 연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형성된다. 그러나 행정 지원제도가 실질적인 기업이나 투자의 유치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행정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접근될 수 있다(Vallanchain & Satterthwaite, 1992; UNCTAD, 1998; 김준동, 1997; 이성봉·이형근, 1998). 첫째, 다국적 기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 인센티브는 중요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국적 기업은 기업의 거시적인 전망과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투자 장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역 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 생산 비용, 지역의 기술수준, 인프라, 정치 경제적 안정 정도, 규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이 경우에 인센티브는 매력적인 투자 입지를 매력적으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 범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을 압축하여 결정할 때 인센티브는 의사결정의 중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투자대상 지역의 후보를 선택하는 최종 검증 단계에서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지원제도는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보완함으로써 대상지 결정에 중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투자가의 경향과 사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저렴한 노동력이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는 생산효율 지향적 투자가는 조세인센티브를 선호하며, 시장 지향적 투자가는 조세 인센티브보다 시장보호의 인센티브를 선호할 것이다. 지역차원에서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보다 현금 보조금이 투자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료지향형은 생산 원료가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에 투자하고 지식지향형은 선진 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투자한다.

따라서 행정지원제도의 방향 결정을 위해서는 투자가의 선호 경향과 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와 운영에 있어 투자가가 원하는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제공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및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나 정책 결정자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권영철, 1999: 152; 민기, 2001: 127). 투자의 동기 부여와 자극은 정책적 요인의 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변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지역 내 총생산이나 고용 안정 환경과 같은 요인과 달리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따라 단시간 내에 정책 추진을 통해 우호적인 기업유치 및 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전라북도의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

전라북도가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제도는 크게 지방세 감면, 고용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현금지원, 이전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세지원

조세지원은 기업유치에 있어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조세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전라북도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해 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기업 입주에 따른 세제 지원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 및 도조례 28조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100% 면제하여 주고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동안 100%면제를 하고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 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재산세와 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수도권외의 과밀을 억제하고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제도를 2005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주요 이전에 따른 감면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과세특례(제60조, 제61조), 법인세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제63조, 제63조의 2), 시·도 조례를 통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표 4-1> 국내기업 입지별 세제 지원내용

| 구 분                   | 세 제 지 원 내 용  | 비 고  |
|-----------------------|--|--|
| 산업단지입주기업              | - 취득세, 등록세 : 100%면제<br>-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100%면제   | 지방세법 제276조                                 |
| 농공단지입주기업              | - 소득세, 법인세 : 창업중소기업과 동일<br>- 취득세, 등록세 : 100%면제(대체입주 업체 포함)<br>-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100%면제  | 조특법 제64조<br>지방세법276조(도조례28조)               |
| 창업·창업벤처중소기업(수도권 외 지역) | - 소득세, 법인세 : 최소소득발생년도포함 4년간 50%감면 (무소득 경우 5년간) ※'06년 말 창업기업에 한함<br>- 취득세, 등록세 : 창업후 2년이내 취득 사업용 재산 100%면제<br>- 재산세, 종토세 : 창업후 5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조<br>조특법제120, 119조3항<br><br>조특법제121조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4.

<표 4-2> 지방이전기업을의 지원내용

| 대 상                               | 요 건   | 감면내용  | 관련 규정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공장·본사 지방이전 (제63의2조) |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공장 및 본사를 둔 법인이<br>•'05년말까지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거나<br>•'05년말까지 토지보유,<br>•'08년말까지 신축이전 | •법인세 5년간100%, 그 후 2년간 50%감면<br><br>•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납부 이연,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국세 (조세특례제한법) |
|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제60조)               |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키 위해 '05말까지 공장을 양도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이연,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지방이전(제 61조)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키 위해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05년말까지 양도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간 이연,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공장 지방이전(제63조)      | 2년이상 계속 공장영위 중소기업이 '05년 말까지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   | •법인·소득세5년간100%, 그후 2년간 50%감면  |              |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본사                     | 대도시외지역으로 이전, '05년말까지 취득 부동산   | •취득·등록세 면제(제274조, 275조)   | 지방세 (지방세법)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공장·본사         |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05년말까지 사업개시 (지방세법9조, 시군조례)   | •재산·종토세 5년간 100%, 그 후 3년간50% 감면                                     | 지방세법 시·도조례   |
| 성장·자연권역내 공장·본사                    |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05년말까지 취득 부동산  | •재산·종토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50% 감면                                     |              |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2004.

## (2) 고용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은 유치된 기업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인력의 안정화를 지원

하는 행정지원제도이다. 고용보조금은 전북도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지원은 신규 고용 인력 20명 초과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총 지원액이 2억원 범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도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부문은 인력, 1인당 지원액, 총지원액 등이다. 인력 30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군산, 무주, 순창, 정읍, 김제 등이며 1인당 지원액의 경우도 50만원과 30만원 지원을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50만원 지원 지역은 전주, 익산, 남원, 완주, 고창 등이며 30만원 지원 지역은 군산, 정읍, 김제, 무주, 순창 등의 지역이다. 최고 상한 지원액이 2억원 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이며 1억원은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순창, 고창 지역이다. 타 시·도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지원대상 기업 외에도 1억원 한도 내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3) 교육훈련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의 신규 채용 고용인원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생산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에 일정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교육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교육훈련 시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기능대학 포함),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 파견교육, 기타 도지사기 인정하는 기관이다.

전라북도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 20명 이상 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경우 6개월 내 10만원~50만원을 지원하며 총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훈련 보조금에 있어 지원 인원수와 총 지원액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50인 이상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군산, 무주, 순창, 정읍, 김제 등이며 총 지원액이 1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는 지역은 남원, 김제, 무주, 순창, 고창 등이다.

### (4) 지원대상 산업

행정지원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도, 각 시·군에서 차이

가 있다. 이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산업과 전략 산업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지원대상 범위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외에도 정보통신산업, 기계자동차산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익산시는 한방과학산업, 보석산업, 섬유산업, 석재산업 등 지역 특성과 연관된 산업을 집중 지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정읍시는 방사선기술사업, 농축산가공산업을 포함시키고 있고 완주군은 생명벤처기업을 포함시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제한 조건으로 투자촉진지구의 입주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여 강원도는 2년 이상 타 시도에 소재한 기업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표 4-3> 행정지원대상 산업

| 구 분      | 전북도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무주 | 순창 | 고창 |
|----------|-----|----|----|----|----|----|----|----|----|----|----|
| 첨단영상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생명공학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우주산업   | ○   | ○  | ○  |    |    | ○  | ○  | ○  | ○  | ○  | ○  |
| 산업지원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고도기술수반사업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산업   |     | ○  |    |    |    |    |    |    |    |    |    |
| 기계자동차산업  |     | ○  |    |    |    |    |    |    |    |    |    |
| 한방과학산업   |     |    |    | ○  |    |    |    |    |    |    |    |
| 보석산업     |     |    |    | ○  |    |    |    |    |    |    |    |
| 섬유산업     |     |    |    | ○  |    |    |    |    |    |    |    |
| 석재산업     |     |    |    | ○  |    |    |    |    |    |    |    |
| 방사선기술사업  |     |    |    |    | ○  |    |    |    |    |    |    |
| 농축산가공산업  |     |    |    |    | ○  |    |    |    |    |    |    |
| 생물벤처기업   |     |    |    |    |    |    |    | ○  |    |    |    |
| 첨단업종     |     |    |    | ○  |    |    |    |    |    |    |    |
| 허브산업     |     |    |    |    |    | ○  |    |    |    |    |    |

#### (5)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투자 기업의 특별 지원은 지원액수, 고용인원, 분야, 최고지원액 등으로 구성하고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대규모 투자 기업의 범위를 300억 원 이상 1일 상시 고용인원 200인 이상 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업에게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도내 시·군마다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범위와 설정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비용은 2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일 상시 고용인원도 100명에서 500명의 차이를 보이고 최고 지원액수도 1억원에서 50억원 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주시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4-4>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

| 구 분        |        | 전북도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무주 | 순창 |
|------------|--------|-----|----|----|----|----|----|----|----|----|----|
| 투자비용       | 100억   |     | ◎  |    |    |    | ◎  |    |    |    |    |
|            | 200억   |     | ◎  |    |    | ◎  |    |    |    |    |    |
|            | 300억   | ◎   |    | ◎  | ◎  |    |    | ◎  | ◎  |    |    |
|            | 1,000억 |     |    |    |    |    |    |    |    | ◎  | ◎  |
| 1일 상시 고용인원 | 30인    |     | ◎  |    |    |    |    |    |    |    |    |
|            | 100인   |     | ◎  |    |    | ◎  | ◎  |    |    |    |    |
|            | 200인   | ◎   |    | ◎  | ◎  |    |    |    | ◎  |    |    |
|            | 250인   |     |    |    |    |    |    | ◎  |    |    |    |
| 최고 지원액     | 500인   |     |    |    |    |    |    |    |    | ◎  | ◎  |
|            | 1억     |     |    |    |    |    |    |    |    | ◎  | ◎  |
|            | 2억     |     |    |    |    |    |    | ◎  |    |    |    |
|            | 5억     |     |    |    |    | ◎  | ◎  |    |    |    |    |
| 지원분야       | 50억    | ◎   | ◎  | ◎  | ◎  |    |    |    | ◎  |    |    |
|            |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첨단산업   |     | ◎  |    |    |    |    |    |    |    |    |

### (6) 현금 및 이전비 지원

전라북도는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5%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전비 지원은 본사 이전시 건물 취득가액 3%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며 공장이전·신증설시 10억원 초과 공장시설 투자에 대해 5%내에 최고 50억원을 지원한다. 정읍과 남원은 최고 지원액을 3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김제, 무주, 순창, 고창은 각각 2억원을 최고 지원액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최고 50억원을 상한 기준액으로 설정하여 행정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표 4-5> 전북도·시·군 기업유치 행정지원 제도(계속)

| 도·시·군 | 제정시기                         | 위원의 설치   | 외국인 투자지원              |  |  |  |              |           |   |   |  |   | 포상금기준  |
|-------|------------------------------|--|-----------------------|--|--|--|--------------|-----------|---|---|--|---|--|
|       |                              |  | 지방재정면<br>지원           | 신사업<br>지원  | 공장서설비용<br>지원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환급지원      | 지원대상범위  | 생활개선편<br>지원   | 이전비지원  | 국내기업 투자지원<br>지원   |  |
| 익산시   | 2004.7.27제정후<br>2004.10.08개정 | · 투자유치위원회(11인 이내)                                  | 지방재정면<br>지원           | 50억원이상공정신청<br>경우<br>50억원초과금액의<br>2%에서 최고<br>2억원지원  | 신규상사고용인원 30인<br>초과 경우 인당<br>50만원지원<br>2억원초과금지  | 고용보조금<br>20인이상고용을 위한<br>교육훈련비 60만원내<br>1인당10만원~30만원<br>지원, 2억원초과금지 | 교육훈련보조금<br>- | 환급지원<br>- | 지원대상범위<br>생활공약사업,<br>청년인증,<br>창업과제선<br>업,<br>모자산업,<br>성유산업,<br>석재산업       | 생활개선편<br>지원<br>주요사업<br>지원   | · 본사 이전<br>건물취득기액의 3%내에<br>최고 2억원까지 지원<br>· 공장이전신청<br>10억원초과공정신청투자<br>에 대해 3%내에 최고<br>50만원지원 | · 10억원투자 경우<br>5%내에 300만원지원<br>· 창업과제사업 청년인증<br>사업<br>· 200인 이상<br>제조업<br>· 최고 50억원지원 | · 외국투자자유자의 개인,<br>기업에 10억원이내자금<br>· 국내기업유치 지원<br>공무원 2명지원내<br>자금 |
| 정읍시   | 2003.12.30제정                 | · 세신세,<br>중합토지세<br>감면                              | -                     | 50억원이상공정신청<br>경우<br>10억원초과금액의<br>5%에서 최고<br>50만원지원 | 신규상사고용인원 30인<br>초과 경우 인당<br>30만원지원<br>1억원초과금지  | 50인이상고용을 위한<br>교육훈련비 60만원내<br>1인당10만원~50만원<br>지원, 2억원초과금지          | -            | -         | 선업지원사비<br>스,비,<br>고도기술수<br>반사면,<br>생명공학선<br>업,<br>방사선기술<br>사업,농축산<br>기공산업 | · 본사 이전<br>건물취득기액의 3%내에<br>최고 2억원까지 지원<br>· 공장이전신청<br>10억원초과공정신청투자<br>에 대해 3%내에 최고<br>3억원지원 | · 200억원이상<br>1인상사 고용인원<br>100인 이상<br>제조업<br>· 200억원이상<br>제조업<br>· 최고 50억원지원                  | 공무원에게 예산의<br>범위내에서 별도<br>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  |
| 남원시   | 2004.9.16제정비중                | · 투자유치위원회(15인 이내)<br>· 외국인투자진흥<br>과(상·지역경제과<br>태형) | 지방재정면<br>지원           | 30억원초과금액의<br>3%에서 최고<br>3억원지원                      | 신규상사고용인원 20인<br>초과 경우 인당<br>50만원지원,<br>1억원초과금지 | 20인이상고용을 위한<br>교육훈련비 60만원내<br>1인당10만원~30만원<br>지원, 1억원초과금지          | -            | -         | 청년창업사업,<br>생명공학선<br>업,환경우주<br>산업  | · 본사 이전<br>건물취득기액의 3%내에<br>최고 3억원까지 지원<br>· 공장이전신청<br>10억원초과공정신청투자<br>에 대해 3%내에 최고<br>3억원지원 | · 100억원이상<br>1인상사 고용인원<br>100인 이상<br>제조업<br>· 최고 50억원지원                                      | · 개인, 기업, 민간단체,<br>공무원에게 예산의<br>범위내에서 별도<br>기준을 마련하여 보상                               |  |
| 간주시   | 2001.8.13                    | · 투자유치위원회(11인 이내)<br>· 투자유치지원관<br>위촉               | · 세신세,<br>중합토지세<br>감면 | 50억원이상공정신청<br>경우<br>50억원초과금액의<br>2%에서 최고<br>2억원지원  | 신규상사고용인원 30인<br>초과 경우 인당<br>30만원지원,<br>1억원초과금지 | 50인이상고용을 위한<br>교육훈련비 60만원내<br>1인당10만원~30만원<br>지원, 1억원초과금지          | -            | -         | 인원지원사비<br>스,<br>고도기술수<br>반사면,<br>청년인증사업,<br>생명공학선<br>업,환경우주<br>산업         | · 본사 이전<br>건물취득기액의 3%내에<br>최고 2억원까지 지원<br>· 공장이전신청<br>10억원초과공정신청투자<br>에 대해 3%내에 최고<br>2억원지원 | · 300억원이상<br>1인상사 고용인원<br>250인 이상<br>제조업<br>· 최고 50억원지원                                      | · 회계법인, 법률사무소,<br>MBA, 컨설팅,<br>부동산회사 등에<br>500만원내 보상                                  |  |



<표 4-6> 전국 시·도 기업유치 행정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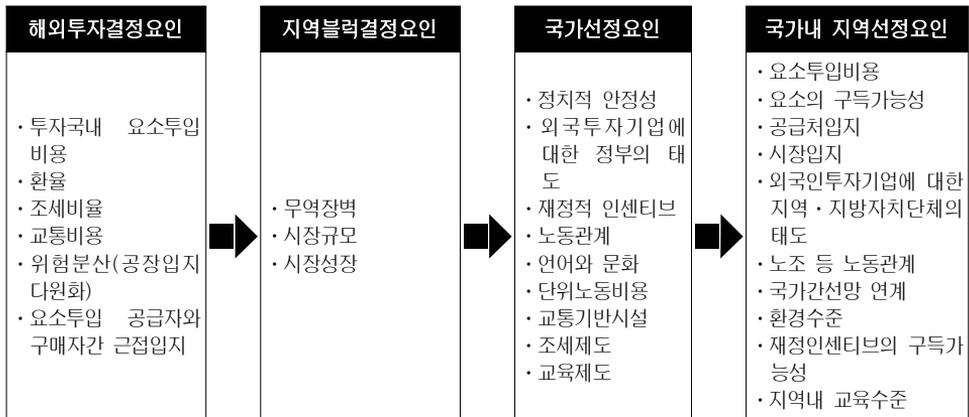
| 시·도 | 지원기준  | 임직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시설보조금   | 대규모투자기업  |
|-----|---|---|--|---|---|---|--|
| 부산  | 고도기술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전략산업  | · 공장용지면적 2,000평이상<br>· 투자금액의 30%범위내   | · 30인 이상 고용<br>· 초과인원 1인당 6개월내 월50만원(2억원한도)<br>· 지원대상외<br>· 사업투자기업은 월30만원(1억원한도) | · 50인 이상<br>· 신규고용교육훈련실시<br>· 6개월내 1인당 50만원이하(2억원한도)<br>· 지원대상외<br>· 사업투자기업 1인당 30만원이하(1억원한도) |   |   | · 1,000억원 이상<br>· 대규모투자기업은 특별지원  |
| 대구  |   |   |  |   | · 본사, 공장 이전비용<br>· 10억원 초과 경우 3%범위내 지원(2억원)   |   |  |
| 광주  | · 투자촉진지구<br>· 산업단지 입주<br>· 투자금액<br>· 20억원 이상,<br>· 지역내 신규채용<br>· 20명 이상 기업                    | · 공장용지면적 1500<br>· 평이상 매입 경우<br>· 매입가의<br>· 3%범위내   | 20명 이상 신규채용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개월내 월50만원(2억원한도)  |   |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br>· 공장시설이전가액의<br>· 2%범위내(2억원한도)   | · 공장신증설 경우<br>· 투자비용 20억원 이상<br>· 초과금액 2%내(2억원한도)                                       | · 500억원 이상 투자,<br>· 상시고용<br>· 300인 이상은<br>· 기업유치심의위원<br>· 회심의후 특별지원                |
| 대전  |   | · 정상분양가격이하<br>· 공급 및 정가대부   | · 20억원 이상 투자기업<br>· 관할구역 거주자 10명 이상<br>· 고용 초과 1인당<br>· 30만원 이하                  | · 20억원 이상 투자,<br>·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br>· 관할구역 거주자<br>· 30명 이상 채용시<br>· 6개월내 1인당<br>· 30만원 이하     | · 본사이전시<br>· 30명 초과인원 1인당<br>· 30만원 범위내 지원<br>· 공장시설이전소용비용<br>· 의 3%내 지원  | · 공장신증설비용이<br>· 20억원 초과 경우<br>· 초과금액의<br>· 3%범위내 지원                                     | · 300억원 이상, 1일<br>· 상시고용<br>· 300명 이상의<br>· 기업은<br>· 투자유치심의위원<br>· 회 심의후<br>· 특별지원 |
| 울산  |   | · 20억원 이상<br>· 상시고용규모 30명<br>· 이상<br>· 지역특화산업으로<br>· 투자금액<br>· 60억원 이상,<br>· 상시고용<br>· 50명 이상 기업<br>· 정상분양가의<br>· 3%내 지원(2억원<br>· 한도) | · 20명 이상 채용시<br>· 6개월내<br>· 초과인원 1인당<br>· 월50만원(2억원한도)                           | · 6개월 범위내 1인당<br>· 50만원 한도  | · 본사이전시 20명 이상<br>· 초과인원 1인당<br>· 50만원(1억원한도)<br>· 투자촉진지구로<br>· 이전하여 10억원을<br>· 초과하는<br>· 공장시설이전 경우<br>· 이전가액의<br>· 1%내 지원(2억원한도) | · 30억원 이상 공장시<br>· 설 신증설 경우<br>· 초과금액<br>· 2%내(2억원한도)                                   |  |
| 경기  | · 첨단고도기술수반<br>· 사업,<br>· 산업지원서비스업   |   | · 10명 이상 초과시<br>· 월50만원(10억원 범위내)  | · 10명 이상 고용기업<br>· 6월내 월50만원 지원   |   | · 소용비용총액의<br>· 100분의<br>· 50범위내에서 지원  |  |
| 강원  | · 2년 이상 타도에<br>· 소재한 기업이<br>· 동종업종을<br>· 영위하는 경우  | · 임직매입비의<br>· 5%범위내(2억원한<br>· 도)  | · 신규채용인원 20명 이상<br>· 초과 1인당 6개월내<br>· 월50만원(2억원한도)                               | · 신규 20명 이상<br>· 채용교육훈련실시 경우<br>· 초과인당 6개월내<br>· 월50만원(2억원한도)                                 | · 본사이전시<br>· 건물취득가액의<br>· 3%내(3억원한도)<br>· 공장시설투자비용<br>· 3억원 초과분<br>· 3%범위내(3억원한도)   |   | · 투자금액<br>· 200억원 이상,<br>· 상시고용 100명 이상<br>· 부지매입비<br>· 특별지원                       |
| 충남  |   | · 정상분양가의<br>· 30% 범위,<br>· 2억원 한도 지원  | · 신규 20명 이상 채용 1인당<br>· 30만원(1억원한도)  | · 신규 50명 이상 채용<br>· 6개월내 1인당 50만원   | · 본장이전<br>· 근무인원 10명 초과 1인<br>· 당<br>· 30만원 이내(2억원한도<br>· )   | · 10억원 초과<br>· 시설투자액의<br>· 3%내(2억원한도)<br>· 50억원 이상<br>· 공장시설<br>· 초과금액의<br>· 2%내(2억원한도) | · 1,000억원 이상,<br>· 고용인원<br>· 500명 이상<br>· 특별지원                                     |
| 경북  | · 투자금액<br>· 20억원 이상<br>· 신규고용인원 20인<br>· 이상<br>· 기업유치촉진지구<br>· 입주기업<br>· 고도기술사업<br>· 산업지원서비스업 | · 투자금액<br>· 20%범위내<br>· 부지매입비,<br>· 임대료 등 지원  | · 20인 초과 1인당 6월내<br>· 월30만원(1억원한도)   | · 20명 이상 교육훈련실시<br>· 6개월내 1인당<br>· 월30만원(1억원한도)   | · 본사이전 20명 이상<br>· 초과인원 50만원(5억<br>· 원한도)<br>· 공장이전<br>· 20억원 이상 초과금액<br>· 3%내(50억원한도)  | · 건축비, 기반시설비<br>· 등 투자금액의<br>· 20%범위내   | · 500억원 이상,<br>· 상시고용<br>· 300명 이상 특별지원  |
| 경남  | · 15억원 이상 투자<br>· 상시고용인원 20명<br>· 이상  | · 정상분양가액의<br>· 30%내(2억원한도)  | · 20인 이상 초과 1인당<br>· 6개월간<br>· 월50만원(2억원한도)                                      | · 20명 이상 교육실시<br>· 초과 1인당 6월내<br>· 50만원(2억원한도)  | · 본장이전시 10명 이상<br>· 초과인원<br>· 30만원(2억원한도)<br>· 투자액 10억원 이상<br>· 초과투자액의<br>· 1%내(2억원한도)  | · 공장신증설시<br>· 30억원 초과<br>· 설비금액의<br>· 2%내(2억원한도)  | · 500억원 이상,<br>· 상시고용<br>· 300명<br>· 이상 특별지원                                       |
| 전남  | · 투자금액 20억원,<br>· 상시고용규모<br>· 20명 이상<br>· 기업투자촉진지구<br>· 에 입주한 기업                              | · 공장시설 신증설<br>· 경우 정상분양가의<br>· 50%내   | · 신규채용인원 20명 이상<br>· 초과 6개월내 1인당<br>· 월50만원(2억원내)                                | · 20명 이상 교육실시<br>· 경우 6월내 1인당<br>· 50만원(2억원한도)  | · 이전비용의<br>· 10%내(2억원한도)<br>· 본장이전 경우<br>· 10명 초과인원당<br>· 30만원(2억원한도)   | · 20억원 이상<br>· 공장시설 신증설<br>· 경우 20억원 초과<br>· 설비금액의<br>· 2%내(2억원내)                       | · 500억원 이상,<br>· 상시고용<br>· 300명 이상<br>· 특별지원                                       |
| 제주  |   |   | · 20명 이상 초과 1인당 6월내<br>· 100만원(2억원내)   | · 20명 이상 채용교육<br>· 초과 1인당 6월내 1인당<br>· 100만원(2억원한도)   |   |   | · 500억원 이상,<br>· 300인 이상<br>· 투자비의 5%내<br>· 50억원까지 지원                              |

자료: 산업자원부 · 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 안내 에서 연구자가 정리.

## 2. 행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1) 기본 방향

기업 및 투자 유치는 다양한 변화와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장·단기적 분석을 통해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기업 및 투자 유치는 전북 지역의 경제적 여건, 정치적 상황, 노사관계, 생산 활동 인프라, 행정지원제도, 시장의 잠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입지가 선택된다. 기업이 다른 국가나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 배제되거나 기업이익의 손실을 가져올 경우 철저히 다른 지역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따라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장소(place)가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자산으로 의미가 확대되는 전체적 투자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업이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단계는 1인당 GDP, 노동비용,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개방성 및 조세, 행정지원제도 등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결정하게 된다.



<그림 4-1> 입지선정을 위한 잠재적 결정요인

자료: Armstrong & Taylor. (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Blackwell Publishers, P.36. ; 차미숙·정윤희. (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 국토연구원. p.19에서 재인용.

그러나 행정지원제도 방안을 접근에 있어 생산비용, 시장 구매력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나 노사관계, 지역의 정치적 상황 등의 정치·사회적 요인은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있어 장기적인 과제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하고 접근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행정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은 인센티브, 대상사업의 변화 등과 같은

단기적 개선이 가능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수행한다.

<표 4-7> 행정지원제도 접근의 기본방향

| 속성  | 요인       | 세부항목                                     | 개선 소요 시간 |
|-----|----------|--|----------|
| 근원적 | 경제적 요인   | · 시장수요<br>· 생산효율<br>· 기술력                | 장기적 개선   |
| 부수적 | 사회정치적 요인 | · 노사관계<br>· 지역정치관계<br>· 지역정서<br>· 지역규범준수 |          |
|     | 행정지원제도요인 | · 조세수준<br>· 투자인센티브<br>· 행정서비스<br>· 대상사업  | 단기적 개선   |

### (2) 투자유치 대상 사업의 다양화와 전략산업으로 확대

전라북도는 조세감면 대상 업종이 주로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의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투자 유치에 있어 제한이 되고 있다. 투자 유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유치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범위를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 지연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인센티브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3) 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 범위 축소와 제조업 중심의 보조금 지원 형태 탈피를 통한 유치 영역 확대 추진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을 위해 설정한 범위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요구 조건등도 현실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적합한 범위와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억 원 이상이나 300억원 등의 투자 금액과 고용인원도 200인 이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기업유치에 있어 현실적인 적합성의 문제와 기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의 연구와 규모, 범위 등의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제조업만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의 변화에 적합한 서비스업과 영화산업, 문화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시키고, 공장에 한정되었던 유치 기업 대상을 물류시설, 연구소, 사업장, 대학 등의 부속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공장 위주의 유치 지원 정책을 타 지역의 모든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Source 전복 서비스 사업과 기업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Source 전복 서비스 사업은 특정 기업이나 공장이 신설될 경우 기업이 원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이나 기관들이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전북지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유치 기업이 전북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 및 재료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산업체를 발굴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현한다. 또한 기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할 경우 고민 중에 하나가 현지에 적합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 (5)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및 차등지원에 대한 상향적 요구

현재 법규에서 지급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력 정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인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세제 지원 등은 기본적인 행정지원제도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시대의 기업 유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에 중요한 투자 유치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훈련보조금과 고용보조금 등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지방재정여건, 지역경제규모, 인구 구조 등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앙정부에 상향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6)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북 지역으로 유치된 기업에 전담자를 배정하여 분기별 방문을 통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담자를 파견하여 정착 및 안정화의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본사, 공장의 증설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8> 효율적인 one-stop 서비스 체계

|      |  |        |
|------|--|--------|
| 사전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매체 및 인터넷광고</li> <li>· 투자박람회 개최 및 참가</li> <li>· 투자사절단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li> <li>· 기업인 단체 및 협회 등 방문 설명</li> </ul>                                       | 기반확충   |
| 투자실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우편 및 텔레마케팅 전략</li> <li>· 목표기업 선정 및 방문, 인터뷰</li> <li>· 투자희망기업에 대한 컨설팅</li> <li>· 시장조사 및 입지탐색서비스 수행</li> <li>· 인허가, 공장설립 등 일괄처리서비스 수행</li> </ul>    | 투자촉진   |
|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정착화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및 파견</li> <li>· 분기별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li> <li>· 재투자 및 증액투자 유도</li> <li>· 마케팅 활동 지원</li> <li>· 관련 업체 및 공급업체 우수기업 알선</li> </ul> | 애프터서비스 |

자료: 박용규 외. (1999).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수정.

## (7) 프로젝트매니저(PM) 중심의 유치 지원체계 마련

전북의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one-stop 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one-stop 서비스의 가장 큰 이점은 모든 절차와 단계를 짧은 기간 동안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공장설립 및 투자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 많은 부서들이 상호 연계가 되어 있어 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투자심의협의회의 인증 절차 등 복잡한 프로세스가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투자검토 단계에서부터 투자입지 및 기반 등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인·허가의 종류가 많고 여러 부서나 기관들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소극적 자세로 일처리가 지연될 경우 심리적 피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강력한 저항,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직적인 거부 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를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입지 선택, 절차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나 요구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관리와 접근이 요구된다.<sup>10)</sup>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사업을 고려하는 단계부터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PM은 인·허가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8) 담당부서의 인센티브 도입

기업 및 투자의 유치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기관장의 의지와 담당 부서의 자긍심이다. 기관장의 투자 부문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은 기업 유치 및 투자 증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는 대부분 해당 부서의 재정지원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투자 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행정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투자 촉진 지역의 설정, 임대단지 부지 매입 등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담당부서의 예산이 2003년도 133억원에서 2004년도 419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803억원으로 두 배가 증액되었다. 예산에는 임대단지 조성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투자 관련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 진작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해당 업무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때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 복잡한 업무를 기업의 수요에 적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일정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투자통상업무를 격무 업무

10) 최근에 군산시와 전북도는 GM 대우자동차 연구개발 시설의 군장공단 유치과정에서 소극적인 자세와 인센티브 제공 부재로 인하여 인천시 청라 경제자유구역으로 결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12만 5,000평을 30년간 무상양도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본 화학업체 기업이 1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이었으나 군산시가 200억이 소요되는 전선의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여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건설 계획 추진(중앙일보, 2004.11.9일자).

로 분류하여 정원의 10~20% 범위 내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하거나 업무의 지속성과 경협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승진을 허용함으로써 사기 양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9) 이전절차의 통합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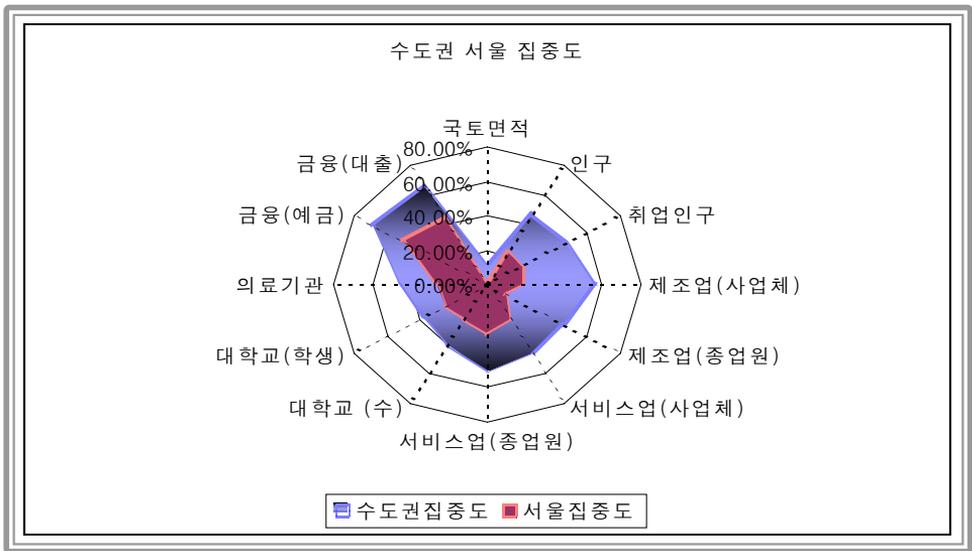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제도에 대해 전라북도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계획 기업이 이전희망지역으로 전라북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관련 각종 정보 제공하고, 전북 지역의 지원제도 안내 및 수혜여부 및 내용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일단 이전에 관한 상담을 시작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방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전담관리관은 지방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전기업이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고객입장(이전기업)에서 생각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 일환으로 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 징구하여 이전기업이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는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역별 공장설립지원센터와 협조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이전촉진 제도

### 1. 지방이전 제도 현황

정부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중 기업체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이전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정책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생각해 본다면 더욱더 지방으로 기업이전이 필요한 때에 적합한 추진 정책일 것이다.



자료: 건설교통부, 2004.

<그림 4-2> 수도권과 서울의 집중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사회경제적인 집중도를 보면, 국토면적기준으로 전국의 1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금융 분야의 대출과 예금이 전국대비 60%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 수도 50%를 훨씬 넘는 등 매우

심하게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제조업 취업인구수와 서비스 분야의 집중이 연이어서 밀집되어있고 부수적으로 인구와 대학교 및 의료기관 등도 상당히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금융분야는 수도권에서도 특히, 국토면적 대비 1%도 채 안되는 서울에서 전국의 예금과 대출을 포함하여 50% 가까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금융 등을 지원하는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중 기업체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이전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 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세제지원

정부에서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세제로 법인세 감면, 재산세·종토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 등을 행하고 있으며, 이들 세제지원은 한시(2005년 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4-9> 대기업 지방이전촉진 제도

| 유형                          | 지 원 내 용   |
|-----------------------------|---|
| 법인세 감면<br>(2005년말 한시)       |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3년이상) · 본사(5년이상)를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 그 후 5년간 50%감면<br>- 기존 공장 ·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3년간 이연 후 3년간 분할 납부 |
| 재산세 · 종토세 감면<br>(2005년말 한시) |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 본사(3년이상)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 종토세를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 취 · 등록세 면제<br>(2005년말 한시)   | -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 본사를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 · 등록세 면제   |

자료: 건설교통부, 2004.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권안의 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위해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5. 12.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익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감면대상은 대도시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된다. 여기서 대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이 해당하고 적용요건은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출되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다음과 같다.

$$\text{과세이연 금액} = \left[ \begin{array}{l} \text{공장} \\ \text{양도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공장} \\ \text{장부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이월} \\ \text{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frac{\begin{array}{l} \text{공장이전비용+이전공장건} \\ \text{물·부속토지 및} \\ \text{기계장치의 취득·개체} \\ \text{등에 소요된 금액} \end{array}}{\text{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

**(2)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법 제6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5. 12.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부분 익금불산입하는 특례이다. 구체적으로 익금불산입 금액은 다음 산식을 통해 구한다.

$$\text{익금불} = \left[ \begin{array}{l} \text{수도권} \\ \text{과밀억제} \\ \text{권역내} \\ \text{본사의} \\ \text{양도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수도권} \\ \text{과밀억제} \\ \text{권역내} \\ \text{본사의} \\ \text{장부가액} \end{array} - \begin{array}{l} \text{이월} \\ \text{결손금} \end{array} \right] \times \frac{\begin{array}{l} \text{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소재 법인의} \\ \text{본사(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액(임차보증금)} \\ \text{+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 양도일로부터} \\ \text{1년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본사(주사무소)의} \\ \text{사업용고정자산 취득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 \text{본사 이전비용} \end{array}}{\begin{array}{l} \text{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 \text{본사의 양도가액} \end{array}}$$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5. 12.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으로서 다음과 같은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전을 위한 조업중단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위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이 감면된다.

#### **(4)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조특법 제63조의 2)**

수도권내 공장 및 본사를 소유한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때 대상은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다음 조건 충족하는 기업에 한한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또는 3년 이상 계속 본점·주사무소를 둔 법인이어야 하고, 2005. 12.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08. 12.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법인세 감면내용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그 다음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형식으로 가고 지방세 감면(지방세법 제274조)은 이전 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된다.

(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4조)

2006. 12. 31일까지 농공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준하는 조세특례를 적용하는데 그 감면대상은 농공단지 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역 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감면내용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미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내 종료 과세연도 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이월된 미공제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 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통합이나 법인전환시 승계가 가능하다.

2)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표 4-10> 배 후 도시 개발 권

| 권한                   | 내용  |
|----------------------|---|
|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 지방이전 대기업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
|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권         |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을 허용  |
| 관련 인·허가 의제           |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30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기간을 단축   |
| 토지수용권                |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
| SOC 건설지원 및 사업비 보조·용자 | 국가·지자체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br>※ 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용수공급시설의 지원,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지원 가능<br>- 사업시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나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용자 |
| 국·공유지 처분제한 완화        | 사업시행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시행자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  |
| 국·공유지 장기임대           | 사업시행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20년 이내 임대하여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 조세·부담금 감면            | 지방세법·농지법·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와 농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립비 등 감면  |

자료: 건설교통부, 2004.

대기업 이전의 애로요인인 입지여건과 근로자생활환경시설을 원활히 갖출 수 있도록

록 도시개발법(2000.1.28. 제정, 2002.12.30 개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3.6.30, 2003.7.19 개정)에 의거해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배후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주변 SOC 건설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영위한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을 요건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권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3) 금융지원

#### (1) 산업은행

산업은행에서는 지방이전기업에게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사옥신축·공장이전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나 지방이전 완료후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하며, 시설자금은 6년간, 운영자금은 2년간이며, 이중 3,000억원은 저리(기준금리와 우대금리 사이)로, 7,000억원은 일반금리(11~12%수준)로 융자하고 있으나 2004년 말에 와서는 조성자금이 거의 소진되었다.

<표 4-11> 산업은행 금융지원

| 구분   | 일반시설자금  | 지역균형발전 지원펀드  |
|------|---|--|
| 운용규모 | 4조원   | 5,000억원  |
| 대출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 고객</li> <li>· 공장 설립·부지구입, 공장(사업장)구입, 기계설비 구입</li> <li>· 공장물건 경락자금, 연구개발 투자자금, 개보수 자금</li> <li>· IT관련 HW 및 SW 개발·구입</li> <li>· 물품수입 대금결제, 지방이전자금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전략산업 영위 고객</li> <li>○ 「지역특화발전특별법」에 의한 특화산업 영위 고객</li> <li>○ 수도권이외의 지방소재 중소기업 고객</li> </ul>  |
| 대출비율 | ○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 90% 이내   | ○ 시설자금 소요자금의 90% 이내  |
| 대출통화 | ○ 원화, US\$, ¥, 유로화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통화전환 가능)   | ○ 원화, US\$, ¥, 유로화(고객이 자유롭게 선택, 통화전환 가능)   |
| 대출기간 | ○ 8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 대출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 + 스프레드</li> <li>· 원화 기준금리 : 4.38% (1년 변동 기준)</li> <li>· 외화 기준금리 : 3m Libor + 0.66%(3개월 변동 기준)</li> <li>* 만기 5년 대출 기준, '04. 4. 6일 기준</li> <li>○ 중소기업, 투명하게 실시 기업 우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금리 + 스프레드</li> <li>· 원화 기준금리 : 3.88% (1년 변동 기준)</li> <li>· 외화 기준금리 : 3m Libor + 0.51%(3개월 변동 기준)</li> <li>* 만기 5년 대출 기준, '04. 4. 6일 기준</li> </ul> |

자료: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2004.

## (2) 산업기반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도권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산업기반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공장건축비, 시설도입비 기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동일인 한도(20억원) 적용을 배제하며,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 (3)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30대 계열기업군을 제외한 지방이전기업에 대하여 특별보증지원을 2004년 말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운전자금은 당기매출액의 1/3 범위내,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보증요율은 0.5~2%사이에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적용대상을 당초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001년 3월에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하였으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본사(3년 이상)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의 신용보증한도를 확대(연간 매출액의 1/4 → 1/3)하였다.

## (4)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지원하며, 업체당 5억원까지 지원되고 연리 8.25%,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 (5)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각 시·도에서 자체자금과 정부지원금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게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은 업체당 8억원까지 연리 8.25%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며, 연계운전자금은 업체당 3억원까지 연리 8.25%이내,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된다.

#### 4) 지방기업 지원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1) 대상

다음의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규모<sup>11)</sup>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이전을 위한 사업중단일, 입지보조금 신청일, 또는 이전등기일 등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2) 지원대상 기업

일반적인 기업 이전인 경우는 총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전 후 고용규모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그 규모가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이후 2년 이내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업(부동산업, 소비자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한편,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총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의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는 총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본사의 고용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연구소 이전의 경우는 총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지방으로

11) 상시고용규모 :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이전하고, 이전한 연구소의 고용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여기서 연구소는 기업이 설립하여 일정규모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과 공간을 갖춘 연구기관을 말하고 영리법인연구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므로 본사에 준해서 판단한다.(例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등)

<표 4-12> 공장이전 유형별 지원기준

| 이전유형                                      | 지원여부              | 지원기준  |
|---|-------------------|---|
| 多공장기업의 1개 이상 공장 이전                        | ○                 | 고용규모 100인 이상 공장이 지방이전 후 종업원규모가 100인 이상                |
| 지방 분공장 신설                                 | ×<br>(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지원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br>▪ 낙후지역에 분공장 신설<br>▪ 신설되는 분공장으로 본사이전 |
| 서로 다른 기업의 고용규모 100인 미만 공장이 2개 이상 집단화하여 이전 | ○                 | 집단이전 후 각 공장의 고용인원 합이 100인 이상이고,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  |
| 일부 생산라인 이전                                | ○                 | 일부 생산라인의 지방이전 후 고용규모가 100인 이상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 (3) 지원내용

<표 4-13> 기업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대상기업   |
|---------|---|--|
| 입지보조금   | ○ 지원내용<br>-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공장·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 경우 정상가의 일부 보조<br>○ 지원비율<br>-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50%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 | ○ 공동사항<br>- 수도권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10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
| 투자보조금   | ○ 지원내용<br>-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하여 일부 보조<br>○ 지원비율<br>-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최대50% 까지 지자체에 보조  | ○ 일반원칙<br>- 100인 이상 기업이 이전 후 100인 이상의 고용규모 유지<br>○ 공장 이전<br>- 이전 후 10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 고용보조금   | ○ 지원내용<br>-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  | ○ 본사 이전<br>- 이전 후 5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 교육훈련보조금 | ○ 지원비율<br>- 6개월 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를 지자체에 보조  | ○ 연구소 이전<br>- 이전 후 30인 이상 고용규모 유지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지방이전기업지원제도.

#### (4)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이전기업이 지자체에 신청 후,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가 산자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산자부는 산자부장관이 고시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여부, 차등지원요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4-3> 보조금 지원절차

<표 4-14> 보조금 신청시점

| 종류             | 신청시점  |
|----------------|---|
| 입지·투자<br>보조금   | ○ 신청시점<br>- 이전계획부지·건물·공장 매입 또는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계약체결 후 1년 이내<br><br>○ 신청서류<br>- 보조금신청서, 분양·매입(임대)계약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 등을 함께 제출 |
| 고용·교육훈련<br>보조금 | ○ 신청시점<br>-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   |

자료: 산업자원부, 2004.

보조금 신청 후 지급받은 이전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필요하고, 이전기업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부지매입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국가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되며, 이전기업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받은 인원규모를 3년간 고용 유지하되, 3년 동안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한다.

이전기업이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 2. 지방이전제도의 개선 방향

### 1) 수도권 규제완화 억제

수도권 분산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처음으로 인식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수도권 정책은 인구분산시책, 그린벨트의 설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조세, 교육, 국토계획 등 여러 개별수단과 다양한 부처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내의 권역구분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와 개발부담금의 부과, 공장과 대학의 총량규제와 같이 물리적인 입지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개된 물리적 규제를 통한 수도권에 입지하는 산업과 인구의 기회비용을 높여 이들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그동안 수도권에서 제공하는 집적의 이익이 비용을 상회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이 계속 집중되고, 무등록 공장의 난립과 교통난, 수도권내의 지역간 불균형개발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산하연구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는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책담론의 장을 열고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정부 스스로도 수도권의 기능제고를 수도권억제와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의 수도권규제완화 논리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핵심을 간과하는 조치이며 수도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선 분권화 및 분산화정책(정부, 공공기관, 기업체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후 수도권 자율화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형 영역이나 관광산업 등 성장유망분야만 유독 수도권에서 허용되는 것은 낡은 산업은 여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전략적 영역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수도권산업의 재구조화 전략만 인정되고 지역격차해소의 본질적 측면은 여전히 간과하는 결과가 된다.

수도권억제정책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공공부문의 수도권 집중일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공공청사의 입지를 규제하기 위해 규모 하향조정, 신증축의 금지, 임대차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정부부처의 일부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과감히 이전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격차해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건설교통부의 지방이전, 부산에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부처를 입지토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이 비록 실현을 못하고 있지만 동경일극집중을 타파하기 위해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를 한 것과 같이 경쟁력 있는 국토의 개조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부처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정책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일부 수용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시장실패의 심화를 초래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저하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과밀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이고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를 증대시키며 중앙정부재정의 수도권지역으로의 불균형적 유입과 지방과 수도권간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쉽사리 시장적 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시장실패의 발생으로 국가전체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에 의한 치유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개발정책에 있어서의 시장경쟁원리 도입은 불공정한 게임으로 불합리하다. 시장경제원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게임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시장경쟁원리 주장은 고착된 지역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불공정한 상태 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현재 시장경쟁 원리가 적용되기에는 한국의 뿌리 깊은 지역불균형구조에 많은 무리함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집중에 대한 패널티와 지방분산의 인센티브 부여가 선행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도권 억제 및 지역개발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실천노력의 부재로 정책 실효성이 의문이 대두된다.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97년~2011년)은 그간의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수도권 기능제고라는 다소 상반된 정책목표를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억제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의 수도권억제 및 지역 균형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한 것은 재계, 수도권자치단체의 논리에 의해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비수도권 주민의 유입, 수도권 규제와 병행한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 및 실천노력의 부족, 법 적용의 임의성, 즉 특정기업 및 지역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떠는 법체계의 임의적 적용으로 수도권 억제 정책의 일관성 상실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격차의 해소의 결과는 지역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는 ① 장소보다는 그 지역 내 사람을 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② 성장과실의 단순균등배분이 아니라 지역간의 창의적인 경쟁과 민주적 참여의 원칙 하에 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 2) 이전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제도 수립

현재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산하에 관계부처 연계의 통합지원기능으로 기업이전 센터를 설치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제도(CIP)를 수립하여 부동산매입기금 등의 금융지원,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 조성, 정책자금 우대, 보증기능의 활성화, 세제지원, 배후도시개발권 부여, 금융기관 및 대학의 이전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전라북도에 대한 지원도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수기업을 옮기기 위해서는 종사인력의 생활을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산이 빈약한 전라북도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기업의 이전에는 전라북도에 대한 지원과 연계협력의 조치가 필요하다.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전북지역 간에 차등지원을 하고 특히 전북의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정보인프라와 지원네트워크체계의 구축 등 기업의 수요에 우선 대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단순한 공장뿐 아니라 본사가 이전토록 이전기능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여 본사 이전시에는 대폭적인 지원조치를 하고 업종별로 금융 등 지역의 실질적 활성화를 조기

에 가시화할 수 있는 영역에 선별적인 우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3) 배후도시 개발제도 개선

배후도시 개발권은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에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에서 500명 이상 기업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였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지역경제 파급효과나 연관산업 유치 가능성,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배후도시 개발에 관심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권을 개발업체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기업도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한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기업의 이전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계획 중인 혁신도시 개발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즉 혁신도시 개발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민간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개발주체 선정 시 지방이전 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각종 법적, 제도적 제약 요인의 개선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전기업이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요건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 4) 금융지원제도 개선

2004년 5월 시행된 재정자금 지원제도는 이전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이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법인세 감면은 기업경영의 결과 사후적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동 제도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기업의 규모제한, 수도권 대상지역 제한 등 엄격한 자격요건과 국가와

지자체간 매칭펀드 방식 적용 등으로 인해 수혜기업이나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인 이상 기업이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100인 이상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 즉 수도권 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이전 후 기업의 규모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해야 한다.

본사와 연구소가 이전하는 경우 자격요건도 100인 이상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이전하여 이전 후 본사는 30인 이상, 연구소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전 후를 기준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자금 지원비율은 매칭펀드 방식을 적용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금액의 50%(낙후지역은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입지보조금의 경우는 부지 매입금액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각 지자체의 지원한도가 기업 당 2~3억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정 지역 내 입주하는 경우나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전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상기업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지원한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가의 지원비율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원금액 자체가 작아 국가의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저금액을 보조하고, 특히 낙후지역이나 실태조사 결과 이전수요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명 이상 신규채용 시 초과 1인당 6개월간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다. 즉 지원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 기간을 2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3 절 산업단지 환경 제도

### 1.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개발지침의 내용(법 제5조)

- 산업입지 개발의 기본지침인 산업입지개발지침의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기본방향 : 산업단지개발은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함(지침 제3조제4항)

② 공공녹지 및 환경기초시설 기준

- 공공녹지 :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녹지비율 : 3km<sup>2</sup>이상 : 10 ~ 12%

1km<sup>2</sup> ~ 3km<sup>2</sup>: 7.5 ~ 9%

1km<sup>2</sup>미만 : 5 ~ 6.5%

-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원칙적으로 단지전용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③ 유치업종에 따른 고려사항 :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접 주거지역과의 적정한 거리 및 녹지의 확보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함(지침 제13조의3)

####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영향평가대상사업(법 제4조)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3) 대기환경보전법

- 공동방지지설의 설치(법 제13조제1항)
  -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지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지설을 설치한 것으로 봄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재활용단지의 조성(법 제34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음

###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법 제5조)
  -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함(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법 제7조)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당해 산업단지 등의 개발·설치·증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2.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업무

- 관리기관은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음(법 제45조)
-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에는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이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시행령 58조1항)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게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그의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지도를 할 수 있음(시행령 58조2항)

####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추진계획의 수립시 환경관련 조항 포함

- 경제여건의 변화,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기존 산업단지의 산업재배치가 필요하거나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환경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리기관은 구조고도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법 제 45조의 2, 1항)

#### ○ 공장입지의 기준(법 제8조)

- 공장입지 기준의 내용 중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은 고시하여야 함

### 2)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2조)

### 3)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법 제8조의3)

-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제1항)이나,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제2항)

○ 총량규제(법 제9조제1항)

-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음

### 3. 환경규제에 의한 기업활동 제약

#### 1)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에 따른 제약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조 및 17조에 따르며 150,000㎡이상의 면적에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생산관리지역 7,500㎡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의 개발사업 허가시 환경부장관(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환경정책기본법 25조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신설하여 사업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장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사 착공 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공사완료 후에는 입주율이 70%도달한 후부터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는 법(25조)상으로는 행정기관장에게 부여된 의무이나, 시행령(8조1항)에 의해 행정기관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제

로는 개별기업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최소 2~3개월의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장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환경영향평가를 기업 스스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영향평가대행사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므로 비용면에서 부담을 갖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의 설립부터 행정적인 처리기간과 환경비용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사전환경성검토시 제출한 서류는 환경영향평가지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적 기간을 확연하게 단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환경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표 4-15>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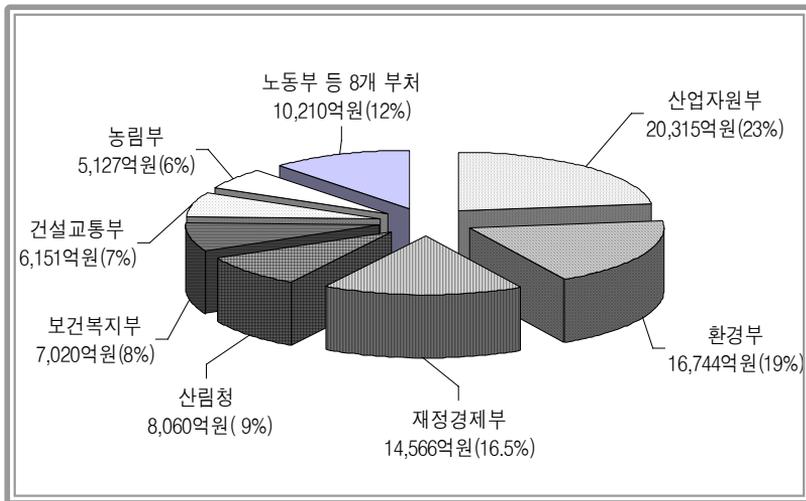
| 구 분            |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   |
|----------------|--|---|--|
| 근 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br>영향평가법 5조 및 17조   | 환경정책기본법 25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br>영향평가법 25조  |
| 도 입            | 1993년  | 2002년   | 1993년  |
| 대 상            | 150,000㎡ 이상  |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br>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 환경영향평가와 같음   |
| 시행시기           | 공장설립 승인 전  | 환경영향평가와 같음  | 착공부터 공사완료 3년후까지  |
| 조사 또는<br>제출 항목 | 1.자연환경분야 : 기상, 지형·지질,<br>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br>2.생활환경분야 : 토지이용, 대기질,<br>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br>약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br>경관, 위생·공중보건<br>3.사회·경제환경분야 : 인구, 주거,<br>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br>재 | 1.사업계획<br>2.토지이용현황<br>3.생태계보전지역 등 분포현황<br>4.기타 대상지역의 생태적 특성,<br>오염도·오염원 현황, 위치도,<br>토지이용계획도 등 | 1.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 대<br>기, 소음, 수질<br>2.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br>시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이<br>제시한 항목 |

## 2) 산업단지의 환경관리에 따른 제약

### (1) 환경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 제도는 「대기배출부과금」(『대기환경보전법』(제19조), 1981년 12월) 도입을 시작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수도법), 손피자부담금(수도법), 수질환경배출부과금, 오수·분뇨 및 축산배출부과금, 원상회복예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손피자부담금(하수도법),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물이용부담금(한강수계),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협의기준초과부담금, 총량초과부과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등 2003년 기준 24개의 부담금이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발행한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 운용·관리중인 102개 부담금 중 징수실적이 있는 총 74개 부담금의 징수액은 총 8조 8,193억원이며 이를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보면 산업자원부 2조315억원(23.0%), 환경부 1조6,744억원(19.0%), 재정경제부 1조4,566(16.5%)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215억원과 14억원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4-4> 부처별 2003년 부담금 징수실적

환경예산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와 같은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기준 환경개선특별회계가 1조 2,652억원 (87.3%)으로 전체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용자특별회계 1,023억원(7.1%),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817억원(5.6%)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6> 환경부소관 예산의 회계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계            | 13,023 | 14,143 | 14,336 | 14,037 | 14,492 |
| 환경개선특별회계     | 10,505 | 11,467 | 11,682 | 12,241 | 12,652 |
| 재정용자특별회계     | 1,886  | 1,960  | 1,971  | 1,115  | 1,023  |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388    | 527    | 577    | 680    | 817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243    | 189    | 106    | 0      | 0      |

자료 : 환경부,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2004.3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관리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 1조 3천9백억 원이 징수되어 1조 2천6백여 억 원이 집행되었다. 2003년도 부담금 세입실적은 5,74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환경개선부담금」이 4,829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산업계가 주요원인제공자로 전체부담금의 8.8%인 50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원은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세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6대 부담금과 용자원리금 수입 및 기타 세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수입은 2003년에 비하여 2004년은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6대 부담금의 세입액(6,570억원)이 자체세입 총액(9,026억원)의 72.8%를 차지하였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2003년 보다 10.2%인 410억원이 줄어 든 규모를 나타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도입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부과금을 신규로 부과하고 있다.

<표 4-17> 환경부문 부담금 세출·입 규모 및 사용처

| 세 입                 |        |        | 세 출            |        |        |
|---------------------|--------|--------|----------------|--------|--------|
| 항 목                 | 실적(억원) |        | 항 목            | 실적(억원) |        |
|                     | 2002년  | 2003년  |                | 2002년  | 2003년  |
| 합 계                 | 12,268 | 13,921 | 합 계            | 12,044 | 12,680 |
| ○ 부담금               | 5,455  | 5,746  | ○ 중소도시지방 상수도개발 | 766    | 486    |
| - 대기환경배출부과금         | 70     | 69     |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358    | 503    |
| - 수질개선부담금           | 137    | 133    | ○ 하수처리시설지원     | 8      | 266    |
| - 수질환경 배출부과금        | 59     | 74     | ○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1,592  | 1,067  |
| - 오수·분뇨 및 축산 배출부과금  | 3      | 1      | ○ 팔당특별대책지원     | 300    | 300    |
| - 생태계보전협력금          | 15     | 120    | ○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 | 700    | 750    |
| - 폐기물부담금            | 499    | 468    | ○ 21c프론티어연구개발  | 20     | 20     |
| - 재활용부과금            | 138    | 35     |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91     | 95     |
| -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 4      | 1      | ○ 국립공원사업       | 687    | 670    |
| - 폐기물처리시설의사후관리이행보증금 | -      | 9      | ○ 국립공원관리공단운영   | 135    | 95     |
| - 환경개선부담금           | 4,526  | 4,829  | ○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 58     | 53     |
| - 협의기준초과부담금         | 2      | 5      | ○ 천연가스자동차보급    | 545    | 479    |
|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 2      | 2      | ○ 공단폐수종말처리장    | 227    | 499    |
| ○ 관유물매각대            | 13     | 198    | ○ 4대강수질개선대책    | 73     | 119    |
| ○ 용자회수금             | 725    | 1,144  | ○ 쓰레기매립시설설치    | 216    | 284    |
| ○ 일반회계전입금           | 4,282  | 5,421  | ○ 폐기물소각시설      | 417    | 623    |
| ○ 전년도이월금            | 681    | 263    | ○ 비위생매립지정비     | 351    | 357    |
| ○ 기타                | 1,112  | 1,149  | ○ 재활용산업육성      | 650    | 600    |
|                     |        |        | ○ 기타           | 4,810  | 5,414  |

자료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예산처, 2004.

<표 4-18> 2004년도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02예산    | 2003예산(A) | 2004예산    |         |       |
|-----------|-----------|-----------|-----------|---------|-------|
|           |           |           | 예산(C)     | 증감(C-A) | %     |
| 합 계       | 1,168,240 | 1,224,107 | 1,265,215 | 41,108  | 3.4   |
| <특별회계 수입> | 740,046   | 820,522   | 902,605   | 82,083  | 10.0  |
| ○환경개선부담금  | 443,961   | 497,812   | 567,288   | 69,476  | 14.0  |
| ○배출부과금    | 27,951    | 18,092    | 16,389    | -1,703  | -9.4  |
| ○폐기물예치금   | 23,856    | 379       | 148       | -231    | -60.9 |
| ○재활용부과금   | -         | -         | 4,999     | 4,999   | 100.0 |
| ○폐기물부담금   | 50,743    | 57,234    | 37,614    | -19,620 | -34.3 |
| ○수질개선부담금  | 23,795    | 16,059    | 17,825    | 1,766   | 11.0  |
| ○생태계보전협력금 | 4,297     | 6,406     | 12,885    | 6,479   | 101.1 |
| ○용자원리금    | 138,420   | 174,285   | 181,059   | 6,774   | 3.9   |
| ○수입대체경비   | 105       | 120       | 165       | 45      | 37.5  |
| ○기 타      | 26,918    | 29,292    | 38,904    | 9,612   | 32.8  |
| ○전년도이월금   | -         | 20,843    | 25,329    | 4,486   | 21.5  |
| <전입금·차입금> | 428,194   | 403,585   | 362,610   | -40,975 | -10.2 |
| ○일반회계전입금  | 428,194   | 403,585   | 362,610   | -40,975 | -10.2 |

자료 : 환경부,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2004. 3.

환경관련 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s Pays Principle : PPP)」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의 근본취지와 달리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금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환경부 소관 전체 예산(세입)의 87.3%를 차지하고 있으나 환경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는 오염제공자가 대부분 기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부담금이 해당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감소를 위한 환경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소지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산업계는 환경관련 부담금에 대해 여타 분담금 및 출연금과 함께, 준조세(準租稅)로 인식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미 가용한 최고의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강제적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배출부과금이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 설치, 연료사용규제 등 여타 규제와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 (2) 환경관리 점검·단속

환경관리 점검·단속업무는 대기, 수질 및 유해화학물질관련 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사업장은 지방환경관리청이, 산업단지 외의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02년 10월부터 산업체의 환경관리 점검·단속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19> 환경관리 점검·단속권 이관

| 2002. 9. 30 이전 |  | 2002. 10. 1 이후 |         |
|----------------|--|----------------|---------|
| 관할기관           | 관할사업장 범위   | 관할기관           | 관할사업장범위 |
| 지방환경<br>관리청장   | -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사업장                                | 시·도지사          | 전체 사업장  |
|                | - 수출자유지역내의 사업장   |                |         |
| 시·도지사          | - 부산광역시 북구의 전용공업지역 및 대구광역시 북구, 달서구, 북구의 일반공업 지역 내의 사업장 |                |         |
|                | 상기 지역 외의 사업장   |                |         |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000년에 위반율의 급격한 증가이후 점검업소대비 위반율은 8.3~9.2%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점검업소대비 정상업소 비중 역시 2000년을 기준으로 94.5%에서 91.6%로 감소한 이후 90.8~91.7%를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있다. 2000년 위반율 증가 및 정상업소 감소는 경기호전에 따른 점검대상 업소수가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同 기간 중 지도·단속 대상업소수와 정상업소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업소당 평균점검회수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1.10회)에 1997년(1.45회)보다 24.1%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지도·점검 실적

(단위 : 업체수)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점검대상업소수(A)            | 31,855           | 30,865           | 32,437           | 37,462           | 39,874           | 42,323           | 43,737           |
| 점검회수(B)               | 46,201           | 48,149           | 44,974           | 45,954           | 46,135           | 44,277           | 48,064           |
| 업소당 평균 점검회수(B/A)      | 1.45             | 1.56             | 1.39             | 1.23             | 1.16             | 1.05             | 1.10             |
| 정상업소C<br>(C/B)        | 43,601<br>(94.4) | 45,863<br>(95.3) | 42,513<br>(94.5) | 42,091<br>(91.6) | 41,911<br>(90.8) | 40,608<br>(91.7) | 44,093<br>(91.7) |
| 위반적발(D)<br>(위반율, D/B) | 2,600<br>(5.6)   | 2,286<br>(4.7)   | 2,461<br>(5.5)   | 3,863<br>(8.4)   | 4,224<br>(9.2)   | 3,669<br>(8.3)   | 3,971<br>(8.3)   |

자료 : <http://www.me.go.kr>.

<표 4-21> 전라북도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점검대상업소수(A)            | 1,304           | 1,386           | 1,365           | 1,451           | 1,490           | 1,700           | 1,654           |
| 점검회수(B)               | 2,356           | 4,143           | 2,036           | 5,300           | 6,133           | 3,087           | 2,354           |
| 업소당 평균 점검회수(B/A)      | 1.8             | 3.0             | 1.5             | 3.7             | 4.1             | 1.8             | 1.4             |
| 정상업소C<br>(C/B)        | 2,308<br>(98.0) | 4,009<br>(96.8) | 1,989<br>(97.7) | 5,032<br>(94.9) | 5,741<br>(93.6) | 2,983<br>(96.6) | 2,276<br>(96.7) |
| 위반적발(D)<br>(위반율, D/B) | 48<br>(2.0)     | 134<br>(3.2)    | 47<br>(2.3)     | 268<br>(5.1)    | 392<br>(6.4)    | 104<br>(3.4)    | 78<br>(3.3)     |

자료 : 전라북도, 환경백서, 2004.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점검·단속 결과 1999년까지 위반업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다만 2000년의 위반업소수가 증가한 것은, 고질적·상습적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데 기인한다.

<표 4-22> 폐수 배출업체 점검·단속 실적

(단위 : 개소, %)

| 구분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
| 점검업소수          | 73,988         | 76,746         | 77,144         | 76,988         | 74,460         | 67,752         |
| 위반업소수<br>(위반율) | 5,053<br>(6.8) | 4,461<br>(5.8) | 4,730<br>(6.1) | 5,949<br>(7.7) | 5,099<br>(6.8) | 3,504<br>(5.2) |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2003.

전라북도의 연도별 지도·점검실적을 보면 2003년도 실적을 2002년도와 비교·분석하여 보면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건수는 5,548건에서 4,166건으로 33.1%가 감소하였으며, 위반율은 5.4%에서 3.9%로 감소하였다. 위반내용을 보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 위반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오염 사업장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범정부적인 단속 강화와 기업체의 재정상태 불량 등 여건 변화에 의한 요인이 작용하여 위반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산업단지별 순회로 환경시책설명회를 통한 자율관리체제 정착과 더불어 기업환경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으로 지도점검 일원화 및 점검예고제 실시 등으로 자율환경관리체제의 정착으로 위반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4-23> 전라북도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점검업소수          | 3,501        | 3,724        | 5,548        | 4,166        |
| 위반업소수<br>(위반율) | 204<br>(5.8) | 336<br>(9.0) | 299<br>(5.4) | 162<br>(3.9) |

자료 : 전라북도, 환경백서, 2004.

환경관리 점검·단속대상인 기업들은 여전히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회가 전국 10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환경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경관리 점검·단속의 문제점으로 ‘중복단속’을 꼽은 산업 단지가 2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26.1%), ‘빈번한 점검·단속’(21.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24> 환경관리 점검·단속의 문제점

(단위 : %)

| 중복단속 | 자의적 해석 및 적용 | 빈번한 점검·단속 | 처벌의 비합리성 | 측정의 비객관성 | 기타  | 무응답 |
|------|-------------|-----------|----------|----------|-----|-----|
| 29.5 | 26.1        | 21.6      | 8.0      | 5.7      | 3.4 | 5.7 |

또한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단속·처벌위주가 아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을 가장 많은 응답비중(39.3%)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법·제도의 정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33.3%나 되었고 ‘객관적인 점검·단속’을 지적한 응답자도 8.7% 정도를 나타냈다.

<표 4-25>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

(단위 : %)

| 선결과제                         | 비중   |
|------------------------------|------|
| 단속·처벌위주가 아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 | 39.3 |
|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법, 제도의 정비      | 33.3 |
|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       | 13.1 |
| 객관적인 점검·단속 실시                | 8.7  |
| 지자체 관련 제정의 확충                | 4.4  |
| 기타                           | 0.0  |
| 무응답                          | 1.1  |

## 4. 환경규제개선방안

### 1) 산업단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 시 개선방안

#### (1)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전 단계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입지선정의 적정성 등을 단지지정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장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기업의 행정적, 재정적, 시간적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지 각 지자체 기업유치 전담부서의 업무대행을 통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제공, 기업유치 전담부서의 행정조직간(해당지자체-타시도지자체, 해당지자체-해당지방환경청, 해당지자체-중앙정부조직) 협의대행을 통한 시간단축 인센티브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후환경조사제도와 타 산업단지 환경규제 제도간의 제도적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환경청이나 시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한 산업단지의 사후환경영향감시의 강화를 통한 사후환경조사제도의 폐지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산업단지 입지 결정시 폐수처리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단지내에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군산단지의 경우 환경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기업들이 비용 문제로 인해 반월, 시화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물류비용 발생 뿐만 아니라 반월, 시화지역의 대기오염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지 전용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적절하게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분야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 2)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시 개선방안

### (1) 지자체의 환경개선 자금 지원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못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배출부과금 등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산업단지에 징수하는 오염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해당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과, 오염이 심각한 산업단지의 지역지원 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의 보조금이 일정정도 책정되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서의 지원사업과 같이 대규모 화학공단 등의 경우 가칭 환경안전보조금의 형태로 지자체에 특별 교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적발'보다 '지도'를 통한 산업환경 개선

향후 환경관리 점검·단속이 '위반 적발'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속'과 '처벌' 자체는 환경적 해결방안이 아닐 것이다. 대한상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이 '단속·처벌위주가 아닌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향후 지도·단속의 목표는 '적발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도'를 통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환경관리 점검·단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사전에방을 통한 환경성과의 측정기법 개발」, 「실질적 환경개선 성과달성 공무원의 포상」 등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3) 지자체 이관 후 중앙정부와의 업무 분장 명확화

환경부는 산업단지 내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대신 그동안 임의기구로 운영돼온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기동점검을 더

육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4대강 환경감시대와 지자체의 중복 점검·단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 및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 환경부서의 점검·단속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조례 등 지역 환경정책수립 시 기업의 참여도 제고

과규제자인 기업들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하지 못한다면 점검·단속권한의 지자체 이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 환경정책 수립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 지역 기업환경정책협의체를 이러한 지역 환경정책 수립과정의 정규주체로 선정하며, 모범업체의 점검·단속 경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5) 종합적 패키지정책으로서의 EIP사업 추진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시범생태산업단지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단지별로 폐기물의 처리프로세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기업간의 자원 및 폐기물 연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이다.

초기 미국의 EIP 프로젝트들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덴마크 칼론보르의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지역의 문화·경제적, 생태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가장 환경적·사회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적합한 전략을 채택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범생태산업단지 사업은 기업간의 부산물 및 폐기물의 순환연결고리 구축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개발과제에 제한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 사업을 환경부, 건교부, 노동부 등 범부처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나름대로의 환경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패키지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에코타운 사업의 경우 환경성과 경제 산업성이 지자체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및 부산물의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현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26> 친환경적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UNEP의 제안 기준

| 구 분     | 주 요 원 칙  |
|---------|--|
| 일 반 원 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예방의 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li> <li>● 통합(integration)</li> <li>● 환경 계획(environmental planning)</li> <li>● 생태적 설계(ecological design)</li> <li>● TQM(total quality management)</li> <li>●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 및 자원 회복(resource recovery)</li> <li>● 산업 생태(industrial ecology)</li> </ul> |
| 신규산업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 대상기업(potential clients)의 규정</li> <li>● 부지의 선정</li> <li>● 잠재적 환경영향의 평가</li> <li>● 잠재적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li> <li>● 부지의 설계</li> <li>● 개발밀도의 증대</li> <li>● 친환경적 건축방법의 사용</li> <li>● 환경적으로 적절한 기반시설의 설치</li> <li>● 운영계획의 수립</li> </ul>   |
| 기존산업단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환경영향 및 이슈의 평가</li> <li>● 환경관리목표의 설정</li> <li>● 환경관리 시스템 및 관리사업의 개발</li> <li>● 환경관리사업의 실행</li> </ul>  |

**(6) “환경홈닥터제”적극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기업환경지원**

중소기업은 많은 수가 다양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원과 정보 등 자체의 환경관리역량도 제한되어 있어 환경관리상 애로가 매우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지원책이 절실하다. 현재 환경부는 지역별로 환경관리의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홈닥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지도·단속, 기술진단 및 시설개선사업 등을 연계시킴으로써 오염의 효율적인 사전예방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원 역시 빈약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기업환경지원사업으로 홈닥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까지 136개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에 따른 애로사항 상담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업환경지원의 필요성과 단속과 처벌위주의 환경관리 방식을 아닌 실질적인

자율적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같은 기업환경지원시스템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또한 관의 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재원을 위한 예산 확대·편성, 학의 지속적인 환경기술지원으로 환경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전북내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해 경쟁력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27>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업지원 및 환경교육홍보사업실적

|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계       |
|----------|-------|-------|-------|-------|---------|
| 기업지원사업   | 10    | 25    | 41    | 60    | 136개 업체 |
| 환경교육홍보사업 | 10    | 19    | 37    | 30    | 96건     |

자료 : 전라북도, 환경백서, 2004.

### (7) 자율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자율환경관리제는 관, 기업, 민간부문이 바람직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협력력을 하거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환경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형태를 지칭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환경측면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 수단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관과 기업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환경개선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제 4 절 노사관계 제도

### 1. 노사관계 현황

#### 1) 노사분규현황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현황을 보면, 노사분규 선행지수로 볼 수 있는 노동쟁의조정 신청건수는 876건으로 전년 1,041건에 비해 14% 감소하였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320건으로 전년 322건에 비해 0.6%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158만여 일에서 129만여 일로 17.9% 감소하였다. 또한, 건당 분규지속일수도 30.2일에서 30일로 4% 감소하였으며, 불법분규발생건수는 66건에서 29건으로 5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분규참가자 수는 대형사업장의 분규로 인해 9만 3천여 명에서 13만 7천여 명으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노사분규 현황

| 구분 \ 연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 노동쟁의 조정신청(건)  | 711          | 731          | 630          | 850          | 862          | 1,036        | 1,096        | 1,041        | 876         |
| 노사분규 발생건수(건)  | 88           | 85           | 78           | 129          | 198          | 250          | 235          | 322          | 320         |
| 분 규 참가자수(천명)  | 49           | 79           | 43           | 146          | 92           | 178          | 88           | 93           | 137         |
| 근로손실 일 수(천일)  | 392          | 892          | 444          | 1,452        | 1,366        | 1,893        | 1,083        | 1,580        | 1,298       |
| 건당분규 지속일수(일)  | 22.6         | 28.6         | 22.7         | 26.1         | 19.2         | 30.0         | 31.7         | 30.2         | 29.0        |
| 불법분규 건수(비율 %) | 13<br>(14.9) | 13<br>(15.2) | 17<br>(21.7) | 55<br>(42.6) | 95<br>(48.0) | 67<br>(26.8) | 55<br>(23.4) | 66<br>(20.5) | 29<br>(9.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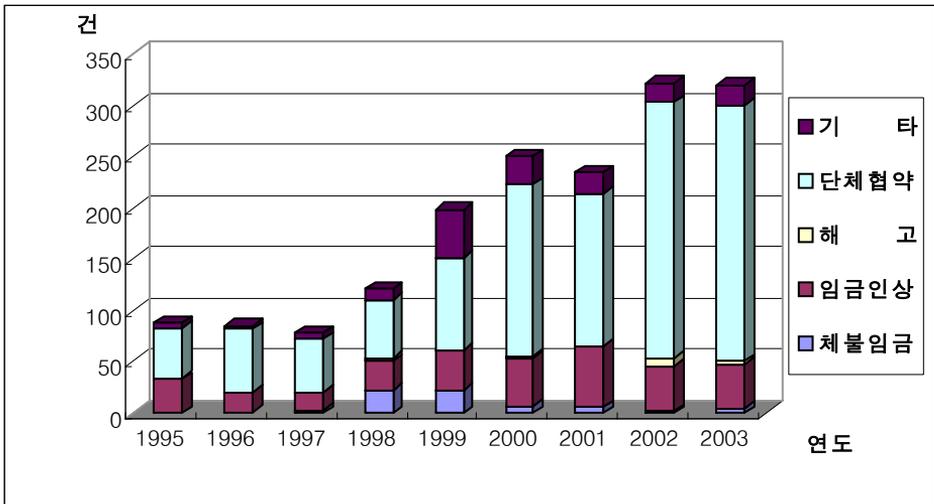
주) ( )는 전체분규건수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노동연구원, 2003.

분규발생 시기별로 보면 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노사관계 정책방향 탐색, 주40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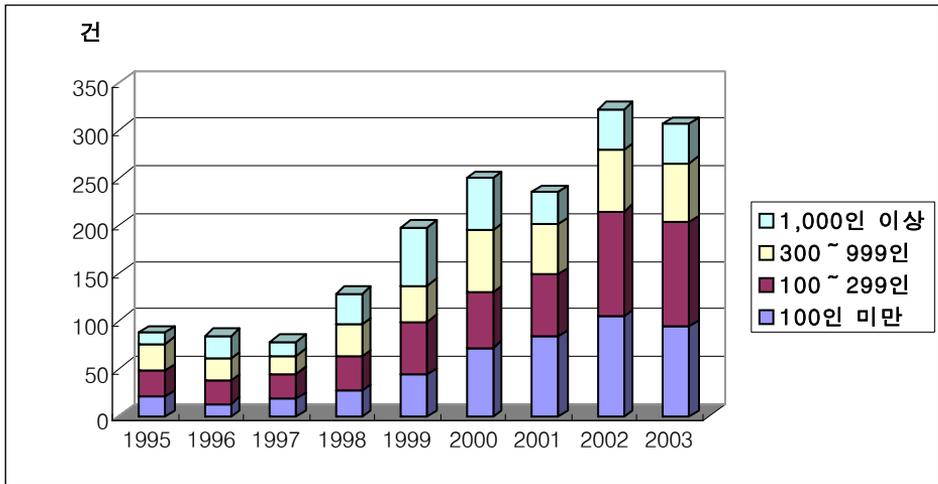
제 입법결정 지연 등의 영향으로 산별노조 중심의 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 등이 1개월가량 지연됨으로써 상반기에 124건의 분규가 발생한데 비해, 하반기에는 176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노사분규발생건수 320건 중 임단협 관련 분규건수가 292건, 91.2%(전년 293건, 91%)로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구조조정관련 3건(전년 8건), 체불임금관련 5건(전년 2건), 기타 20건(전년 19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4-5> 원인별 노사분규 발생 추이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분규발생건수는 41건, 12.8%(전년 43건, 13.4%) 500~1,000인 미만 사업장은 36건, 11.2%(전년 27건, 8.4%)가 발생하였고, 500인 미만 사업장은 243건, 75.9%가 발생하여 전년 252건, 78%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4-6> 사업체규모별 노사분규 발생 추이

노사분규발생건수 320건 중 서울·강원지역에서 44건(13.8%),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69건(21.5%), 대구·경북지역에서 73건(22.8%), 인천·경기지역에서 63건(19.7%), 광주·전라·제주지역에서 33건(10.3%), 대전·충청지역에서 38건(11.9%)이 발생하였다. 전북은 98년과 99년에 한 차례도 없었던 해를 제외하고는 2%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7건을 기록하였다.

<표 4-29> 지역별 노사분규발생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
| 전국 | 88           | 85           | 78           | 129          | 198          | 250          | 235          | 322          | 320          |
| 서울 | 18<br>(20.5) | 13<br>(15.3) | 18<br>(23.1) | 27<br>(20.9) | 45<br>(22.7) | 53<br>(21.2) | 40<br>(17.0) | 52<br>(16.1) | 31<br>(9.6)  |
| 강원 | 3<br>(3.4)   | -<br>(-)     | 2<br>(2.5)   | 2<br>(1.6)   | 4<br>(2.0)   | 4<br>(1.6)   | 2<br>(0.8)   | 6<br>(1.9)   | 13<br>(4.0)  |
| 부산 | 6<br>(6.8)   | 5<br>(5.9)   | 1<br>(1.3)   | 7<br>(5.4)   | 8<br>(4.0)   | 10<br>(4)    | 15<br>(6.4)  | 19<br>(5.9)  | 10<br>(3.1)  |
| 울산 | -            | -            | -            | -            | 10<br>(5.1)  | 9<br>(3.6)   | 16<br>(6.8)  | 12<br>(3.7)  | 14<br>(4.3)  |
| 경남 | 17<br>(19.3) | 21<br>(24.7) | 9<br>(11.5)  | 28<br>(21.7) | 27<br>(13.6) | 31<br>(12.4) | 20<br>(8.5)  | 28<br>(8.7)  | 45<br>(14.0) |
| 대구 | 3<br>(3.4)   | 2<br>(2.4)   | 1<br>(1.3)   | 6<br>(4.7)   | 7<br>(3.5)   | 13<br>(5.2)  | 9<br>(3.8)   | 12<br>(3.7)  | 43<br>(13.4) |
| 경북 | 5<br>(5.7)   | 3<br>(3.5)   | 5<br>(6.4)   | 6<br>(4.7)   | 11<br>(5.6)  | 17<br>(6.8)  | 16<br>(6.8)  | 25<br>(7.7)  | 30<br>(9.3)  |
| 인천 | 4<br>(4.6)   | 5<br>(5.9)   | 7<br>(9.0)   | 7<br>(5.4)   | 12<br>(6.1)  | 8<br>(3.2)   | 7<br>(3.0)   | 41<br>(12.7) | 15<br>(4.6)  |
| 경기 | 20<br>(22.7) | 16<br>(18.8) | 14<br>(18.0) | 21<br>(16.3) | 41<br>(20.7) | 49<br>(19.6) | 39<br>(16.6) | 56<br>(17.3) | 48<br>(15.0) |
| 광주 | -<br>(-)     | 1<br>(1.2)   | 1<br>(1.3)   | 1<br>(0.8)   | 2<br>(1.0)   | 5<br>(2)     | 10<br>(4.3)  | 8<br>(2.5)   | 12<br>(3.7)  |
| 전남 | 2<br>(2.3)   | 3<br>(3.5)   | 1<br>(1.3)   | 2<br>(1.5)   | 5<br>(2.5)   | 8<br>(3.2)   | 16<br>(6.8)  | 17<br>(5.3)  | 5<br>(1.5)   |
| 전북 | 2<br>(2.3)   | 4<br>(4.7)   | 2<br>(2.5)   | -<br>(-)     | -<br>(-)     | 7<br>(2.8)   | 7<br>(3.0)   | 8<br>(2.5)   | 7<br>(2.1)   |
| 제주 | -<br>(-)     | -<br>(-)     | 1<br>(1.3)   | 1<br>(0.8)   | 2<br>(1.0)   | 5<br>(2)     | 8<br>(3.4)   | 3<br>(1.0)   | 9<br>(1.0)   |
| 대전 | 4<br>(4.5)   | 4<br>(4.7)   | 5<br>(6.4)   | 2<br>(1.5)   | 8<br>(4.0)   | 12<br>(4.8)  | 6<br>(2.6)   | 8<br>(2.5)   | 7<br>(2.1)   |
| 충남 | 3<br>(3.4)   | 7<br>(8.2)   | 8<br>(10.3)  | 11<br>(8.5)  | 13<br>(6.6)  | 8<br>(3.2)   | 15<br>(6.4)  | 19<br>(5.9)  | 23<br>(7.1)  |
| 충북 | 1<br>(1.1)   | 1<br>(1.2)   | 3<br>(3.8)   | 8<br>(6.2)   | 3<br>(1.5)   | 11<br>(4.4)  | 9<br>(3.8)   | 8<br>(2.5)   | 8<br>(3.4)   |

주1) ( )는 전국 노사분규 발생건수 대비 백분율임.

2) 울산지역은 '99년부터 경남지역에서 분리 집계

자료: 노동백서, 2003.

## 2) 외국기업이 본 국내 노사문제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외국기업 유치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이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 확인되었다.<sup>12)</sup>

12) 전국경제인 연합회, (2003. 7). “전경련”.

<표 4-30> 국별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 및 노동손실일수 비교

|                           | 일본            | 말레이시아         | 대만            | 중국             | 한국              |
|---------------------------|---------------|---------------|---------------|----------------|-----------------|
|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 <sup>1)</sup> | 7.600<br>(1위) | 7.297<br>(2위) | 7.139<br>(3위) | 5.212<br>(20위) | 3.551<br>(30위)  |
| 노동손실일수 <sup>2)</sup>      | 0.321<br>(6위) | 0.325<br>(7위) | 0.021<br>(4위) | 0.001<br>(1위)  | 30.695<br>(2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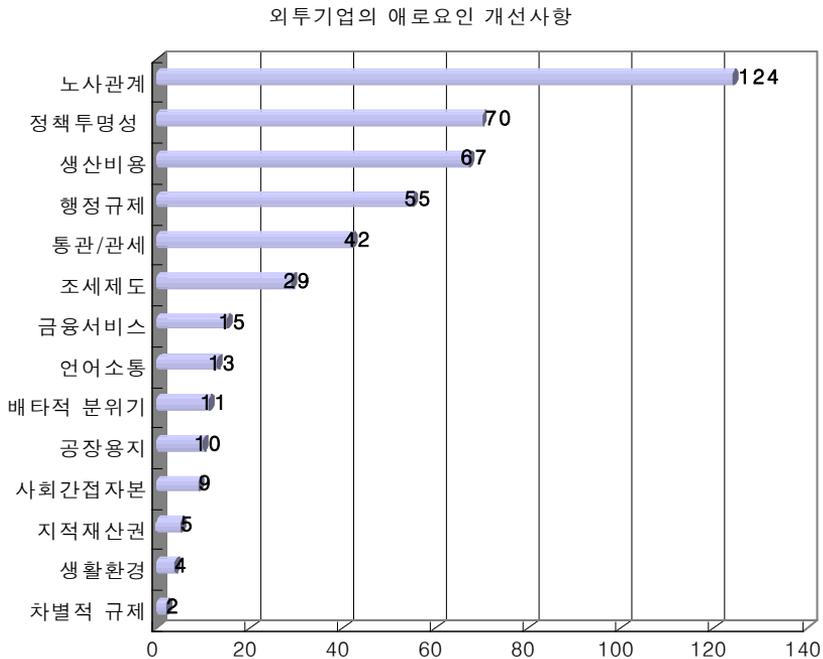
주 1) 노사관계가 생산적인가 적대적인가를 나타내는 지수

2) 1999~2001년 사이의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1,000명당 연평균)

3) ( )는 인구 2,000만 명 이상 30개 경제권 중의 순위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전경련”

또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에서 개선사항으로 노사관계라고 응답한 기업이 124개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 2003.

<그림 4-7>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요인 개선사항

노사갈등이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외국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도 인력조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노조가 임금, 근로조건 등의 문제를 넘어서 생산라인의 조정·변경, 인사·징계권 참여 등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까지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 해당 기업 노조가 반대하거나 고용보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최종결정이 지체된 사례도 있어서 노사관계에서의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외국기업들이 적응하는데 애로를 겪는다. 노조의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법적 처리도 지연되는 점도 문제이지만, 노사문제 발생시 노조 측은 노총 등 상급단체의 지원을 받지만, 외국 기업들은 중재기관이나 상급단체가 없어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 2. 노사관계제도의 개선방향

### 1) 적극적 예방과 조정

#### (1) 노사갈등 대응 방향

분규해결에 급급한 인위적 규제나 무원칙한 대응을 지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 해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 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쟁의 발생시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적조정과 함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지역차원의 중재노력을 강화하여 파업 장기화 방지에 노력한다.

또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불법을 하면 반드시 손해가 따른다는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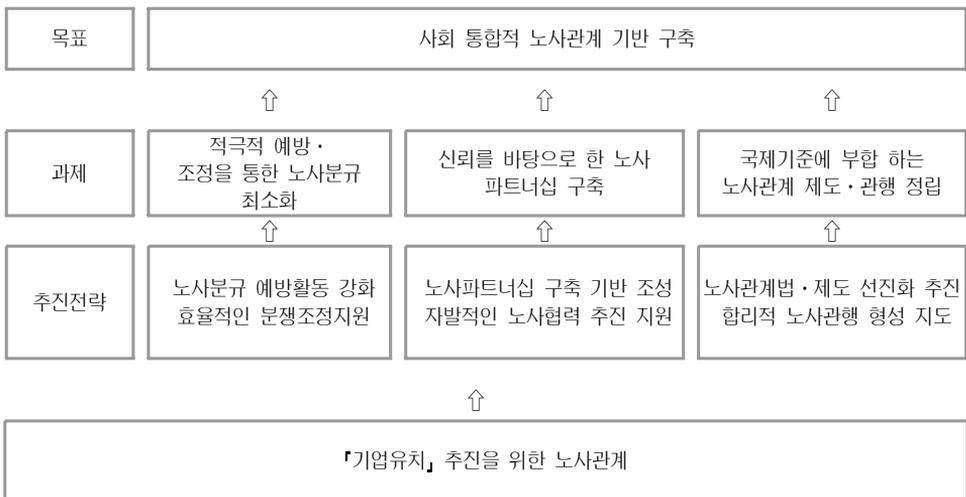
#### (2) 전라북도 노·사·정 조정 지원 센터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구성·운영

하는 등 집중 지원을 하고 노사갈등의 예방 및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노사파트너십 종합매뉴얼』 배포(CD, 안내책자 등)를 통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모델을 제시한다. 산업단지에 노사조정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지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를 병행한다.

### (3) 전라북도 노사관계 수습 지원단 구성

노사조정사무소와 지방노동관서간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분규수습 및 조정능력을 제고시킨다. 대형·장기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수습지원단』 및 현장 지도반을 편성·운영하여 분규의 조기 해결을 지원한다.



<그림 4-8> 기업유치를 위한 노사관계

## 2)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 (1) 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노사협의회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실태 점검·지도, 교육·홍보활동 등을 전개해 나간다.

노동교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산업현장의 변화, 교육수요와 노사관계에 특성에 맞게 교육대상 확대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하도록 한다.

## (2) 사업장 내 노사협력 프로그램 개발

노사가 생산성 향상, 노사갈등 해소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함으로써 협력분위기를 강화시키도록 한다.

노사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사업장을 작업장혁신 시범사업장으로 선정·지원(각종 자료·컨설팅 제공 등)하고 정책토론회·노사화합행사 개최 지원 및 각종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노사협력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일선 노조간부·근로자 등 현장 중심의 노동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 3) 사업장 내 직무혁신 시스템 구축

국제기준에 맞게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강화하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실태 분석 및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사가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행,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가압류 청구권 행사 등 관련, 노사관행을 합리화시킨다.

연초 물가상승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은 자제, 노사협력으로 생산성을 혁신하여 그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토록 유도하여 생산성 및 성과에 기초한 임금결정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임금과 직무 혁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규모별 등 근로자간 불합리한 임금격차의 시정을 유도하고 임금유연화에 상응하여 취약계층 보호정책은 더욱 내실화하여 최저임금제, 임금체불예방 및 임금채권보장제도 등 취약근로자 임금 보장 제도를 내실화하면서 수혜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 4) 지역 파트너십에 의한 인적자원개발

### (1) 전략산업과 인력개발 간 연계체제 시스템 구축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효율화하는데 있어서나 지역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역전략산업과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 사업간 연계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역량강화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수적이며 인

력개발 및 직업훈련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파트너십은 산학연간의 연계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이 실질적으로 안정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업들 간의 연계는 지역 주체들이 서로의 다양하고 때로는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파트너십의 구축을 촉진한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과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 사업간 연계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역파트너십 프로그램개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연계사업이 지역파트너십에 의해 수행된다고 할 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미국의 위스콘신 경우처럼 노사가 자발적으로 파트너십을 먼저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지역파트너십의 정착과 연계사업의 시행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앞서서도 검토하였듯이 지역차원에서 노사대표조직의 대표성과 조직력이 미약할뿐더러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할 만큼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역파트너십의 구축과 연계사업의 시행에 있어 정부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과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을 연계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역의 주요활동 주체인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적극적 유도하여 사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노사의 참여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노사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을 개발, 제안하고 시행과정에 있어서 보다 창조적으로 개입하게 하여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특히, 노사의 참여와 협력은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의 지향이 점차 지식기반산업과 지식노동자의 양성에 있다는 정책지향과 부합된다.

연계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노사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결정권한의 공유는 노사정간의 지역파트너십을 정착하게 된다. 노사정은 지역파트너십의 정착이 다시 연계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낳고 그러한 성과가 지역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한편 동시에 악순환에 대해 경계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한다.

지역파트너십의 모범사례 개발과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한 연계사업의 수행은 우선적으로 현재 조직되어 있는 지역협의회간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는 지역전략산업사업과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사업의 공통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역량강화를 위한 지역파트너십 모범 사례를 공모하고 선택된 사례에 대해 우선적인 행정적, 예산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모방식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개별 주체들의 협력을 꾀할 수 있어 고용,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통합 분야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전파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지역파트너십에 의한 프로그램의 공모와 선출, 운영,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개되어 사업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하여 예산과 사업수행의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감시는 지역파트너십에 의한 사업수행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다 강화하여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 5 장

## 기업유치 추진 전략

- 제 1 절 국내기업 유치전략
- 제 2 절 외국기업 유치전략
- 제 3 절 벤처기업 유치전략
- 제 4 절 창업보육 활성화 전략



# 제 5 장 기업유치 추진 전략

## 제 1 절 국내기업 유치전략

### 1. 기본전략

전라북도는 향후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대기업 위주의 종합적인 유치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가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차원에서 인력, 자금, 사회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일과 함께 기업을 유치하고 정착·성숙하는데 필요한 입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세제·금융 등의 소프트한 지원과 함께 입지기반 등 물리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입지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요지향적인 유치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전라북도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기초한 시장주도형 정책수단을 전라북도 주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업 유치정책을 연계 및 조정하는 기능을 제고한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유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 간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에게 필요한 유치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업종별 입지정책의 연계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 집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집적지구 조성사업이나 첨단산업단지,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과 함께 재정, 금융, 인력확보, 기술진흥, 마케팅,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와 토지, 건물, 기반시설 등 하드 인프라를 포괄하는 통합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  |  |   |
|-------|--|--|---|
| 구분    | 주요 내용  |  |   |
| 목표    |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  |   |
| 기본 방향 | 수요 지향적<br>유치정책 추진  | 다양한 유치정책<br>연계·조정  | 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  |
| 추진 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대기업 수요 대응적 유치정책</li> <li>· 기업활동 특성을 고려한 입지정책</li> <li>· 성장단계별 유치정책 추진</li> <li>·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치정책</li> <li>· 업종별·성장 단계별 특성이 조화된 시책추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간·시책간 연계기능 강화</li> <li>· 지원기관 위원회, 민간위원회 구성</li> <li>· 중앙과 전라북도간의 역할 정립</li> <li>· 각 시·군 중심의 기업 육성</li> <li>· 각 시·군 기업 유치 총괄 기구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지정방식활성화</li> <li>· 기업 직접지 공급</li> <li>·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국민임대사업단지, 기존산업단지재정비활용</li> <li>· 기업지원종합서비스기관 설치</li> </ul> |

<그림 5-1> 국내기업 유치정책의 추진시책

## 2. 세부 추진전략

### 1) 수요 지향적 유치정책 추진

전라북도에서 기업이 유치·정착·성숙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수도권 및 타 지역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 또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의 자금지원이나 금융지원을 차별화하되 전라북도 입지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한다. 특히 전라북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기업에게는 분양가 인하 등의 특별 입지지원을 하도록 한다.

#### (1) 유치정책에 기업의 기능적 특성 고려

기업은 연구와 생산이 분리되거나 혼합되어 수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연구기능이나 응용기능을 주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생산기능이 주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활동 특성에 따라 유치지원정책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공학연구센터, 지

역협력연구센터 등을 지원토록 하며 응용단계기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진흥시설 등의 유치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생산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국가 및 지방), 아파트형 공장, 집적지구 등의 입지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표 5-1> 기업 활용 유형별 입지시책

| 구분    | 연구기능   | 응용기능  | 생산기능  |
|-------|--|---|---|
| 주요 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li> <li>· 공학연구센터</li> <li>· 지역협력연구센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크노파크</li> <li>· 창업보육센터</li> <li>· 진흥시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국가 및 지방)</li> <li>· 농공단지</li> <li>· 집적지구</li> </ul> |

## (2) 성장단계별 유치정책 추진

기업은 성장, 쇠퇴, 소멸, 재생 등의 수명주기를 나타내며 성장률이 짧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유치 시 수명주기를 감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성장단계별 입지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 입지시책 중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책들이 성장단계에 적합하도록 집행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창업단계에는 인력확보, 금융지원 등의 소프트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정착 또는 성숙기에는 마케팅 및 시설지원(예: 집적지 제공 등)과 같은 물적기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에 적합한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 (3)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치정책 추진

정보통신사업, 생물산업, 문화산업, 환경산업 등 지식기반기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입지시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정보통신산업은 전문기술인력 확보 지원, 생물산업은 재정 및 시설지원, 문화산업은 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지원, 환경사업은 기술지원, 장비지원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입지시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 집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산업은 자동차부품(군산, 전주), 기계(전주, 김제), 생물(전주, 정읍, 군산)과 기존 특화산업인 귀금속·보석·니트(익산)등이며, 업종별 유치정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역 산업집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 (4) 업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조화한 유치정책 추진

업종별 특성뿐만 아니라 성장단계별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입지시책을 추진한다.

첫째,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창업기에는 정보통신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시설(건물)이나 지구단위의 입비정책을 추진토록 한다. 성장·성숙기에는 일정 지역 내 집적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거나 단지로 개발하여 소프트한 인프라와 하드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둘째, 생물산업의 경우 창업기에는 생물산업 특성을 살려 연구시설과 실험분석, 테스트 장비 등의 물리적 시설과 이를 수용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입지기반을 제공한다. 한편 정착·성숙기에는 창업 후 사업화 단계인 정착기에 이르는데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이 주도하는 공사형태의 지원기관을 설립하며, 신기술실용화를 위한 생산시설(단지, 건물), 공동연구단지, 기술 공급거점 등을 제공한다.

셋째, 문화산업의 경우 창업기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유사하게 소규모의 개인적인 단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정보통신인프라 공급을 통한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이에 비해 정착·성숙기에는 아이디어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대량생산 시설을 갖춘 건물, 시연 및 공연할 수 있는 공간, 마케팅·법률서비스·상담을 위한 공간 등을 갖춘 단지형태의 입지를 지원한다.

넷째, 환경산업의 경우 창업기에는 기술을 실험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인접한 입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실험시설 등을 갖춘 건물형태의 입지를 지원한다. 한편 성장·성숙기는 기술의 실용화 단계로서 독자적인 연구시설이나 대량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바, 단지형태의 입지를 지원한다.

기업의 업종별·성장단계별 입지시책을 기존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업종별 · 성장단계별 지원부서

| 구 분        | 산업특성                                    | 성장단계별 지원부서  |  |
|------------|---|---|--|
|            |   | 창업기   | 정착·성숙기   |
| 정보통신산업(IT) | IT제조와 서비스 포함                            |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 시설<br>-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br>-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 - 건설교통부: 도시첨단 산업단지<br>-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단지                            |
| 생물산업(BT)   |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바탕, 생산 및 서비스 산업            | -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움<br>-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br>- 산업자원부: 신기술창업보육사업             | - 건설교통부: 산업단지<br>-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 과학연구단지<br>- 산업자원부: 지역기술혁신센터       |
| 문화산업(CT)   |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                  |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시설<br>-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지구                                      | - 건설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br>-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단지·문화지구<br>- 산업자원부: 디자인혁신센터(DIC) |
| 환경산업(ET)   | 환경오염 실태 측정, 오염상태 개선에 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제공 산업 | - 중소기업청: 산학연공동개발콘소시움<br>-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단지(TP)기술혁신센터<br>- 과학기술부: 지역협력연구센터 우수연구센터 | - 건설교통부: 산업단지<br>- 산업자원부: 산업기술단지                                   |

## 2) 다양한 유치정책 연계 · 조정

### (1)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개발

현재까지 지역 개발과 기업 관계는 협력 보다는 종속 또는 견제 형태를 견지해 왔다. 지역개발은 공공성 유지를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과 철저히 영역을 구분하고 갑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다. 지역이 공공성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토지이용, 기업여건 개선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왔다.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도 받게 되어 정책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지역 및 기업 이기주의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기업 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입지가 제약을 받거나 이와는 반대로 지나친 이윤 추구 목적으로 특정지역만을 고집하는 기업도 발생했다.

이렇듯 지역과 기업이 서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뢰 부족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불신감 조성된 것이 사실이다. 기업은 지방 정부를 단순한 인허가권자로만 인식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기업은 특혜 대상 내지는 지나친 이익추구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지자체의 기업 유치는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과 기업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 정부의 무리한 기업 유치 경쟁 보다는 지역과 기업간 역할 분담 등으로 상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기업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명도가 높은 기업 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제공한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돕는 차원에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운영, 산학연계 프로그램, 연구소 운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산·학·관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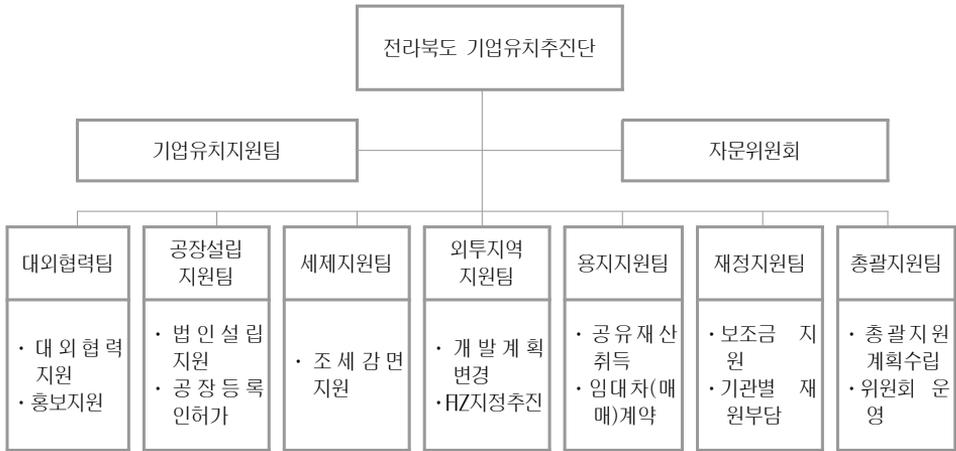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프로그램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면 이 또한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지역행사에 기업참여 등 소프트 한 측면에서의 지역과 기업의 협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 전라북도 투자 의향 기업의 리스트 관리
- 핵심 타깃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대상 발굴, 상담내용, 요구사항 등)

## (2) 기업유치전문기구 운영

기업유치와 관련된 지원은 유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즉 당해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역에 유치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은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타 기관과 정책이나 의견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유치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효율성, 유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한 개방형 인사제도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인력도 교육훈련을 통해 유치 전문가로 양성하여 고정 배치해야 할 것이다.



주: 자문위원회는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과 함께 민·관·산 협의체 등으로 구성.

<그림 5-2> 기업유치 추진 시스템

### (3) 산·학·연 기업유치 협력 센터

투자 유치는 지자체의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협력을 도출하여 모든 구성원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즉, 지역주민,상공인, 노동계, 지방정부,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기업 유치를 통한 전북의 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발전 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전북지역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은 각자 해당분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실천을 행하여 유치기업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와 엘라베마 예처립 지역 대학은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든지 또는 대학이 보유한 지적자산을 산학협력을 통해 상품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장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부기관·대학·금융기관·기업 등 전라북도 기업유치협력 네트워크 구축

#### (4)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투자유치는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는 투자관련 제도 정비, 규제완화 및 국가 이미지 등을 집중관리하고 전라북도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간의 관련법규와 내규, 관행의 불일치로 인한 기업유치의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라북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북도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기업유치와 연계시키는 중앙정부의 산업관련부서와 협조시스템 구축

#### (5) 차별적인 기업유치 전략 수립

현실적으로 전라북도는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이 비용절감과 현지화를 경영목표로 세우고 있어 해외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대상 기업은 시장 지향적인 제조업 중 조립형 기업이 될 수 있으나 라이프사이클 단축과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빠르게 기술 집적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만의 확실하고도 차별적인 비교 우위적 입지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식기반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고기술 집적형의 일부 IT업종을 제외한 단순조립업체의 경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따라서 핵심부품개발, 고객 니즈(needs) 충족형 제품개발, 전통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업종구조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연협력사업과 구조 고도화 사업은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대학에서도 현장 실무형 전문인력 공급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지역

과 같이 공생한다는 자세와 각종 지역협력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기업밀착형 행정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단지 분양가를 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원 기숙사나 연수원을 건립토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의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투자와 비용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적의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비교 우위적 요소의 발굴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 핵심전략산업 :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 준전략산업 : RFT(Radio Fusion Technology: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 물류산업

### 3) 기업유치 기반시설 조성

#### (1) 기업 집적 지구 조성

기업은 집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의 집적을 촉진하는 한 방안으로써 기업 유치 위한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지구지정은 기존의 기업이 어느 정도 집적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지구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지역혁신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과 정보통신 인프라 등의 물리적 기반을 지원한다.

<표 5-3> 집적지구지정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 가능성이 높은 지역</li> <li>· 산업단지, 개별입지 기업, 혁신센터·테크노파크 등 혁신관련 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포괄</li> </ul> |
| 지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산업의 집적 및 전문화 정도</li> <li>· 대학·연구소·기반시설의 구축 정도</li> <li>· 지자체의 집적지구 조성의지 등 고려</li> </ul>           |
| 지원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환경 정비, 기반시설 확충,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연관기업 집적유도, 행정규제 간소화 등에 중점 지원</li> <li>· 물적·비물적 기반 지원</li> </ul>      |

## (2) 전라북도 T 지형 광역 클러스터 구축

기업유치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거적인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질적 팽창을 위한 접근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발전전략에 따른 신산업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의 입맛에 맞는 투자여건은 해당지역이 산업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만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투자유치 전략산업도 기존산업과 연관성이 크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타 것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 집중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치된다면 타 지역의 국내기업도 해당지역으로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북은 자동차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어 전주-익산-군산을 있고 익산-김제-정읍을 잇는 T자형 자동차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부품 및 기계산업의 클러스터화를 위한 이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유치가 절실하다.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정보지원체제 구축
  - 경영/기술 콘텐츠 생산에 중점
  - 산업체 밀착성과 다양성을 통해 정보수요 충족
  - Inno-Cafe 운영 지원
- 산업단지 클러스터 정보수요조사
  - 인력, 기술 등 정형화된 DB수집
  - 기업체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 e 클러스터 정보지원체제 완성
  - 전문인력 Pool운영 등 자원과 정보의 생산/제공
  - on off상에서 지원 가능한 최상의 기술 지원 체제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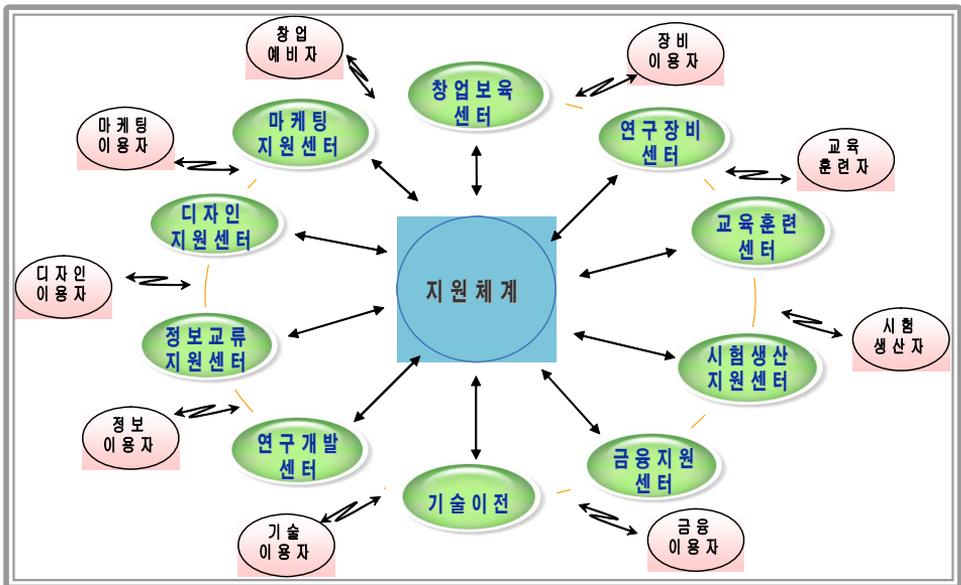
### (3) 사후관리지원 센터 설립

기 투자한 기업인의 한마디가 신규투자자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즉, 투자자의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이 전라북도 지역에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은 기 진출한 자국기업 경영자의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라북도에 대한 직접투자는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투자유치를 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좋은 사업 환경을 만들어 재투자자를 유인하거나 관련기업의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 이후부터 실행과정 및 투자이후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이후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해 주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5-3> 전라북도 투자기업의 지원 체제

○ 기업 ombudsman(Ombudsman) 및 홈닥터(Home Doctor) 제도 운영

- 투자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신속해결
- 정기적인 투자기업 현황조사 실시
  - 생산활동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실시
- 기존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전담제 운영
  - 입주업체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제 운영제도 도입
- 전담제 운영에 따른 민원사항의 일괄처리
  - 기업지원, 투자환경, 노사·인력 등
- 입주업체 타 지역 이전방지 대책마련
  - 각종 민원행정 쿼서비스제도 도입
- 입주업체와 입주할 업체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
  - 각종 세제감면 및 행정지원사항 등 균형적인 지원

## 제 2 절 외국기업 유치전략

### 1. 기본 전략

외국기업 유치는 고용창출, 경기회복의 단기적 경제효과 뿐 아니라, 전라북도가 동북아 중심 국가 등 비전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투자를 보완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낙후된 전라북도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는 특히 기술이전에 의한 첨단제품 수출촉진 효과가 탁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라북도에 생산 및 R&D거점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거론되는 정책 대안들은 인력, 투자인센티브, 규제 그리고 전체적인 기반 시스템적인 면 등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우선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외국기업 유치는 성장 동력 재점화와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렛대이며, 양적 성장에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외국기업의 니즈, 국가 비전·전략, 전라북도의 강점을 감안하여 외국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과의 연계, 전라북도 전략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목표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외국기업의 유치'로 설정하여 양 위주의 외자유치에서 탈피하여 질 위주의 기업위주의 유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첨단산업의 기업들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는 한편,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 금융, 정보서비스업 등의 투자도 동시에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 및 투자입지매력도 결정요인, 투자 형태에 따라 전북의 바람직한 외국인투자 유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기업의 M&A형 투자보다는 공장신설형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유치해야 한다. M&A형 투자는 기존의 공장시설 및 고용인원을 그대로(오히려 인수 후에는 생산효율성을 위해 인원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인수하여 그 만큼 신규로 생산시설 및 고용창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특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정 산업개발, 즉 전북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육성을 유도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교육, 문화 등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북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매력요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북이 직접 외국인투자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SOC프로젝트개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이다. 도로, 교량, 항만 등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은 물론 관광단지나 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개발사업도 투자유치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개발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개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특히 주목하여할 분야이다.

|       |   |   |   |   |
|-------|---|---|---|---|
| 구분    | 주요 내용   |   |   |   |
| 목표    |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   |   |   |
| 기본 방향 | 고급인력 양성   | 외국투자기업 유치 전담조직 구성   | 투자유치 지식관리시스템  |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
| 추진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술원 분원 유치로 인력양성</li> <li>·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li> <li>· 투자유치 PM 육성</li> <li>· 여성 및 외국인 인력양성</li> <li>· 공동 인력양성체계</li> <li>·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관련 교육프로그램</li> <li>· 투자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성</li> <li>· <b>외국인투자제도, 투자상담기법, 정책개발</b></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관련 기관 실무자 중심 네트워크 구축</li> <li>·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정보 및 업계 동향관리</li> <li>· 핵심 타깃기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관리</li> <li>· 투자관련기관 DB화로 정기 평가·점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환경 개선지구</li> <li>· 빌리지 조성</li> <li>·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센터, 의료, 교육 및 위락시설 확보</li> </ul> |

<그림 5-4> 외국기업 유치정책의 추진시책

## 2. 세부 추진전략

### 1) 고급인력 양성

고급인력 양성, 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해 경제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 유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급인력을 양성

하고 성숙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안정, 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제공만으로는 외국인투자의 흐름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경쟁국과의 차별화가 곤란하며 자칫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육투자 확대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외국인이 선호하는 고급인력을 양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업이 R&D 및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화 인력 풀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기존 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형성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국제 분업 체제 내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이 전라북도에 입지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네트워크의 한 축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생산기술원 분원 유치를 통한 분야별 핵심인력의 양성
- 산·학·연 협동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혁신 창출 인력양성
- 투자유치 ‘프로젝트 매니저’ 육성
- 여성 및 외국인 인력양성
- 전략산업 분야의 공동 인력양성체계 확립
- 기업유치 현장경험과 투자유치 전문가 인력 양성

## 2) 외국기업 유치 전담조직 구성

신속한 의사결정이 외자 유치의 경쟁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유치 관련 결정이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 권한을 위양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 위양, 보상 강화를 통해 기존 유치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관련 기능을 전문화하고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절차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고객지향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지역·기관·개인의 유치 성과에 따른 보상을 부여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성원이 투자유치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앙과 전라북도와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재정자금 지원을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역할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산업 및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지자체 주도로 전개해 나가야 짜임새와 신속성을 갖춘 체제가 된다.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홍보하고 지자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억제하며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인프라 확충(도로, 용수, 오페수 시설)등 지원요건을 조기에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수요와 입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한다.

더불어 탄력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을 위해 현금보조 제도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진출 희망 외국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SOC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다.

- 외자유치추진 담당자 교육기회 확대
- 외국인투자제도, 투자상담기법, 정책개발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고급정보에의 접근성 제고 및 정보관리
- 다국적 기업 해외투자 동향, 차세대 산업, 산업기술발전 동향 등의 정보를 관리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적 미팅, 정보 분류 및 체계적 축적 등에 주력

### 3) 전라북도 「투자유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고군분투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결말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필요로 하는데 수직적인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준 정부조직 및 비정부기관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으면 법규 및 제도상의 규제완화, 절차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조세감면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조치만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를 어떻게 세우냐 하는 문제가 투자유치 촉진의 관건이다. 신규생산설비를 도입하고 경영권을 소유하는 직접투자의 유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제반 경영환경 및 지역적 인프라가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되므로 원자재구입, 시장개척, 양호한 노동력의 확보가능성, 종업원의 주거환경, 노사문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외국인에 대한 인식 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현행 제도상의 투자유치 체계에서 투자유치 협상의 접점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내의 Invest KOREA와 지방자치단체이다. Invest KOREA는 국내 외국인 투자 전문기관으로서 KOTRA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이래, 공식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 간에 투자유치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조건,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기준, 조세감면 대상 업종기준, 원스톱체계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관리체의 형성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국내외 투자관련 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정보 및 업계 동향관리
- 각종 채널을 통해 파악된 잠재 투자기업의 리스트화 관리
- 핵심 타깃기업에 대한 체계적 정보관리(대상발굴, 상담내용, 요구사항 등)
- KOTRA 현지무역관 114개소 및 본사,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해외현지상공회의소, 주요 해외투자기업 및 컨설팅 업체등과 네트워크.

#### 4)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센터

기업 및 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복합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 등은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매력적 요인들로 유치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업이 입주하고 공장이 신설될 경우 많은 현지인들이 이주하게 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지원제도나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투자자들은 공장입지 대상 지역의 삶의 질, 교육 및 연구기관의 근접성, 문화기반시설 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민기, 2001: 113). 따라서 전북 지역의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해서 생활환경 우수성 및 일정기간 동안의 무료 이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산업단지 내 외국인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외국 기술인력 정주지구 조성
- 인근 도시와 연계한 빌리지 조성
- 외국인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컨벤션 센터, 의료, 교육 및 위락시설 확보

<표 5-4> 외국인투자기업 직원 생활환경 애로사항

| 분 야    | 주요 애로 사항  |
|--------|---|
| 교육     | 우수학교 부족, 교육비용 과다, 학교시설 열악                       |
| 주거     | 관행에 의한 임대차 계약처리, 월세전액 선불요구, 주거관련정보 부족           |
| 의료     |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불편, 의료비용의 차별적 적용, 외국인 진료병원 육성책 부재     |
| 교통     | 교통질서 및 법규미준수, 난폭운전, 교통혼잡, 주차장 부족,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 |
| 출입국    | 단기체류 비자부여, 출입국 심사 장시간 소요, 외국인 등록번호 인지도 미약       |
| 문화, 통신 | 외국어 방송부족, 외국인종합생활·문화 안내정보 부족, 카드발급·전화가입곤란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 제 3 절 벤처기업 유치전략

### 1. 기본전략

현행의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벤처기업은 형식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벤처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 벤처기업의 기술 지식능력에 있어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평가체제를 갖추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건전한 벤처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북도가 독자적인 벤처평가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현재의 벤처인증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작업이 필수적이고, 일반신용평가기관이나 컨설팅업체의 벤처평가방법과는 다른 평가모형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벤처집적시설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 시 지식기술 확산과 같은 지역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식화된 벤처평가체제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 민간이 중심이 되는 평가체계 확립
- 벤처확인관련 행정절차 on-line화
- 불법부당기업에 대한 벤처기업 확인취소 제도화
-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관련 민간단체 역할 제고

|       |   |  |  |   |
|-------|---|--|--|---|
| 구분    | 주요 내용   |  |  |   |
| 목표    | 포괄적 지원을 통한 기업 유치  |  |  |   |
| 기본 방향 | 투자펀드 설치운영   | 사업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 전략산업과 연계시스템 구축   | 벤처육성지구 운영평가시스템  |
| 추진 시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확대</li> <li>시장기능 중심의 재간접 투자펀드 설치·운영</li> <li>선진 벤처캐피탈 제도 시범 운영</li> <li>자산운용 건전성 확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촉진지구 벤처지원 사업서비스 지원 센터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벤처기업의 아이템의 조속한 사업화 촉진</li> <li>우수 벤처기업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내로의 유치 촉진</li> <li>지역 내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가속화</li> <li>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지원 확충</li> <li>운영 내실화</li> <li>기업가 정신 함양 창업교육 활성화</li> <li>신기술 타당성 평가사업 추진</li> <li>공장형 태로의 전환</li> <li>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수요자 위주 창업지원 자금</li> <li>기술집약형 창업 벤처기업 장려</li> <li>신시장 창출</li> </ul> |

<그림 5-5> 벤처기업 유치정책의 추진시책

## 2. 세부 추진전략

### 1) 전라북도 투자펀드 설치·운영

전라북도 내에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투자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불리한 형편이다. 현재, 수도권의 테헤란 벨리에 집중된 창업 투자가 전라북도지역의 벤처기업을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 투자유치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벤처투자자금의 9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이 자금의 80%가 테헤란벨리 및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 전문성 없이 6개월가량의 투자 후 코스닥 등록으로 돈을 버는 머니게임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지방 벤처업체의 잠재가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전라북도 벤처집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뿌리내린 지역밀착형 벤처금융 육성이 시급하고 일차적으로 벤처기업과 투 용자기관간의 상호연결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벤처금융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엔젤 클럽 형성 지원, 공공의 초기지원 후 민간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 익산, 군산 등 벤처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 투자사 입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전라북도와 지역벤처기업 공동으로 벤처캐피탈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벤처캐피탈은 유망 벤처기업의 코스닥 시장 성장 지원, 투자 후 기업가치를 높여 자금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지역벤처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마케팅 등 경영 지원까지 총괄적인 지원을 수행함이 필요하다.

-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확대
- 벤처캐피탈 유동성 증대를 위한 제2금융권 유통시장 조성
- 시장기능 중심의 재간접 투자펀드(Fund of Funds) 설치 · 운영
- 펀드매니저 중심의 선진 벤처캐피탈 제도 시범 운영
- 벤처캐피탈 자산운용 건전성 확보

## 2) 벤처촉진지구 사업지원 서비스 센터 설치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벤처지원 사업 서비스 시장의 발달은 60여년에 걸친 벤처산업의 발전과 관련기능의 집적이 이루어낸 결과로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우나 벤처생태계 발전에 필수적이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벤처지원서비스가 민간 사업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벤처지원서비스 기능은 점차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라북도 내 벤처육성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벤처지원사업서비스 기업의 입지를 유도하고, 벤처캐피탈, 법률서비스, 경영컨설팅, 헤드 헌팅서비스 업체들이 벤처등록기업이 아니더라도 벤처집적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체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 벤처촉진지구 벤처지원 사업서비스 지원 센터 설치

## 3) 벤처기업과 전략산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

전라북도 내 벤처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되고 체계화한 육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작정 단지만 만들어서 업체를 입주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의 기존성격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지연 및 전략산업과 유기적 연관을 고려한 차별화한 정책이 필요하다.

벤처기업과 지역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로 지역에 뿌리내린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 제고: 공동연구그룹 조직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복수의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상업화, 기술혁신, 제품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특화기술의 벤처기업화 지원: 기업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기술의 상품개발, 디자인개발, 수요 판로개척 등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혁신 및 이전센터 건립: 전문화된 지식 정보제공기관 설립, 벤처집적지의 지식 정보창출 및 확산의 구심역할을 수행되어야 한다.

- 벤처기업의 아이템의 조속한 사업화 촉진
- 우수 벤처기업의 산업단지 클러스터 내로의 유치 촉진
- 지역 내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 가속화
- 우수 창업 아이템에 대한 집중 기술지원

#### 4) 벤처기업 육성지구 운영 평가 시스템 구축

##### (1) 단기과제

민간벤처집적시설의 분양률 또는 임대율을 높이고 입주 벤처업체들의 기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예관한특별조치법에 빌딩이 포함되어야 할 기본시설과 임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민간벤처빌딩에 입주할 기업에게 세제관련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서비스 확충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운영 내실화
  - 벤처생태계 조성 위한 산·학·연관 간 유기적 협조 유도
  - 기술·경영·자본 관련 인적네트워크(human network) 구축

##### (2) 중기과제

벤처기업육성예관한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발달 정도에 따라 이후 벤처기업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용자 조세감면 위주의 직접지원을 축소하고, 벤처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이양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조치법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에 대비하여 도 및 시 군차원에서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창업교육 활성화
- 신기술 타당성 평가사업 추진
- 연구형 BI(business incubator)에서 공장형 BI로의 전환
-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산·학 협력단)
- 창업지원 자금을 수요자 위주로 대폭 개선
- 기술집약형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 벤처기업 신시장 창출(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등)

## 제 4 절 창업보육 활성화 전략

### 1. 기본전략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정책은 그 동안 중소·벤처 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함과 아울러, 최근에는 고용창출, 매출증대, 지적재산권 획득, 산·학·연 연계기술개발 과제 수행 등에 있어 높은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발전패턴으로 볼 때,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양적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보육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기업의 재도약과 21세기형 신산업 창출 및 신규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간 중복·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보육정책의 체계화 및 중소기업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둘째, 향후 창업보육정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셋째, 창업보육정책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구분       | 목표                           | 기본방향                     | 추진시책  |
|----------|------------------------------|--------------------------|---|
| 주요<br>내용 | 포괄적<br>지원을<br>통한<br>기업<br>유치 | POST-BI 업체의<br>지원 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t-BI 업체중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 입주</li> <li>· Post-BI 업체의 선도기업 육성지원</li> </ul>  |
|          |                              | TBI 지원 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 기술, 정보 등 공유</li> <li>·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TBI사업에서 지원</li> <li>· TBI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장비활용, 기술정보제공, 교육 등은 지역의 소재 대학이 신기술 창업지원</li> </ul> |
|          |                              | 중소기업지원과<br>연계 프로그램<br>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자금으로 확보·지원</li> <li>·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우선 지원</li> <li>· 협동화사업 등을 통한 입지 지원 방안</li> </ul>                                    |
|          |                              | 창업보육센터의<br>생산형으로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전환(연구형→생산형)</li> <li>·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확장·건립 지원사업 재검토</li> </ul>   |
|          |                              | 신기술 집적단지<br>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POST-BI업체 유치 위한 신기술 집적단지 조성</li> </ul>  |
|          |                              | 창업보육센터<br>네트워크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TIC, TP, RRC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li> <li>· 시설, 기자재 및 인력의 공동 활용 추진</li> </ul>  |

<그림 5-6> 창업보육정책의 추진시책

## 2. 세부 추진전략

### 1) POST-BI 업체의 지원 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초기단계 기업을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각종 보육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생존율은 보육센터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69.5%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생존율(보육센터졸업 후 5년 이내) 80%와 비교하여 10% 포인트 정도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나라 창업보육정책의 실효성이 미국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향후 창업보육정책 추진에 따른 보육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POST-BI 제도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POST-BI 제도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육센터가 1~2년 정도 추가적인 보육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같은 추가적인 보육기능 수행은 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센터 졸업기업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전라북도 소재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경우, 보육센터졸업과 함께 기업환경이 보다 좋은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창업보육센터의 주요 기능이 퇴색되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POST-BI 제도 도입을 통해 추가적인 보육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새로운 유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POST-BI 제도 도입에 의한 추가적인 보육기능 수행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의 외부 의존도를 높이고, 자생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POST-BI를 담당하는 보육센터는 전라북도 전체 보육센터의 일정 수준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Post-BI 업체중 기술력, 경쟁력을 갖춘 업체 위주 입주
- Post-BI 업체의 선도기업 육성지원

## 2) TBI(신기술창업보육)지원 센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신기술창업보육사업(TBI)의 경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TBI 사업은 그 동안 유망 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 온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으나, 특정 기업에 1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TBI 사업의 개편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동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TBI 자금을‘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전용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업체 당 지원 한도도 하향 조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창업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바탕으로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업 경력이 일천(대부분 창

업 후 3년 이하)하여 과거 매출실적에 기초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 기술, 정보 등을 공유
-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TBI사업에서 지원
- TBI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장비활용, 기술정보제공, 교육 등은 지역의 소재 대학이 신기술 창업지원

### 3) 중소기업지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보육정책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한 물리적 시설 자금 및 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전라북도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감안 한다면, 이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자금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TBI 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청 및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의‘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자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금’등과 같은 기술개발자금의 일정 비율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자금으로 확보·지원하는 방안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우선 지원, 협동화사업 등을 통한 입지 지원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창업보육센터의 연구형에서 생산형으로 전환

전라북도의 향후 창업보육센터의 추가적인 확충은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전환(연구형→생산형)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확장·건립 지원사업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실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창

업보육센터의 확장을 지원하는 것은 창업보육실수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창업보육센터 수의 확충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의 입실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5) 전라북도 POST-BI업체 유치 위한 신기술 집적단지 조성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간 집적의 경제효과를 제고하고, 보육센터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입주 업종의 특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센터가 특정 업종으로 특성화·전문화될 경우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육기업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따른 범위의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창업기업 지원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부합한 보육센터의 특성화 및 입주 업종의 전문화 유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전라북도 POST-BI업체 유치 위한 신기술 집적단지 조성

## 6) 각 시·군별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현재 각 창업보육센터는 창업 강좌 교육사업, 변리사 및 세무사 등 전문가 풀의 활용,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광고 및 홍보사업 등을 개별 보육센터별로 추진함으로써 범위의 경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동일 지역 소재 창업보육센터들이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연합체 결성)을 통해 공동으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애로사항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예: 법률·특허 및 세무 상담, 창업교육 등)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협회 결성 및 보육센터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전문가 풀 및 지원기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지역의 기술혁신 주체인 대학, TIC, TP등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시설, 기자재 및 인력의 공동 활용

# 제 6 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 1 절 결 론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 1 절 결 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각 국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지자체 간에도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릴 만큼 치열하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인식하에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 및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 유치는 고용창출, 세수 증대, 생산 및 기술이전효과, 인구유입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인해 전라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들은 기술도입, R&D,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글로벌 경영, 투명 경영, 재무건전성 등 선진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쟁촉진 효과를 가져와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도 기업 유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타깃 기업으로 선정하여 그들 기업의 니즈에 맞는 특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전라북도에 기투자한 기업의 도내유치 유도를 위한 투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 주한외국대사관, 투자 컨설팅회사 및 관련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대형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할 뿐만 아니라 상시 업무공유를 통한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 및 기간단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뿐만 아니라 사이버 홍보활동으로 Invest Korea(KOTRA) 홈페이지에 전북 외국인투자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도 투자관련 기관 및 주한 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전라북도에서는 수도권 및 외국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이 신나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입주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기업 욕구에 부응하는 신축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군의 기업유치관련 조직체계를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기업유치 우대 조례 제정, 매칭 펀드식의 기업유치기금의 조성, 산업입지 관련 분양가 인하 및 저가 공급 방안을 강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지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유치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며 기업유치 전문가 풀 제를 운영하고 아울러 팩키지 형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기업유치관련 조직간 시스템 경쟁력 강화 등의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유치 대상 타깃기업 선정 및 유치, 업종 선정 및 지원 기준의 체계화 및 장기계획 수립, 연고업체 유치 및 투자 유도, 기업유치 관련 기관 간 업무분담 및 협조 강화, 합작파트너 알선 및 공장용지 정보제공, 기업유치관련 협상능력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체계 강화 등을 통한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 유치는 성장동력 재점화와 동북아 중심 지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렛대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니즈, 비전·전략, 전라북도의 강점을 감안하여 기업 유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기업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만족’을 시키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대상 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략산업과의 연계, 혁신 유발 정도를 감안하여 적합한 기업을 집중 유치해야 하고, 투자 유치 정책의 목표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유치’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자본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는 한편, 제조업을 지원하는 물류, 금융, 정보서비스업 등의 기업도 유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자금 등 투입요소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른 공장용지,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관리도 필요하다.

둘째, 노사관계 안정, 갈등 최소화 등으로 사회통합이 실현되어야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시 노사관계관리제도 관련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 제안 및 투자환경 조성, 활발한 해외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 유치기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북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이러한 효과가 투자유치로 연계하고, 기업들의 투자 동향 및 국내외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의 전라북도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집적경제에 따른 이익을 상회하는 수준의 직·간접적인 유인책의 제시와 더불어 보다 기본적인 투자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라북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라북도 이전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안내, 지방이전 정책의 홍보 및 이전에 관한 자문, 이전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공장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대행, 이전부지 선정 및 기존 공장매각 알선, 지자체, 정부부처 등 기업이전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체계를 구성한다.

다섯째,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등 단기적인 지방이전 지원정책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스스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장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사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하고, 즉 고속교통 접근성, 용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금융, 정보, 유통, 물류 등 사업지원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섯째, 전라북도의 산업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기업이 전라북도 이전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사회인프라 개선사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교육환경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우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권영철.(1999).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인센티브 결정: 교섭력 모델” 무역학회지, 24호, pp. 1-14.
- 권오혁.(1998).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요인 분석”, 한국 도시연구소, 「도시 연구」 제4호, pp. 197-215.
- 김성중·고석찬.(2001). “테크노파크 개발과제와 전망”.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김익현.(2000).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환경 개선방안”. 「한일경상논집」, 19(1), pp. 143-167.
- 김윤철.(1994).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와 부진요인”.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 김용환.(2004).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김주섭.(2004)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용제도 개선방향”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김진용·이정진,(2000).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 2000년 5월호.
- 김준동.(1996).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김준동.(1997).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류승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과 우리의 대책”. 국세청.
- 민 기.(2001).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 일본 자동차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3): pp. 109-129.
- 박종돈.(1996).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한 진입동기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홍식·공성경.(2001). “투자유치 마케팅 문제: 지방정부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중앙행정학연구회).
- 박용규·송영필·강신겸.(1999).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삼성경제 연구소.
- 백상호·임성훈·김덕준·오동화·김기학·유상원.(2003). “주요 국가의 외국인투자

- 유치제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이삼주.(2000). “지방세 감면의 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제5권 제1호.
- 이우배. “지방의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방안: 경남지역 사례 중심”, 국토논단.
- 이동기·전영옥(2004). “전북 일자리 창출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재득.(1997). “지역경제의 국제화와 부산의 외국인직접투자분석”. 부산광역시 정책 개발실.
- 이성봉·이형근.(1998).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이용섭.(1999).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이태용.(2004). “기업유치를 위한 정부의 행정지원 서비스 개선방향”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정희성 외.(2003). “환경정책의 이해”. 박영사.
- 조혜영.(2004). 산업단지 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 조혜영.(2004).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 방향”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진영환 외.(1989). “산업기지개발의 과급효과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 전영재.(2004).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추진방향”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차미숙·정운희.(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국토연구원.
- 최영출. (1994). “지방기업의 지역재정과급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 최백렬.(2004).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한도숙.(1998).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하종성.(2004).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활성화 방안” 『전라북도 기업유치 추진전략 심포지엄』, 전북발전연구원.
- 홍성걸.(1994). “첨단산업정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정책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 건설교통부,(2002), “2002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기획예산처.(200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 노동부, (2003), 노동백서.
- 대한상공회의소.(2004).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환경규제 사례 실태조사”.

- 대한상공회의소.(2004). “중복과잉규제의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 대한상공회의소.(2003). “환경 부담금 부과 및 사용에 대한 업계의견”.
- 대한상공회의소.(2002). “환경관리 점검·단속의 합리적 운용방안”.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2003).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보고서”.
- 산업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 산업자원부·한국산업단지공단, (2004).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수요 및 실태조사”
- 산업자원부.(2000).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안)”.
- 산업자원부.(2003).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과제”.
- 전국경제인연합회,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바라는 투자환경 개선방안. 2003.
- 전국경제인연합회, 각호, “전경련”.
- 전라북도, (2004). “환황해권시대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세계물류 박람회 개최 추진방안.
- 전라북도, 각 연호. “전북통계연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99). “제2의 실리콘밸리를 위한 경쟁”.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위한 연구시리즈 99-04.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제주시.(2001). “제주 국제첨단지식 산업단지 구축전략”.
-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외국기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 한국은행, 전북의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분석 및 시사점. 200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환경부(2004). 환경예산과 예산제도.
- 환경부(2003). 환경백서.
- 해양수산부(2002). 해양수산통계연보.
- Brewer, T & Young, S.(1997). “Investment Incentives and the International Agenda. The World Economy”. Vol. 3. pp. 175-198.
- Ghoshal, S.(1987). “An Organizing Framewor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25, pp. 34-59.
- Johanson, H & Finn W.(1993). “The International of the Firm Four Swedish Cases”. Academic Press.

Oman, C.(2000). "Policy Competi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tudy of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to FDI. Paris, Frans". OECD Publications.

UNCTAD.(1995). "World Investment Report 1995: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ompetitiveness". UN.

Vallanchain, B & Satterthwaite, A(1992). "Sectoral Growth at the Metropolitan Level: an evalu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s. Vol. 31. pp. 25-58.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벤처기업지원센터. <http://biz.kova.or.kr>.

벤처기업협회. <http://www.kova.or.kr>.

벤처코리아. <http://www.venturekorea.org>.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인베스트코리아. <http://www.investkorea.org>.

전북지방중소기업청. <http://jb.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http://www.sbc.or.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통계청. <http://kosis.nso.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환경부. <http://www.me.go.kr>.

UNCTAD. <http://www.unctad.org>.



# 부 록



|  |  |
|--|--|
|  |  |
|--|--|

## 전라북도 기업유치를 위한 전북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기업유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내 투자기업 실태, 입지상황, 만족도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분과 전북의 행정지원서비스의 우선순위 파악을 위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 내용은 무기명통계처리를 거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 작성 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TEL 063·276·(2027, 2064)

FAX 063·276·2069

E-mail: [jdi@jd.re.kr](mailto:jdi@jd.re.kr)

[www.jd.re.kr](http://www.jd.re.kr)

전북발전연구원

### I. 회사현황

다음은 현재 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물음입니다.

1. 귀사의 최초 설립(투자)년도는? ( )년도

2. 귀사의 직원 현황은?

① 5명 미만

② 5명 이상~20명 미만

③ 20명이상~50명미만

④ 50명~100명

⑤ 100명~300명

⑥ 300명 이상

3. 귀사의 연간 매출액과 수출액은? (2003년 기준)

(연 매출액:                      백만원, 연 수출액:                      백만원)

4. 귀사의 업종은?

|                        |                  |
|------------------------|------------------|
| <b>제조업(1~15)</b>       |                  |
| 1. 음식료품                | 2. 섬유제품/봉제       |
| 3. 가죽/가방/신발            | 4. 목재/종이/나무제품/가구 |
| 5. 출판/인쇄/기록매체 복제업      | 6. 코크스/석유정제품/핵연료 |
| 7. 화합물/화학제품            | 8. 금속/조립금속산업     |
| 9. 기계/장비               | 10. 컴퓨터/사무용 기기   |
| 11. 전기/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 | 12. 의료/정밀/광학기기   |
| 13. 자동차/트레일러           | 14. 기타 제조업       |
| <b>기타(15~20)</b>       |                  |
| 15. 전기/가스/증기/수도        | 16. 건설업          |
| 17. 도매/소매업             | 18. 숙박/음식점업      |
| 19. 정보처리/SW            | 20. 농/임/축/어/광업   |
| 21. 기타 서비스업            |                  |

5. 귀사의 현재 자산 규모는? \_\_\_\_\_ 백만원

6. 제조회사의 경우 귀사의 주요 생산품의 제품형태는?

① 기초소재·원자재                      ② 중간재·부품                      ③ 최종재·완성품

7. 귀사의 부지 소유 형태는?    ① 자가                      ② 임대

8. 귀사의 건물 소유 형태는?    ① 자가                      ② 임대

9. 월평균 협력업체 수는 몇 개입니까? (                      )개

10. 주요 협력업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 ① 같은 공업지역 내
- ② 같은 시(군)내
- ③ 인접 시(군)내
- ④ 전라북도 내
- ⑤ 전라북도 외 지역
- ⑥ 기타

## II. 기업 이전 동기

다음은 귀사가 타 시도에서 전북지역으로 이전해올 때, 당시 귀사가 가졌던 생각에 관한 물음입니다.

1. 귀사가 전북지역으로 이전해온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년 ~ 2년
- ③ 2년 ~ 3년
- ④ 3년 이상

2. 귀사는 전북의 입지선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
- ② 투자 지원센터(중기청, 중진공 등)
- ③ 금융기관(신보, 기보 포함)
- ④ 공급/협력업체
- ⑤ 자체조사 분석
- ⑥ 외부 컨설팅회사
- ⑦ 기타( )

3. 귀사가 전북으로 이전해오면서 제반 이전절차에 소요된 총 기간은? (공장 및 건물 공사기간 제외)

- ① 1개월 이내
- ② 1개월~3개월
- ③ 3개월~6개월
- ④ 6개월~1년
- ⑤ 1년~2년
- ⑥ 2년~3년
- ⑦ 3년이상

4. 귀사의 이전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대로1순위에서3순위까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① 저렴한 용지(임대료)            | ② 지역 특성과 지명도    |
| ③ 편리한 교통접근(항만, 도로, 철도 등) | ④ 고객 및 시장 확보    |
| ⑤ 쾌적한 주변지역 여건(생활환경 등)    | ⑥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
| ⑦ 전문인력 확보 용이             | ⑧ 저렴한 노무비(급여 등) |
| ⑨ 기존업체 공장인수              | ⑩ 연구기관과 교류      |
| ⑪ 자치단체의 유인정책·제반혜택        | ⑫ 자원(원재료 등)확보   |
| ⑬ 원활한 노사관계               | ⑭ 지자체와의 교류관계    |
| ⑮ 기타                     |                 |

### III. 입지여건 만족도

다음은 이전이 끝난 후 제반 여건에 대한 귀사의 만족 정도를 묻는 항목입니다.

◎ 다음은 귀하의 설문응답요령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아래의 요령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요령]

| 설문내용     | 매우<br>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br>만족 |
|----------|-----------|-----|----|----|----------|
| 원만한 노사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란은 귀하의 의견을 묻는 설문이므로 기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문항에서 (④와 ⑤) 답하신 분은 3번 문항에 답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4번 문항으로 넘어가세요.

3. 위 2번 문항에서 “비교적 개선되었다”(④ 이상)라고 답하신 분은 어느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매출 증가    ② 시장 점유율 증가    ③ 시장 성장을 증가  
④ 협력업체와의 관계    ⑤ 생산비(판매비) 감소    ⑥ 고객  
⑦ 운전자금 증가    ⑧ 노사관계 개선    ⑨ 기타(            )

4. 위 2번 문항과 관계없이 향후(5년 이내) 귀사의 투자 전망은 어떠하십니까?

- ① 현재 상태 유지                            ② 투자규모 확대                            ③ 투자규모 축소

5. 현재 귀사는 다시 다른 시도로 이전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6번은 5번에서 “예”(①에 응답하신 분)라고 하신 분만 기입하세요.

6. 만약 다른 시도로 회사를 이전할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 이유는?(복수 응답 가능)

- ① 업체간 경쟁이 심해서                            ② 거래처/고객 확보가 어려워서  
③ 지가 등 임대료가 비싸서                            ④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⑤ 임금이 비싸서    ⑥ 노사분쟁이 심해서  
⑦ 행정서비스가 나빠서(행정의 무관심) ⑧ 기타(                            )





# 기업유치 행정지원 우선순위 설문조사

## AHP를 이용한 설문

- 행정지원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구성부문들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응답하시기 전에 아래의 「설문작성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 응답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설문작성 요령 ◆

- 설문작성은 행정지원에 관한 두개의 평가부문 A와 B 중에서 어느 평가부문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1~9점 척도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유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행정지원 시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현금지원(A)'가 '행정서비스(B)'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좌측의 ⑦"**에 체크(√) 표시하시면 됩니다.(단 질문항목별로 **하나씩만** 표기해주세요)

| 평가<br>부<br>문<br>(A) | 절<br>대<br>중<br>요 | 매<br>우<br>중<br>요 | 중<br>요 | 약<br>간<br>중<br>요 | 같<br>다 | 약<br>간<br>중<br>요 | 중<br>요 | 매<br>우<br>중<br>요 | 절<br>대<br>중<br>요 | 평가<br>부<br>문<br>(B) |   |   |   |   |   |   |   |       |
|---------------------|------------------|------------------|--------|------------------|--------|------------------|--------|------------------|------------------|---------------------|---|---|---|---|---|---|---|-------|
| 현금지원                | ⑨                | ⑧                | ⑦      | ⑥                | ⑤      | ④                | ③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행정서비스 |

< 설문응답표 >

AHP를 이용한 기업유치 행정지원제도에 대한 설문

| 평가부문 (A) | 절대중요 | 매우중요 | 중요 | 약간중요 | 같다 | 약간중요 | 중요 | 매우중요 | 절대중요 | 평가부문 (B) |   |   |   |   |   |   |   |         |
|----------|------|------|----|------|----|------|----|------|------|----------|---|---|---|---|---|---|---|---------|
| 현금지원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고용보조금   |
| 고용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교육훈련보조금 |
| 교육훈련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이전보조금   |
| 이전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시설보조금   |
| 시설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조세감면    |
| 조세감면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행정서비스   |
| 현금지원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교육훈련보조금 |
| 고용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이전보조금   |
| 교육훈련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시설보조금   |
| 이전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조세감면    |
| 시설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행정서비스   |
| 현금지원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이전보조금   |
| 고용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시설보조금   |
| 교육훈련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조세감면    |
| 이전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행정서비스   |
| 현금지원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시설보조금   |
| 고용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조세감면    |
| 교육훈련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행정서비스   |
| 현금지원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조세감면    |
| 고용보조금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행정서비스   |
| 현금지원     | 9    | 8    | 7  | 6    | 5  | 4    | 3  | 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행정서비스   |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발연 2004-R-12

## 전북 기업유치 추진방향 연구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4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 KT빌딩

전화:(063)276-2060 팩스:(063)276-2069

홈페이지: [www.jd.re.kr](http://www.jd.re.kr)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